犯罪豫防의 理論과 實際

法務部 犯罪豫防委員 全國聯合會

발 간 사



전국 범죄예방위원의 협력과 지원으로 전문화교육 교재를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거대한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밀 듯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소외와 갈등, 가정과 사회규범의 붕괴, 배금주의의 팽배는 각종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범죄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의 구조적 범죄발생 요인 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자원봉사자와 더불어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범죄예방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여, 실무활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첨단의 정보화 지식사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범죄예방활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법규, 비행청소년의 상담과 선도, 보호관찰의 이론과 실제, 범죄예방의 활동실무, 상황별 범죄예방 지도,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예방 관련 법규」 등 범죄예방위원들의 선도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예방위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범죄예방활동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를 발간하기 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부 관계관과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이영근 교수님을 비롯하여 편찬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 11.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장 류 봉 식

축 사



먼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에서 범죄예방위원 전문화 교육용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범죄예방위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할 법과 제도에서부터 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 각 분야별 범죄예방활동 수행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실무기법을 망라하는 교재가 발간되어 앞으로 범죄예방위원 여러분들의 역량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재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류봉식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선진각국의 형사정책 추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 에 중점을 두어가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범죄예방위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많은 범법자들과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는 범죄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위원 여러분도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전문화교재가 범죄예방위원들의 필독서가 되어 앞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 11.

법무부 보호국장 강수범

목 차

제1장 청소년 비행과 관련법규

제1절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보호 관련법규 • 9
제2절 소년법과 비행소년 사법절차 • 25

제2장 비행청소년의 상담과 선도

제1절 비행 유형별 지도와 상담 • 41
제2절 상담심리치료 • 50
제3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 67
제4절 학교폭력과 대처방안 • 90

제3장 보호관찰의 이론과 실제

제1절 보호관찰 제도론 • 103
제2절 보호관찰현황과 보호관찰법령 • 121

제4장 범죄예방 활동의 실무

제1절 선도유예 실무 • 135
제2절 보호관찰 실무 • 167
제3절 갱생보호 실무 • 182

제5장 상황별 범죄예방 지도

제1절 문제성별 지도기법 • 193
제2절 비행 및 범죄유형별 지도기법 • 198

제6장 형사법의 이해

제1절 형법 • 211
제2절 형사소송법 • 223

제7장 범죄예방 관련법규

소년법 • 247
소년선도보호지침 • 258
청소년보호법 • 276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29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 32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331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 343

제 1 장

청소년 비행과 관련법규



제 1 절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보호 관련법규

Ⅰ. 머리말

청소년기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관하여는 학자에 따라,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폭넓게 이해하는 입장은 12세 내지 24, 25세까지를 청소년기로 이해한다. 그러나 심리적, 생리적, 그리고 법적으로 중요한 청소년기는 대체로 중 · 고등학교 학령기인 12세 내지 19세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사춘기이기도 한 이 기간은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비행을 저지르기 쉽지만 동시에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할 요인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먼저 비행주체로서의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보호대상자로서의 청소년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 후 청소년 관련법규도 비행관련 법규와 보호관련 법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청소년 비행

1 비행청소년의 개념

무엇이 비행이며 누가 비행청소년인가를 확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라마다 비행의 기준에 차이가 있고, 또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행이라는 말은 본래 사회학적 용어로서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하며 학자에 따라 개인적 · 사회적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태 내지 인격적 태도(P.V.Young),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관계로부터 벗어나는 소년의 행

동(S. Glueck), 장래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하는 것(Tappan)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비행청소년의 개념은 개개의 법령에 따라서도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되는 소년은 ①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②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 부도덕한 자와의 교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 등의 사유가 있는 자 중에서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세 가지이다. 특히 ②의 경우는 그 개념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민주사회의 법치주의 이념에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한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는 미성년자가 해서는 안 될 이른바 탈선행위로서 흡연, 음주행위,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흥행장, 유흥접객업소, 사행행위장, 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 숙박소, 해변, 야외묘소 기타 유원지 등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의 우범소년과 비슷하면서도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불량행위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다. 불량행위소년이란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흉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풍기문란 행위자를 말한다. 우범소년과 불량행위소년은 행위 자체로 구별되지 않고 장래 범죄를 행할 우려성 여부에 따라 이것이 긍정되면 우범소년, 부정되면 불량행위소년으로 인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이란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사회정책적 의미)에서는 형벌법규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는 물론 여타의 탈선행위를 하는 모든 청소년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형벌법규에 위반하거나 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범죄에 빠질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독일의 범죄학자 엑스너(Exner)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으로 ① 과대한 행동충격, ② 공상적 체험욕, ③ 자기현시 및 자주적 결정욕, ④ 권력과 강제에 대한 반항심, ⑤ 내적 불안과 기분 이변성, ⑥ 오만과 혈기, ⑦ 성욕 분방성을 들고 있다.

정신병질도 청소년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3 청소년 비행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기의 심신의 특성 때문에 그 비행도 성년의 그것과는 달리 특이한 성격을 드러내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즉행적 성질

청소년에게는 비행을 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정신미숙에 그 원인이 있으며 청소년에게 우발적 범행이 많은 것도 그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정신미약자의 행위에서 많이 나타난다.

(2) 향락적 성질

청소년은 주위사정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범행에 뛰어드는 일이 많지만 그 동기 내지 욕망은 긴박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비행의 동기가 되는 청소년의 욕망은 긴박한 생활고의 해결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향락추구적 성질을 갖는다. 여흥비 마련, 허영사치심, 사행심의 만족을 위하여 범행을 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은 바로 청소년 비행의 향락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집단성 내지 부화뇌동성

소년에게는 그 행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부화뇌동성이 있고 저연령일수록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크다. 비행에 있어서도 성인에 비하여 집단행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집단성은 또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죄책감, 고독감, 불안감 등을 동료의식 중에서 해소 내지 완화시켜 범행을 활성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4) 공격적, 폭력적 성질

청소년에게는 자주적 결정욕과 성인의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비행에 있어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는 아직 미숙하면서도 신체적으로는 성숙한 심신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그 행동을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고갈 가능성을 지닌다. 청소년의 범죄 중 폭행, 상해 등 조폭범이 많은 것도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5) 범행 과잉성

청소년은 지식과 사고력은 부족한 반면에 신체적인 힘과 공격성은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욕망한 것을 충족시키는 것 이상으로 지나친 행위를 하는 일이 많다. 금전을 탈취하는 것만으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상하여 버리는 것이 그 예이다. 청소년의 범행을 흔히 이유(또는 동기) 없는 범행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을 드러낸다.

4 청소년이 많이 범하는 범죄

심리적 특성과 왕성한 체력 등의 영향으로 절도, 강도, 공갈, 폭행 등 폭력과 체력을 요하는 범죄를 많이 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는 매년 13만~15만 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별 비율을 보면 절도 40%, 강도 32%, 공갈 20%, 장물 13% 등이 높은 편이고 상해, 강간 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특별한 현상으로는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사이에 사이버 범죄는 20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범행의 60%가 20대 이하의 청소년에 의한 것이었다. 이중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컴퓨터 손괴,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기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가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청소년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인터넷에 접할 기회도 많으며 호기심과 충동성이 강한 반면 신중성과 자제력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또 한 가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부분별한 신용카드 확대로 인하여 아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까지 신용카드를 갖게 되고 이 때문에 카드빚을 진 청소년들이 범죄나 자해행위에 빠져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개선,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 비행의 원인 분석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법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컨대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범죄가 되는 것이 자기 주위의 타인을 통하여 범죄적 문화의식을 습득하기 때문이라는 문화전달이론, 규범과의 일체감 약화에서 일탈행위의 원인을 찾는 아노미(Anomie) 이론, 이들 두 이론의 융합을 시도하는 하위문화적 이론, 범죄의 원인적 분석보다도 형법을 비롯한 사회적 규제의 성격과 그 위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반응 또는 사회적 낙인의 성격에 중점을 두는 사

회통제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청년심리의 위기적, 정서적 부적응, 자아기능의 흠결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며,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중시하고 그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처럼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그 원인을 관찰하는 방법도 의미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범죄학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진 소질설과 환경설의 종합적 관점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내적 요인

유전, 정신적 결함 , 신체적 조건 등이 이에 속한다.

1) 유전

범죄의 유전성에 대하여서는 일찍이 이탈리아 정신의학자 롬브로조(Lombroso)가 범죄인류학적 입장에서 생래범죄인설을 주장한 이래 범죄인 가계에 대한 연구, 쌍생아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고, 범죄성의 유전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엇갈렸으나 오늘날은 이를 부정하거나 그 비중이 극히 적은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2) 정신적 결함

이는 정신적 병리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신병질, 정신미약, 정신병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정신적 결함이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① 정신병질

정신병질이란 이상성격과 동의어로서 정신의학적으로 볼때 강한 편기성 때문에 사회를 괴롭히거나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는 성격을 말한다.

정신병질의 분류방법은 학자에 따라 다르다. 흔히 사용되는 독일의 슈나이더(K. Schneider)의 10분법에 의하면 정신병질은 발양성, 광신성, 과장성, 기분이변성, 폭발성, 부정성, 의지박약성, 우발성, 자신흠결성, 무력성,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이들 중 우발성, 자신흠결성, 무력성의 세 가지는 범죄에 소극적으로 관련될 뿐인데 정신병질적 특성은 사춘기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② 정신박약

이는 지능적 흠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정도에 따라 백치(2세 미만의 지능), 치우(3~7세 미만의 지능), 노순(7~12세 미만의 지능) 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신미약과 범죄와의 관계는 그리 중대하지 아니하나 정신미약자는 생활능력이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여 환경파탄에 말려들어 비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정신미약자에게 정신병질이 있을 때에는 비행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신병

정신병이란 넓은 의미로는 정신병질, 정신박약, 정신신경증까지도 포함하나 좁은 의미로는 정신분열증, 간질 등과 같이 외계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장해를 받는 정신적 흠결을 말한다. 정신병자는 이상 체험에서 범죄적 충동을 느끼며 이에 대한 제어심의 부족으로 범죄행동에 빠지는 수가 있다. 그러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체적 조건

맹목, 불구, 질병 등 신체적 결함이 직접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영향이 결과적으로 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뿐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범죄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여성의 범죄율은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자극적이고 신체적 힘이 강하며 사회적 마찰면을 많이 갖는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상으로는 18~19세의 비행이 가장 많고 16~17세, 14~15세, 14세 미만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최근에 18~19세의 범죄율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15세 이하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2) 외적 요인

비행의 외적 요인으로서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중 후자가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1) 자연환경

일년 중 분기별 비행발생 관계를 보면 10~12월 사이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봄, 여름철인 4~9월 사이의 범죄가 가을, 겨울철인 10~3월 사이의 그것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다. 범죄별로 보면, 폭력범죄와 성범죄는 봄, 여름철에 증대하는 반면 재산범죄는

겨울철에 최고의 상승을 보이며 기후의 이상과 변화도 폭력범죄, 교통사범 등의 증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의미는 넓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가정환경, 문화적 환경, 학교환경 기타로 나누어 살펴본다.

① 가정 환경

가정은 양친과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혈족공동체이다. 가정은 사람이 맨 처음 체험하는 사회단체이고 양육장이며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이룸과 아울러 생활의 안식처가 된다.

가정은 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의 결핍은 소년을 비행으로 이끌기 쉽다. 가정적 결핍을 불량가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결손 가정

양친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이혼 · 별거, 장기수형, 실업 등으로 없는 경우를 말하며 양친이 다 있는 경우에도 불화, 방임 등으로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기능적 결손가정이라고 부른다. 결손가정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

나. 빈곤 가정

빈곤 그 자체는 도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 때문에 좋지 못한 문화환경에 처할 가능성, 예컨대 학업에의 뒷받침 부실, 가정교육과 자녀감독이 소홀이 될 가능성 등이 크므로 소년의 인격형성에 나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소년범죄자의 다수가 빈곤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유한 가정환경이 때로는 향락성과의 관계 하에 범죄적 위험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물론 배제되지 아니한다.

다. 부도덕 가정

범죄자, 알콜 · 마약중독자, 부도덕자 등 사회적 불량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가족간에 인간관계의 융화가 결여되고 소년인 가정원이 불량자의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아 비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라. 갈등 가정

가족구성원 사이에 감정, 이해관계, 가치관 등에 있어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로 불화의 감정을 느끼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갈등은 소년 인격형성을 왜곡되게

하고 가출을 유발하는 수도 있다.

마. 시설 가정

이는 고아원 기타 아동양육시설이 가정의 역할을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시설 가정에서는 아동과 감독자 사이에 애정과 친근감이 결핍되어 아동에게 반항심, 무타인무친 등 반사회적 심성을 키워줄 우려가 있다.

바. 이 밖에도 애정결핍가정, 훈육결핍가정 등의 유형을 별도로 거론하는 수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제불량가정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해침은 물론이지만 불량가정 내의 애정관계가 잘 조정되지 못하거나 청소년이 가정사정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가출을 유발시키기 쉽다. 가출의 원인은 이 밖에도 불량교우, 학교에 대한 욕구불만, 도시동경(농촌소년의 경우), 허영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출은 상당 부분 청소년 비행에 연결되고 있다.

② 문화적 환경

문화적 환경은 범죄의 촉진과 억압에 모두 작용한다. 문화적 환경이 범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문화갈등, 윤리관의 부재 내지 도의심의 저하, 불량문화재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갈등과 관련하여 볼 때 구미문화의 급격한 수용과정에서 가치의식의 변화와 동요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의심의 저하는 범죄에 대한 반대동기를 약화시켜 범죄유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가치관이 왜곡된 사회풍조(예컨대 금전만능사상, 한탕주의 등)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여 무분별한 비행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불량한 영화, 연극, 인터넷, TV의 흥행물, 저속한 서적 등 이른바 불량문화재는 감수성은 민감하면서 분별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 비행을 암시 내지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③ 학교 환경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통하여 비행을 억제,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학교 환경이 청소년 비행과의 관련 하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오늘날 학생 비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학생의 일정한 학교생활태도는 비행의 징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느냐 여하는 학생 비행의 예방 내지 억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학생이 비행소년화하는 징조로서는 먼저 태학을 들수 있는데, 비행학생 중 다수가 이미 초등학교시절부터 학업을 태만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학의 원인으로는 교사에 대한 혐오, 꾸중, 학업과 지능 내지 적성과의 불일치, 병질,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경제적

열등감, 부모의 과잉보호 등이 거론된다. 비행학생의 다수는 학교와 교사를 혐오한다. 태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중시되는 것은 무단결석이며 장기결석자일수록 불량행위를 하여 비행소년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갖는다. 이 밖에도 학교공포증, 성적불량, 흡연, 음주, 거짓말, 동료간의 싸움이나 폭행 등은 비행화의 징조로서 중시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인 과밀학급, 교사의 업무량 과다와 사기저하로 인한 교과 및 학생지도 부실, 입시위주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의 소홀, 아직도 정화되지 못한 학교의 주변환경 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④ 기타

위에서 열거한 원인 이외에도 청소년의 교육정도, 거주지의 환경, 교우관계, 청소년이 종사하는 직종과 그 직장의 환경 등은 모두 청소년의 비행에 상당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비행청소년의 선도

(1) 일반적 선도방안

1) 가장 근원적인 청소년 선도는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사회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비행유발의 원인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여 비행의 예방에 힘쓸 것이 요청된다. 특히 청소년에게 비행의 징조가 보일 때에는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어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의 제거에 노력해야 함은 물론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가정, 학교, 기타 지역사회가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예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가정

부모는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애정관계가 항상 잘 조화되도록 하고 자녀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가정교육에 힘써야 한다. 성년인 가정구성원은 자신의 행동이 미성년의 가족구성원에게 직접, 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그 언동이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한 국민적 계몽과 각성이 요청된다.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교우관계가 정상적인가 등에 관하여 항시 유의해야 한다. 시설가정에 있어서도

관계 직원들은 부형적 입장에서 아동양육에 애정을 기울이고 그 인격적 감화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각급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유치원이 증설되고 유아교육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 확대됨이 바람직하다. 초 · 중등학교의 과밀학급(특히 대도시의)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문제이며 교사들의 과다한 직무량, 특히 잡무를 과감하게 제거하도록 하는 등 초 · 중등교육의 구조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하며 교원들은 교직에 있는 한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정성어린 교과지도와 인격지도를 통하여 사제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학생들의 연령단계에 맞추어 그 심신의 특징, 실수하기 쉬운 점과 그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교육시켜 건전한 행동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율성을 키워주며 더 나아가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생활지도와 인성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전담하는 교원의 수를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상담교원들은 학생들의 일반적인 고민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파악하여 모든 교원들의 학생지도에 참고하도록 하고 면담학생의 고충을 해결함에 있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줌이 바람직하다.

③ 기타 지역사회

출판, 영화, 연극, 매스컴에 종사하는 이들은 영업이나 흥행의 성공에만 몰두하지 말고 더 나아가 바른 방향으로 청소년을 선도해 간다는 교육적 안목을 지니고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부형들의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2) 비행의 재발방지

1) 사법절차

비행청소년에 대하여서도 먼저 그 비행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행하고 그 선도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대체로 재비행의 내적 원인은 비행의 일반적 내적 원인과 다를 것이 없고, 재비행의 외적 원인으로는 ① 소년원 교정교육의 불철저, ② 주위에서의 차별대우, ③ 불량교우, ④ 안식처부재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 청소년의 비행은 그 성격상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한 일반적 비행(일반적 에피소드로서의 비행)과 인격내면에 잠재한 비생성의 발현으

로서의 고질적 비행이 있다고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선도조치, 예컨대 훈계방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관대한 조치가 효과적이며 실제로도 이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청소년피의자가 성인피의자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청소년피의자를 심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2) 시설 내에서의 교화

소년원, 소년감별소, 소년교도소의 시설과 기능의 향상, 교정교육에 있어서의 교과교육 못지 아니한, 인격교육의 강화, 직업훈련의 강화와 내적충실 등은 언제나 꾸준히 추구되어야 한다.

3) 사회복귀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한 청소년에 대한 재생보호에 힘써 이들의 취학, 취업 등 사회적응을 도와주어야 한다. 현행법상 임의적인 제도로서 무의무탁자, 정신 · 신체결핍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생보호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소 또는 퇴원한 청소년을 사회에서 좋지 못한 선입견으로 대하는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상당수의 청소년이 사회복귀 후 사회에서의 냉대 때문에 다시 비행의 길로 빠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따뜻한 애정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청소년 관련법규

1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법규의 구성

(1) 보호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청소년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직 미숙하지만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쉽게 범행에 빠지거나 성폭력, 학대 등 여러 범죄의 희생대상이 되기도 쉽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보호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록 비행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비행이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실수, 부주의에 의한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은 그 장래가 원대하고 비행에 대한 교정, 교화

가 쉽다는 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과 법적 대응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2) 청소년 관련법규의 구성

청소년 관련법규는 다음의 두 가지로 그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이에 특별히 대응하기 위한 법규로서 소년법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둘째로는 청소년을 범행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규로서 청소년 보호법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청소년 관련법규에는 형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어린이 보호, 육성추진협의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이 있으나 시간적 제약상 여기서는 주로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내용을 한정하고자 한다.

2 청소년 비행 관련법규

(1)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어떤 행위라도 범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장래 일정한 사유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2, 3호). 보호처분에는 ① 보호자에게 또는 보호자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④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⑤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 있다(소년법 제32조). 이러한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행한다.

(2)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특칙

비록 범행 당시에 14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아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할 것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3) 부정기형의 적용

소년(20세 미만의 자)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장기는 10

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다(소년법 제60조 1항).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형사 절차

소년의 형사 절차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된다.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소년법 제48조).

3 청소년 보호 관련법규

(1) 형법상의 보호 규정

1) 아동혹사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4조).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성년자(20세 미만의 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7조).

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02조).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치사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305조).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규정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② 폭행, 협박, 위계, 업무, 고용 기타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③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행위알선, 자금 또는 건물제공 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법인의 대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범행시 법인 등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게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사건관련규정을 적용한다(제13조 제1항). 대상자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가 여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대상자를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년법 제4조에 의거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② 검사는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14조).

③ 수사,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청소년의 성명, 주소 기타 청소년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18조 제1항).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도 안 된다(제18조 제4항).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제18조 5, 6항).

3)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① 청소년위원회는 성을 사는 등의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전국에 게시 또는 배포하며, 계도문에는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단 범죄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20조). 공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이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여 정보공유, 국제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21조).

(3)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규정

1) 가정, 사회, 국가의 책임

① 친권자나 친권자 대신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유해약물, 유해업소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 하도록 노력하고 제지하여야 한다(제3조).

② 누구든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노력, 제지, 선도해야 하고 유해업소에 고용, 출입하고 있거나 폭력, 학대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 고발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제4조). 약물, 매체물(음반, 비디오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유통, 고용, 출입을 못 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 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해환경규제에 있어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제5조).

2)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대상 유통규제

①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4조). 청소년 유해매체물 여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며(제8조) 그 심의기준은 선정성, 음란, 포악성이나 범죄충동, 폭력성, 약물남용의 자극, 반사회성, 비윤리성 기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의 해악성 여부 등이다(제10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고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판 · 검사, 변호사, 교수, 청소년보호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며 위원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제27조~제33조의 4).

②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16조). 일정한 매체물을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도 안 된다(제18조).

③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간판, 벽보, 전단 등을 청소년 출입업소,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청소년 접근제한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등에 설치, 부착, 배포해서는 안 된다(제20조).

3) 청소년 유해업소, 약물 및 청소년 유해행위의 규제

①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업주와 종사자는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제24조).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예외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의 필요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25조).

③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환각물질, 습관성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 학술용, 공업용, 치료용 판매는 예외이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매매하는 행위, 음란한 행위,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장애기형 등의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구걸시키거나 구걸에 이용하거나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다.

⑤ 다방에서 청소년에게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다(제26조의 2 제9호).

⑥ 청소년에게 성적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해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금전채무 등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련채권의 변제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제26조의 3).

제 2 절 소년법과 비행소년 사법절차

Ⅰ. 소년법

1 소년법의 이념

범죄소년을 성인의 경우와 구별하여 취급하려고 하는 입법은 근대에 들어서 비교적 새롭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말 이래 영 · 미 국가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제도에서 소년범을 성인범과 구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운동의 핵심적 이념은 소년보호주의이다. 소년보호이념에는 소년보호를 형평법상의 국친사상에서 유래하는 복지적 · 후견적인 것이라고 보는 영미법의 흐름과 실증적 교육형주의라는 대륙법의 흐름이 있다. 전자는 소년심판에 있어서 복지적 · 케이스워크적 기능을 중시하는 반면, 후자는 소년심판의 사법적 기능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념적 조류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의 각국 소년법을 형성 ·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대륙법계의 나라에서도 점차 대상소년을 확장하거나 복지이념과 후견사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형평법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적인 색채가 강한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회복적 정의' 방식을 채택하는 등 사법과의 관련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러, 오늘날의 소년법제는 형사법적인 면과 후견적인 면의 결합, 사법적 기능과 복지적 기능의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대륙법계의 우리나라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할 목적으로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여 영미법계의 복지적 성향을 도입하여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소년법은 이러한 목적에 기하여 소년보호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기하여 적용하고 있다.

(1) 인격주의

인격주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행위 · 태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보호절차는 교육기능 및 사법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 비행사실만 중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소년의 인격과 관련된 개인적 범죄특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예방주의

예방주의는 소년법의 목적을 비행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이미 비행을 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비행)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장래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한다. 장래의 범죄 예방적 측면은 성인범죄자에게 있어서보다 소년범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개별주의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소년 개개인을 1건의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조사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개별적 범죄성향을 파악하는 데 치중하여야 한다.

(4) 과학주의

예방주의와 개별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비행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 혹은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조사 · 분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을 선도 ·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우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5) 교육주의

교육주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형사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소년에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치료 · 개선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6) 협력주의

협력주의는 효율적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뿐 아니라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적용대상(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범죄(일반형사범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에 속하는 소년으로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촉법소년에 대한 최근의 형사정책적 논점은 범죄연령저하에 따른 촉법소년연령의 저하문제이다.

3) 우범소년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거나 혹은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법적 제재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범소년에 대한 폐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소년법의 처리범위

소년법은 제2장에 '보호사건'에 대한 절차와 보호처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제3장에는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와 형사처벌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1)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항에 의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1호 처분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보호제도를 두고 자원지도자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② 2호 처분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전문보호관찰관이 사회에서 6개월간 지도 · 원호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16세 이상 소년에게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③ 3호 처분

소년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서 그 기간은 2년이며,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6세 이상 소년에 대해서는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16개 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④ 4호 처분

소년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년원 송치처분에 비하여 강제적 요소가 약한 반면 복지적 성격이 강한 사회내 시설의 수용처분이다. 4호 처분은 이른바 국가보호시설인 소년원 송치처분과 사회내 처우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의 성격을 갖는다.

⑤ 5호 처분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2000년도 5호 처분의 대상자는 10명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운영과 실효성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처우를 필요로 하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호 처분은 현실적으로는 질병이 있는 비행소년의 치료를 위해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이 미비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⑥ 6호 처분

6호 처분은 비교적 비행이 경미하고 단기간 집중교화로 개선이 가능한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으로서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7호 처분

7호 처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것으로써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그 수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3세가 될 때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7호 처분은 비행정도가 심화되어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을 요하는 소년에 대하여 내려지는 처분이다.

제1호 처분과 제2호 및 제3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으며, 제2호 또는 제3호의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보호처분의 기간

소년법 제33조에서는 보호처분의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2조 제1호 · 제4호 · 제5호의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제2호의 단기보호관찰의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제3호의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보호관찰의 경우 소년부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거나 가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끝으로 동법은 소년원 송치의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보호처분의 취소

소년법 제38조는 보호처분의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의 송치나 제4조 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보호처분의 계속 중 본인이 처분 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형사처벌의 특칙

1) 사형, 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부정기형의 특칙(소년법 제60조)

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형처분의 금지(소년법 제62조)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징역, 금고의 집행(소년법 제63조)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

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5)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소년법 제64조)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Ⅱ. 비행소년 사법절차

지금까지 소년범죄의 원인으로는 소년의 개인환경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연구되어져 왔다. 즉 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독일 · 미국 ·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년범죄의 증가, 특히 재범소년의 증가와 관련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효율성에 비판이 가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리 나라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을 보면, 2001년도 초범이 63.7%, 전과자가 36.3%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1997년 26.0%에서 2001년 36.3%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재범률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소년사법절차가 비행소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행소년의 사회복귀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널리 제기되었다. 특히 일반형사사법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소년사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절차에도 적법절차에 따른 인권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소년범죄에 대한 다이버전(Diversion)이 강조되고 있다.

비행소년사건의 사법처리는 일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사, 법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소년사건처리의 관할과 절차를 이원화하여 소년사건의 유형에 따라 별개의 법원이 심리와 처분을 나누어 관할하고 있다. 즉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고(소년법 제3조 제2항), 소년형사사건의 관할은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소년법 제48조). 이 밖에 소년사건 처리기관으로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이 있다.

1 경찰단계에서의 처리절차

(1) 개 요

소년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는 일반적으로 경찰에 의해 개시된다. 경찰의 소년사건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소년을 검거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8, 제49조).

②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2항).

③ 불량행위소년을 단속하여 소년풍기사범으로 경찰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④ 소년에 대한 복지행정과 관련하여 요보호아동을 발견하여 아동복지법에 정해진 보호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를 소년경찰의 업무범위에서 살펴보면 ① 청소년 지도 및 보호, ② 청소년 선도대책 업무, ③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④ 소년보도 및 상담, ⑤ 소년범죄자료 수집 및 분석, ⑥ 소년범죄 수사, ⑦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고소 · 고발사건, ⑧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인지사건 수사가 소년경찰의 업무에 속한다.

즉 경찰은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 학교 · 종교단체 및 기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경찰은 사법관리로서의 범죄통제 기능뿐 아니라 비행예방과 개선 · 교화라는 교육적, 복지적 차원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2) 문제점–경찰의 다이버전

경찰의 소년비행통제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은 첫째, 소년경찰의 전문성과 둘째,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경찰의 우범소년에 대한 재량권 행사이다.

소년경찰은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원송치 여부 또는 훈방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경미한 비행에 한하여 훈방처리함으로써 경찰의 다이버전(Diversion)이 시행되고 있다. 우범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매년 입건되는 소년범이 약 30만 명 내외로서 대부분이 경찰에 의해 발견된다.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경찰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년에 대한 사법절차 회피(Diversion)의 목적으로 경찰에서는 우범소년

을 대부분 청소년 풍기사범으로 분류하여 훈방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소년경찰은 대만과 같은 전문적인 보호 ·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처럼 사회위탁기관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훈방처리되는 대다수의 소년은 원래의 비행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범소년이 발생하면 그 원인분석이나 개별적 처우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우를 부과하지 않고 보호자나 학교에서 어느 정도 선행만을 권고하다가 포기 ·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에서도 우범소년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선도하는 선에서 그쳐 소년법원에 송치 · 통고된 건수는 매년 5건 이내로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우범소년은 가정 · 학교 ·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며, 범죄소년은 성인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비행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집단 및 학생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인범죄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에 대한 단순한 훈방처분만으로는 비행청소년을 비행초기에 선도 · 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보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효과적인 훈방처분을 위해서는 비행소년을 단순한 훈방처분으로 종래의 비행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선도 ·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찰단계에서의 처리절차

(1) 일반적인 처리절차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거나 직접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즉 소년사법에서도 검사편의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소년사건을 불기소함으로써 사법절차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가를 제1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검사는 형사소송법상의 기소재량과 소년법상의 선의권을 배경으로 소년에 대해 선도조건 부 기소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②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소추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③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④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⑤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인 때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448조).

⑥ 소추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이러한 검사편의 주의에 의해 검찰에 의해 소년의 성격, 경제적 능력 및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아니한 채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가 결정된다면 이는 소년의 비행요인에 적합한 처분이 아닐 위험성이 많아 그 소년의 사회화에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기소된 소년들 중 상당수가 형사재판부에서 소년법원으로 송치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년들의 신체가 장기간 구금된 채 형사부와 소년부를 오가면서 스스로 좌절하거나 범죄문화의 오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제4장 제1절 선도유예실무 참조)

3 법원단계에서의 처리절차

(1) 형사법원의 처리

원래 형사법원은 소년교도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지 소년원과는 궤도를 달리한다. 왜냐하면 소년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판사에게로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소가 되어도 형사법원의 판사 결정으로 벌금형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에는 소년법원으로 송치된다. 이는 형사법원이 소년법원 송치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없으면 선도차원에서 소년법원 송치를 주로 선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또한 검사가 형벌을 위주로 한 선의권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법원의 소년법원 송치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모두 항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형사법원은 소년법 소정의 규정(제48조 내지 제55조)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형사법원에서 소년법원으로의 송치는 가능하나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의 역송은 현행 소년법상 불가능하다.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법원은 성인형사사건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나, 다만 성인에 대한 형사절차와 다른 점은 소년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① 피고인의 미약한 방어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3조), ② 피고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하여(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③ 재심사건의 심판과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483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1991년도 심급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1심단독과 구속적부심에서는 미성년자가 주된 선정사유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범에서보다 소년범에서 더 많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범에 대한 이와 같은 국선변호인제도는 그 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변호인의 불성실한 변호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선변호인의 변호활동이 부진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수, 변호사의 부족, 법관의 과중한 부담,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이 소년을 대리할 수 있고, 변호인이 없는 소년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없는 소년과 부모가 있더라도 경제적 곤란으로 변호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표준소년법원법 제27조). 또한 미국은 골트(Gault) 판결과 미란다(Miranda) 판결 등을 통하여 꾸준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가고 있다.

(2) 소년법원의 처리

소년법원에는 일반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와 처우를 받기 위해서 송치된다. 이와 같은 비행소년의 송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다.

경찰단계에서는 촉법 ·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법원 송치 또는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통고조치로 소년법원에서의 소년에 대한 처리가 시작된다. 또는 형사법원에서 판사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할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하기도 한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결정을 거친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보호자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재판시 출석하여 소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소년부 판사

의 6호 처분(단기소년원), 7호 처분(소년원) 결정에 따라 비행소년은 소년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년 본인 · 보호자 ·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현재 소년법원은 서울 가정법원, 대구 · 부산 · 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대전 · 춘천 · 청주 · 전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8개소가 있다.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 · 환경 · 비행경위 · 재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사건을 송치 받거나 통고 받으면, 소년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내용과 소년 및 보호자 기타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하고, 이에 따라 소년조사관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면, 소년부 판사는 이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심리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불개시결정'을 하면 사전은 이로써 종결되나, 보호처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보호처분의 내용을 결정한다. 또한 형사처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송검하여 소년법 소정의 규정(제48조 내지 제55조)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4 소년미결구금제도

소년이 범죄와 비행을 이유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가, 혹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가에 따라 신병처리에 관한 적용법규가 달라진다. 이에 따르면 소년형사절차에서는 '구속'이 미결구금의 형태로,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미결구금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년미결구금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소년보호이념과 상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미결구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소년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비행소년이 보호자에게 위탁됨으로써 원래의 비행환경에 다시 돌려보내 누범을 증가시킨다는 또 다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5 현행조사제도

우리나라의 소년사건 조사제도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구분하여 먼저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에 조사관을 두고 또한, 전문 분류기관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의 여부와 보호처분 관련성에 관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형사법원 판사가 보호관찰소에 판결전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조사제도 이외에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된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에 환경조사를 의뢰해야 하고, 또한 각 소년 수용시설에서는 분류처우를 위한 분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소년에 대한 조사제도 중에서도 처우의 개별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법원의 령에 의해 심리개시 전에 실시되는 조사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사회조사 등이 비행사실의 심리에 선행하여 행해지고 있다. 소년사건이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관한 조사를 명하게 되고, 조사관은 소년본인 · 보호자 · 참고인 등의 조사를 통해 소년들의 성행 · 경력 · 가정상황 등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 기간은 1개월이며, 1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도 있다(소년법 제18조). 보호처분제도가 보호주의라는 소년법의 이념에 충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행사실의 인정과정보다는 소년보호의 필요성(요보호성)의 판단과정에 중점을 두어, 소년의 요보호성의 양상과 정도에 따라 유효 · 적절하며 다양한 보호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년법에서는 요보호성의 진단과 판단을 위해 의학 · 심리학 · 교육학 · 사회학 ·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의 생활사 · 생활환경 · 사회환경 · 학교환경 · 가정환경 등을 규명하는 한편(소년법 제9조), 소년부 판사는 전문가의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 및 법원 소년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소년의 요보호성을 판단 ·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12조).

제 2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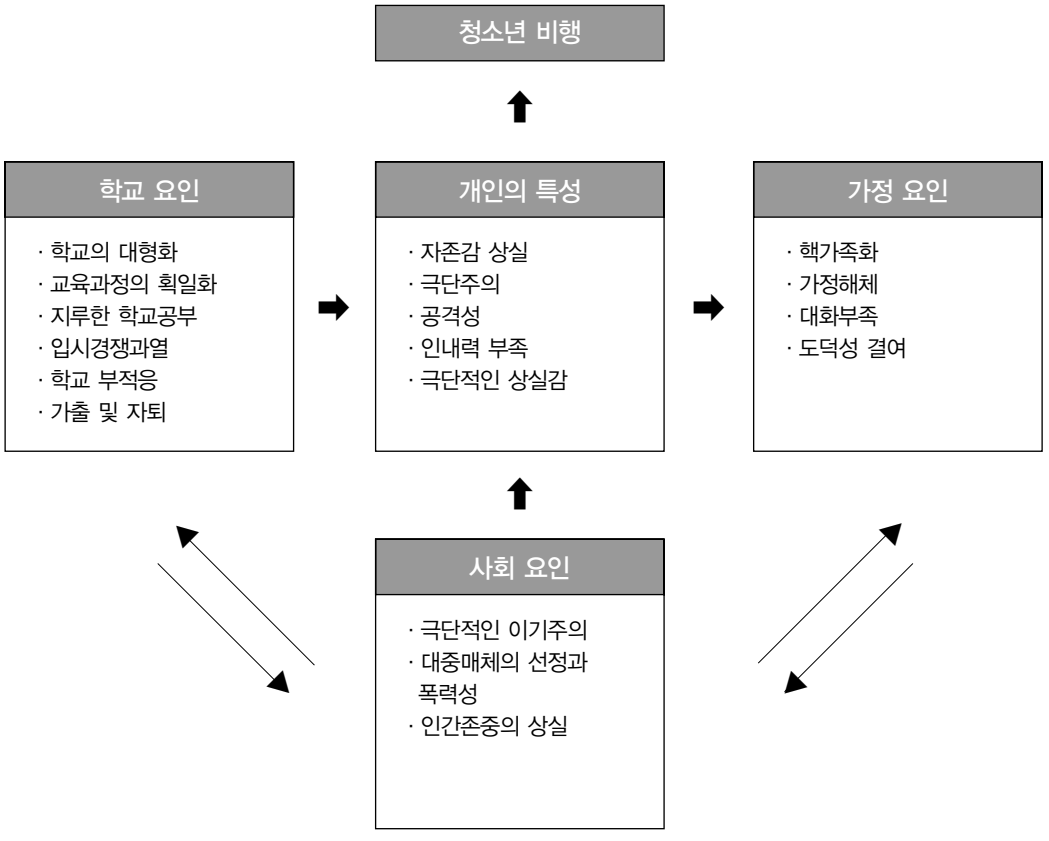
비행청소년의 상담과 선도



제 1 절 비행 유형별 지도와 선도

1 청소년 비행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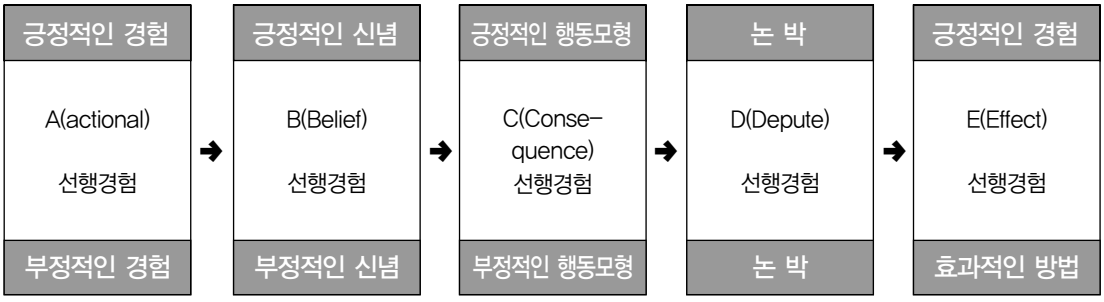
매년 청소년 비행은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비행의 원인을 추론하여 보면 가정적인 요인 · 학교 요인 · 사회적 요인 · 개인의 기질적 특성요인에 의해서 기인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2 비행 행동 모형

비행청소년들의 행동 모형을 관찰하여 보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경험한 체험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부정적인 행동모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도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에 기인되는 부정적인 행동이 표출되기도 한다.



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 누구나 나쁜 성격이나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나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
-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 과거에 일어난 나쁜 일은 현재의 나에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일이라는 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합리적 사고

-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지금도 나는 불행하다.
- 기분이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 나의 상황이(가정, 친구 등) 나쁘지만 않았어도 난 이렇게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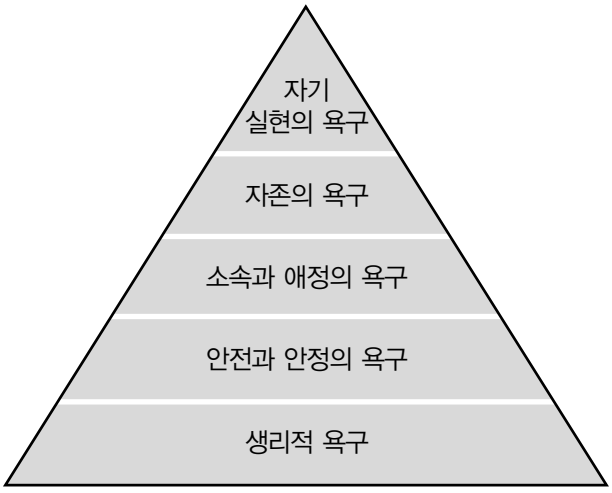
- 유독 나만 항상 운이 없다.
- 현재 나와 나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럴 것이다.
- 무슨 일에서든 나는 쓸모 없는 사람이다.
- 내가 지은 죄를 만회할 방법이 없다.
- 내 삶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간다.

3 비행청소년 상담 시 유의사항

1)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지 말 것.
2) 현재의 상황과 행동을 수용할 것.
3) 비난이나 훈계로 일관하지 말 것.
4)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
5) 문제 행동에는 합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음을 전제할 것.
6) 청소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열정을 가질 것.
7) 꾸준하게 인정하고 지지할 것.
8) 모든 결정은 스스로 자신이 내리며 책임도 자신이 진다는 인식 하에 출발할 것.
9) 어른의 기준으로 정리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 것.
10) 변화 가능성(가소성)이 있음을 전제로 임할 것.
11)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것.

4 청소년의 욕구파악

1) 학교복학(학교 복학준비 및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2) 검정고시(4월/8월 대비 검정고시 안내 및 정보제공).
3) 직업재활교육(2월/8월 직업종합학교 입학정보 제공).
4) 취업(취업알선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5) 진로지도(자신의 특기, 적성, 흥미를 고려한 진로설정 및 방법 찾기).
6) 주거문제 및 식생활 해결(가정해체 청소년들의 의 · 식 · 주 문제를 위한 시설과 연계).
7) 각종 지지를 위한 상담활동(지역사회 중심의 상담을 통한 지지망 구축).



MASLOW 욕구 5단계

5 선도 및 상담과정의 흐름도

1) In-take 과정(가정법원, 검찰청을 통한 연결).
2) 친밀감 형성(신뢰감과 친밀감 조성을 위한 도입단계).
3) 가족구조 및 지역사회 지지망을 파악하고 연계망 구축.
4) 자존감 향상(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자신감을 갖게 함).
5) 진로지도를 통한 방향성과 비젼 찾기.
6)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전환.
7)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또래 집단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8) 퇴원 후 학교 복귀자를 위한 대안교육.
9) 여가 선용 및 건전한 클럽활동을 창출하고 함께 공유함.
10) 비행청소년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11) 퇴원 후에 심리상담, 직업알선, 기술훈련, 생계지원 · 숙식제공을 할 수 있는 지지망 구축.

6 비행 유형별 접근방향

(1) 약물비행

약물비행의 특징은 단순하게 약물비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통하여 성폭행 · 절도 · 폭력 · 성매매 · 오토바이폭주 등 다양한 비행을 중복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술 · 담배 · 접착제 · 본드 · 신나 등을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3이나 고3 등이 입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성제의 복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예인들이나 일부 청소년들이 대마나 환각제를 남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약물남용의 특징

① 진행성 질환이다.
② 가족적인 질환이다.
③ 만성질환이다.
④ 초기에는 본인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늪과 같다).
⑤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⑥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3) 약물남용으로 나타나는 현상

① 의존성(dependence)
② 내성(tolerence)
③ 금단현상(with drawal)

☞ 사례 1 (김 ○○ / 29세 / 남 / 본드흡입 3회구속)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학업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드흡입을 시작하였으며 중간중간에 흡입을 중단하다가 좌절상황이 오면 다시 흡입을 하게 되면서 교도소를 반복해서 출입하였다. 치료과정에서 가족치료와 어린시절에 갖고 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회와 각종 신앙서적을 넣어 주고 미래에 대한 청소년 전문상담가로서 비젼을 갖게 하여 현재 출소하여 센터의 야간거리 상담원으로 함께 일하고 있음.

☞ 사례 2 (박 ○○ / 20세 / 남 / 오토바이폭주로 여자친구사망 구속)

가정결손으로 인하여 중학교 3년에 자퇴하고 본드흡입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으며 오토바이폭주를 하다 뒤에 탄 여자친구의 사망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금년 7월에 출소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음.

☞ **사례 3 (이OO / 19세 / 중2 자퇴 / 가출 후 원조교제 / 출산)**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가출하여 이곳 저곳에 방황하다 생계를 위해 원조교제를 하였으며 급기야 임신으로 출산함.

☞ **사례 4 (김OO / 18세 / 중1 자퇴 / 자판기털이 / 소년원입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지방으로 일을 가시면 빈집이 아지트가 되어 마을의 형들이 오고 더불어 음주, 흡연, 본드흡입이 병행되고 심야에 거리를 방황하며 자판기를 털다가 적발되어 소년원에 입소 후 출소하여 현재 검정고시에 합격함.

7 비행청소년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요건

1) 지역사회 중심의 비행 및 출소자를 돕는 센터가 필요함.
2)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함.
3) 가정, 지역사회, 지방자치, 국가의 종합적인 관심과 지지망 구축.
4) 전문가 양성과 국가적인 지원.
5)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

청소년 이해하기

- 다양하고 다른 상황에서 청소년 관찰.
- 청소년을 보는 다른 사람의 의견 청취(교사, 이웃, 친구).
-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최선의 추측.
- 2차 행동경향을 고려해 봄.
-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수정함.
- 배우자의 의견 청취(다르게 반응).
- 진단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함(I-Sight).

D 주도형

- 문제를 해결하려 함.
- 결과를 빨리 얻고자 함.
- 규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즉각적인 대답, 다양한 변화, 자립심을 좋아함.
-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함.

● 새로운 도전을 자신의 시험 기회로 삼음.

I 사고형

●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대화에 참여시키기를 좋아함.
● 마음이 열려 있으며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경향이 있음.
●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함.
● 이야기하기를 즐기며 사람들을 즐겁게 함.
● 일이나 활동에 열정적임.
● 사소한 일에 신경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S 안정형

● 사물, 일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현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좋아함.
● 인내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음.
● 집단의 리더가 되기보다는 참여하고 듣기를 좋아함.
● 사람들과 잘 지내고자 하는 것을 좋아함.
●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을 즐김.
● 일 끝내기를 신뢰할 수 있음.

C 신중형

●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음.
●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심사 숙고하는 경향이 있음.
●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일을 분담하기를 좋아함.
● 사물, 일을 계산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즐김.
● 자신의 일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을 싫어함.
● 일을 잘 조직하거나 정확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함.

효과적으로 청소년을 칭찬하는 방법

● 한마디/1분 칭찬법 기회 찾음(유형별 강점 찾음).
● 다른 사람이 자녀의 장점을 들어서 그들이 자녀를 칭찬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듣게 함.
● 청소년이 다른 행동특성의 경향 보일 때 관찰, 피드백하면 균형감 개발.

D : 감성적일 때	S : 대범함, 모험심
I : 세부사항에 관심	C : 위험감수, 감정표현

● 청소년에게 메모/편지 사용.
● 청소년이 강점을 활용해서 책임질 기회 제공.

D 주도형	I 사교형
"요구한다" ·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 분노(갈등)을 폭발시킨다. ·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	**"폭발한다"** · 일차적으로 회피한다. · 농담, 이야기 등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 · 분위기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말로써 감정적으로 공격한다.
C 신중형	**S 안정형**
"회피한다" ·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 겉으로는 순응한 것처럼 보이나 속마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일시적으로 '꽤' 하지만 승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따진다.	**"양보한다"** ·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추구한다. · 관계를 헤치지 않기 위해 양보한다. · 좀처럼 불쾌한 감정이나 화를 내지않지만 분노(갈등)가 심할 경우 겉으로 드러낸다.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

D 주도형 청소년 성장 도와주기

-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한다. 인정하게 함.
- 성숙도에 따라 책임을 늘려준다.
- 도전 · 과제 · 변화 · 활동 · 경쟁 선택권 제공.
- 목표를 실패해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음.
- 일의 속도, 말하는 속도 늦추고 여유, 휴식 도와줌.
- 타인과 어려웠던 경험을 사용해 타인의 상처를 배려로 친구를 잘 사귀게 가르침.
- 행동 교정 시 공정성 · 논리성으로 설명, 반항감 줄임.
- 약한 벌칙에는 협상하려 함. 단호하게 핵심사항만 말함(선택권을 줌).

I 사교형 청소년 성장 도와주기

- 재미, 우호적 환경에서 잘 반응, 비꼬는 말보다 격려의 말, 스킨십 필요.
- 자기 방 · 책상 · 준비물 정리 습관을 어려서 교육.
- 돈을 경제적으로 쓰는 방법을 훈련.
- 할 일을 나열하고 조직하는 법을 개발, 옆에서 칭찬해주며 체크하게 함.
- 비호의적 상황(갈등)시 확고하게 행동지도.
-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해.
- 튀는 행동(토라짐), 친구 가진 것 나도 모으기.
- 일에서 작은 것에 대한 성취를 인정해주고, 개선점을 찾게 함.
- 상호 비교, 비평가적 분위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
- 손잡아 주고,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 줌.

S 안정형 청소년 성장 도와주기

- 변화가 적고 안정적 환경에서 잘 반응, 변화 이유에 대한 영향을 설명한 후 적응시간을 줌.
- 개인적으로 인정 · 지원 · 감사를 표현.
- 갈등 시 No!하는 훈련이 필요(감정 표출).
- 원하는 것, 자기주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발표 기회를 제공.
- 어려서 청소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훈련.
- 목표 설정을 단계별로 도와줌. 칭찬하고(스티커) 보상함.
- 새로운 길 · 방법 · 지름길을 찾고 시도하기.
  (도전, 모험, 위기 직면 기회 순차적 적응하기)

C 신중형 청소년 성장 도와주기

- 요구사항 말하지 않아도 민감하게 반응 · 질문 · 표현.
- 재촉하지 않고 시간을 더 기다림, 올바르게 하려함.
- 사고한 것, 걱정거리로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표현 자제.
- 불완전성을 수용하게 함. 모두 옳기는 어렵다.
- 갈등직면 시 감정표현 훈련.
- 비판과 비평의 균형감 유지, 긍정적인 면 배려.
- 높은 기준 때문에 비교감 · 열등의식 가질 수 있음. 자기 가치 인정하고 자신감 · 긍정적 사고 훈련.
- 친구 사귀기 기회 적극적 대응, 인맥 만들기.

D 형이 선호하는 직업

행정관리자(정부 · 병원 등), 군인(육 · 해 · 공군), 장교, 훈련교관, 프로운동선수, 공장 근로자/감독자, 건축, 건설기술자, 기업인/사장, 운동코치, 관리자, 법률가, 정치가, 영화(연극)감독, 경찰, 탐정, 방송국 PD, 뉴스앵커, 트럭운전사

I 형이 선호하는 직업

영화배우, 탤런트, 코미디언, 방송인, 사회자(MC), 방송리포터, 영업사원, 관리자, 부흥사, 운동코치, 연예오락산업, 실내디자인, 성직자(설교), 정치인, 연설가, 홍보, 마케팅, 교사, 텔레마케터, 여행사, 결혼 컨설턴트

C 형이 선호하는 직업

경리, 목수, 엔지니어, 비행 조정사, 음악가(지휘자 · 작곡가), 건축설계, 예술가(화가 · 조각가 · 음악가), 작가, 저술가, 의사/치과의사, 사진가, 과학자, 통계원, 철학자, 교사/교수(전문이론분야)/학자, 은행원(증권분석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실내장식디자이너, 법률가, 도서관사서, 기계공, 군사/정보분야, 기술자, 수리공, 부동산 중개인

S 형이 선호하는 직업

예술가(화가 · 조각가), 사무원, 행정지원, 비서, 사회사업가, 요리사, 고객서비스, 유아교육자, 상담원, 교사, 외교관, 간호사, 연구조사원, 전기기사, 약사, 부동산 중계인, 인사/교육관련 업무, 실험실 기술자, 수의사, 관리자, 감독자, 웨이터/웨이트레스, 작가

유형별 선호 직업군

제 2 절 상담심리치료

Ⅰ. 서 론

1 상담의 정의

상담이란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좀더 건설적으로 적응하도록 개별적으로 만나서 도와주는 것이다.

2 상담의 형태

1) 명령과 금지
2) 훈계 · 권고 · 선서 · 약속 등
3) 암시 혹은 제시
4) 카타르시스
5) 충고와 설득
6) 비지시적 상담

Ⅱ. 상담의 핵심원리

1 공감적 이해

(1) 공감적 이해의 필요성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욕구 중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것이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이 욕구가 유달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탈옥수 신창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전과자의 90%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학교 교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자신의 일기에 기록한 바 있다.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없고,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애들이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소음 때문에 아내가 위층 젊은 주부와 심하게 다툴 때 남편이 대체로 어떻게 말할까?

(2) 상대방의 모든 것을 경청해라

경청(傾聽)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서 상대방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상대방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경청은 곧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드는 경청(敬聽)이 되는 셈이다.

경청요령은

① 내가 할 말은 1분 이내하고

② 상대방은 2분 이상 말하게 하고

③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3번 이상 응대하자

반응이 없거나 불쾌한 반응이어서 저지른 단순폭행범죄가 한국의 전체 폭행범죄의 70%에 이른다.

성자(聖者)는 공감해주는 에너지가 100%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 성자까지는 못 되더라도 공감해주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요, 모든 관계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연구

〈사례 1〉 달과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어린 공주님이 살고 있었다. 공주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하늘 높이 금빛을 내며 떠 있는 달을 보고 불현듯 그 달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공주는 부모님께 달을 따다 달라

고 보채기 시작했다. 왕과 왕비는 공주에게 달은 따올 수 없는 것이라고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주는 들은 체 만 체 여전히 달을 따다 달라고 졸랐다. 공주가 쉽게 물러서지 않자 왕은 유명하다는 학자들을 불러들이고, 의원도 불러들이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주에게 달은 따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공주님,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달을 따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주님, 달은 너무 커서 가까이 갔다 하더라도 따올 수는 없습니다."

"공주님, 달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셔서 병이 든 것 같습니다. 제발 더 이상 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주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달을 따다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드디어 공주는 단식 투쟁에 들어섰다. 왕과 왕비는 속수무책 설득과 협박을 반복했지만 공주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다.

이 때 공주와 친하게 지내던 광대가 나타났다.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광대는 공주를 만나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광대 :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공주 : 달은 동그렇게 생겼지 뭐.

광대 : 그러면 달은 얼마나 큰가요?

공주 : 바보, 그것도 몰라? 달은 내 손톱만하지. 손톱으로 가려지잖아.

광대 : 그럼 달은 어떤 색인가요?

공주 : 달이야 황금빛이 나지.

광대 : 알겠어요, 공주님. 제가 가서 달을 따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공주의 방을 나온 광대는 왕에게 아뢰고 손톱 크기 만한 동그런 황금 구슬을 만들어 공주에게 가져다주었다. 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그렇게 원하던 '달'을 드디어 손에 넣은 것이다. 기뻐하는 공주를 바라보며 광대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달을 따왔는데 마침 보름날인 오늘밤 달이 또 뜨면 공주가 뭐라고 할게 염려가 된 광대가 공주에게 말을 건넸다.

광대 :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오늘밤 또 달이 뜨면 어떻게 하지요?

공주 : 이런 바보, 그걸 왜 걱정해 이를 빼면 새 이가 또 나오지? 그것과 같은 거야. 달은 하나를 빼면 또 나오게 되어 있어. 그리고 달이 어디 하나만 있니? 달은 호수에도 떠 있지, 물컵에도 떠 있지, 세상천지에 가득 차 있어. 하나쯤 떼어 온다고 문제 될 게 없지.

〈사례 2〉 남자와 파리

이 예화는 오쇼 라즈니시가 강의한 금강경(손민규 역, 1995)에 나오는 글이다. 원문을 조금만 고치고 거의 그대로 인용하도록 한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는 자기 뱃속에 파리 두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입을 벌리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 틈에 파리가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리는 그의 뱃속에서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그는 줄곧 걱정에 시달리는 나머지, 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는 계속 이쪽 저쪽을 왔다갔다하며 "그놈들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젠 저쪽으로 갔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는 거의 미칠 지경에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은 당신의 상상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행한 상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상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상상이든 현실이든 아무 차이가 없다. 그는 현실과 똑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그의 배를 만지며 말했다.

"그렇군, 그놈들이 여기에 있다."

내 말을 듣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는 나의 발을 만지며 경의를 표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제 고충을 알아주는 유일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용하다는 의원은 거의 다 만나 보고 온갖 방법 등을 다 써 보았지만 그들 모두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약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시오. 왜 자꾸 내가 환상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오? 이제 제 고통을 알아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아시지요?"

내가 말했다.

"나는 알 수 있다. 분명히 파리가 그대 뱃속에 있다. 나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전문가이다. 그대는 사람을 제대로 만났다."

계속해서 내가 그에게 말했다.

"자, 여기에 누워 눈을 감아라. 내가 그대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그놈들을 꺼낼 것이다. 입을 벌려라. 그러면 내가 주문을 외워 그놈들을 불러낼 것이다."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그가 말했다.

"진작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 가리개를 씌우고 일을 벌리라고 말했다. 그가 매우 행복해 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는 파리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그런 상태로 놔두고 나는 재빨리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파리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였다(인도에는 파리가 많다). 내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전에 나는 한 번도 파리를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가까스로 파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나는 병 속에 갇힌 파리 두 마리를 보여 주었다.

그가 말했다.

"이 병을 제게 주십시오. 그 바보들에게 가서 보여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결론적으로 공감적 이해란 대화하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의 엉뚱한 논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논리를 확장 ·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들어 있는 기본 정신은 상대방의 개인세계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문제를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인간중심 철학이다.

2 무조건적 수용

(1) 수용의 의미

첫째, 비소유적.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동일한 가치와 대우를 받을 만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라는 뜻이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는 거의 소망이 있고,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는 그 나름대로 좋고 싫어함이 있으며, 나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게도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자신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을 누리고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둘째, 무조건적.

상대방의 긍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적인 행동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온정 어린.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가지듯,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온정 어린 따뜻한 배

려를 함으로써 내담자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푸른 새싹이 움터 나오는 데에도 따뜻한 봄이 필요하듯 사람의 성장에도 따스한 관계가 필수적이다. 상담자가 제시하는 따뜻한 관심 역시 내담자에게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상처입고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그치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처를 감싸고 위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수용의 내용

첫째, 행동의 수용.

부정적 행동까지 받아들인다.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인의 죄 역시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도둑질이라는 행동 속에 담겨 있을 만한 긍정적 동기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인격의 수용.

상대방의 생각 · 감정 · 의지가 나와 다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셋째, 존재에 대한 수용.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분별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관찰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한 바를 자신의 판단을 섞지 않은 채 내담자에게 되돌려 준다.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상담자의 수용적 태도는 내담자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다.

(3) 예화를 통해 본 수용

〈예화 1〉 장발장과 주교

다음날 아침, 미리엘 주교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글루아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주교님, 은식기와 은촛대가 보이질 않아요! 주교님께서 어디 다른 곳에 두셨어요?"

"아니, 난 모르는 일이오."

"그럼 역시 도둑맞은 것이 분명하군요. 그 남자예요. 바로 그 남자가 훔쳐갔다구요!"

정원의 화초가 누군가의 발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주교가 그것을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났던 마글루아르가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저길 보세요. 저기에서 담을 넘어간 것이라니까요."

담에는 누군가가 넘어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주교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은식기가 원래 우리들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젯밤의 그 남자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마글루아르는 놀란 얼굴로 주교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교님? 앞으로 식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지요?"

"아니, 난 나무 그릇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하고 주교가 대답하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처럼 보이는 세 남자가 한 남자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붙잡혀 온 사람은 바로 장발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계급이 높은 헌병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을 때, 주교는 벌떡 일어나 장발장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 난 또 누구신가 했군요. 은촛대 한 짝을 잊고 가셨더군요. 그것도 당신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장발장은 깜짝 놀라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주교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상한 차림새가 눈에 띄어 붙잡아 조사해 보니 은식기와 은촛대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말씀드렸겠지요? 이곳에서 묵었는데 선물로 받았다고요."

"예,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럼 이대로 놓아주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장발장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교가 내미는 은촛대를 받아들면서 그는 부들부들 몸이 떨렸습니다. 주교는 속삭이듯이 그러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당신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악의 세계가 아니라 선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집을 나서자 도망치듯이 다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무작정 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조금도 시장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몹시 어지러웠습니다. 그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을 믿지 못하는 그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헌병에게 끌려가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일도 없었을 텐데. 멀리 저편에는 알프스 산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장발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자 들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빅토르 위고(강명희 옮김), 장발장, 지경사, 1996. pp.22-25)

〈예시 2〉 미혼모와 수행승

한 젊은 수행승이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 근처에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젊고 미남이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그를 보고 즐거워할 정도였다. 그들은 그를 존경했고 위대한 성자라 믿었다. 그런데 하루는 모든 것이 거꾸로 뒤바뀌었다. 한 나이 어린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그녀는 부모에게 아이 아버지가 그 수행승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마을 전체는 그를 불신하고 비난했다. 깊은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처녀가 아기를 낳자 그들은 그의 암자로 몰려가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 매우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그들은 아기를 그 승려에게 던졌고, 특히 그 처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애는 당신 자식이다. 그러니 책임을 져라."

그러자 승려는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가?"

그 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아기를 돌보는 데만 열중했다,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불탄 암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아기는 배가 고파서 계속 울어댔다. 그 승려는 아기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동냥을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누가 그에게 시주를 하겠는가? 단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위대한 성자로 대접받았는

데 이제 그는 가장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린 것이다. 그는 집집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으나 그들은 차갑게 문을 닫아 버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를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처녀의 집에 당도했다. 처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때 승려가 문 밖에 서서 단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나는 큰 죄인이다. 그러나 아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대는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다."

그러자 그 처녀는 아기의 진짜 아버지를 숨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했다. 그 승려는 절대적으로 결백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는 다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특히 처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아기를 돌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애걸했다.

"당신은 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기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승려는 "그런가? 아 아기가 내 자식인가?"라고 말했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가? 이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닌가?"

(오쇼 라즈니시(이연화 옮김). 탄트라비젼Ⅲ, 태일출판사, 1994, pp. 71-72)

이상 두 가지 예화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수용에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은 짧았지만, 그 효과는 사람의 일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힘이 들어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잘못된 점을 수용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던 반응이다. 이 예상치 못하던 수용은 사람들의 사고 틀을 정지시키고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내면에 커다란 충격을 준다. 그리하여 쉽게 잊을 수 없는 자국을 남긴다.

셋째, 타인의 수용 반응은 자신을 수용토록 이끌어 주고 결국은 문제 차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수용받음으로 인해 문제가 되던 도둑질 · 간음 · 거짓말 등이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되어 버린다.

넷째, 수용의 자세에는 비소유 · 무조건 · 비판단의 속성이 함유되어 있으며, 사람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온정이 스며 있다.

다섯째, 수용에는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다.

3 진정성

(1) 진정성의 의미와 가치

진정성이란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과 흥미를 가짐과 아울러 순수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열고 대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이 진정성은 성장하는 모든 관계의 바탕이요, 자양분이다.

(2) 진정성의 내용

첫째, 성실성.

성장을 촉진하는 만남을 이루려면 만남의 당사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특히 상담관계에서 상담자는 온 정성을 쏟아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만이라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세계에 모든 힘을 다해 몰입해 들어가야 한다. 내담자에게 성실히 몰입해 들어가려는 상담자의 태도는 내담자가 상담하려는 문제는 물론 내담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성실한 상담자를 만난 내담자는 자신의 일에 정말 관심을 갖는 원군을 얻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일종의 감동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안도감과 감동은 결국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격려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

〈예시〉 지성이면 감천

◎ 초나라의 양유기는 돌을 야수인 외뿔들소로 잘못 보고 쏘았는데, 화살이 돌에 맞으니 화살의 날개까지 돌이 집어삼킬 정도로 깊이 돌을 파고 들어가 꽂혔다. 그것은 돌을 진짜 외뿔들소로 생각하고 오직 그놈을 맞혀야겠다는 일념으로 쏘았기 때문이다.

◎ 백락은 말에서 준마를 감정하는 일을 배웠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말로 보였다고 한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온통 말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 송나라의 포정은 소의 각을 뜨는 일에 능숙하였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소로 보였고, 3년이 지난 뒤에는 소가 한 덩치의 소로 보이지 않고 각 부분이 흩어져서 각각 각으로 보일 정도가 되었다. 각을 뜨는 데 쓰는 칼은 이미 19년이나 써서 오래되었건만, 칼날은 새로 간 것처럼 번득였고, 칼날에 이가 빠진 따위의 흠이 조금도 없었다. 그것은 소의 살을 떼어내는 데에 있어 뼈를 건드리는 일이 없이 칼을 잘 놀렸기 때문이며, 소를 다루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 종자기는 어느 날 밤에 경이라는 악기의 음색을 듣고는 비감에 잠겨, 사람을 시켜 경을 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대가 치는 경의 음색은 어찌도 그리 슬픈가?"하고 물으니,

"저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형은 모면하고 살아남았습니다만, 노비가 되어 술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형을 모면하고 살아 있습니다만, 주인을 위해 경을 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를 보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재력이 없습니다. 제 자신의 몸도 주인의 소유물이니,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제 처지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종자기는 긴 한숨을 내쉬면서

"슬프고도 슬픈 일이로다. 사람의 마음은 팔이 아니다. 팔은 또 경을 치는 자루 달린 망치도 아니요, 돌도 아니다. 그러나 슬픔이 마음에 배어 있으면 나무나 돌, 곧 경의 음색에 반응하여 슬픈 소리를 내는구나." 하고 개탄하였다.

이와 같이 이쪽에서 무슨 일에 성실하면,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느낌이 나타나고, 자기 자신에게 감동하는 일이 있으면 저절로 남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어찌해서 억지로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영호 편역, 여씨춘추(12기), 서울 : 자유문고, 1992, p. 277-278)

둘째, 일치성.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내면의 느낌과 그 표현을 일치시키는 것이 일치성이다. 즉, 속과 겉을 조화롭게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일치성의 핵심이다.

- 상담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담자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
- 상담자는 자기의 느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 어떤 일이 있어도 내담자를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 단 상담자의 솔직한 표현이 상담관계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판단될 때는, 침묵이나 수동적 반응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뢰성.

상담자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고 순수하게 내담자를 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내담자에게 깊이 있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상담자의 성실성과 일치성은 그 자체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담자에 대해 신뢰감을 갖는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담관계에서도 상호 신뢰감이 관계의 기반이 된다. 상대방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자기 탐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열어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원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신뢰감을 쌓는 것이다. 신뢰감이 밑바탕 되어야 내밀한 부분에 대한 자기 탐색이 가능하고, 자기 탐색이 깊어질 때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이 초래될 수 있다.

상담자의 성실하고 일치된 자세가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불어넣고 결국 내담자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상담 예화를 통해 진정성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도록 하자.

〈예화〉

1960년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10명의 여자 환자들로 구성된 심리치료 집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 중 20세가 된, 경계선상의 정신적 결함이 있는, 한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주로 자기가 그 정신병원에 있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즉 여가치료에서 하는 영화 · 춤 · 볼링 · 수영 · 배구 · 농구 · 테니스 등을 얼마나 즐기는지에 대해 늘어놓았고, 승마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나머지 다른 여자들은 크게 웃으며 그녀를 비웃었지만, 나는 짜증이 나서 그녀를 '컨트리클럽 증후'를 가졌다고 비난했다. 광범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갖춘 심리치료가 환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특히 '대화치료'에 익숙지 못한 교육 수준이 낮은 하류층 사람들에게는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의존성을 조장 · 강화하고, 그들의 결핍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원을 이용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 '컨트리클럽 증후'라고 불린 이 환자는 이런 부류에 속한다.

나는 그녀에게 지금 여기에 그녀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병원에 오게 된 이유를 발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로부터 해방되어 퇴원하는 것이라고 야단을 쳤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여기에 있는 남자들이 나를 매춘부라고 말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진짜 처녀란 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은 매우 화가 난다고 했다. 나는 이 때 '심리치료를 창 밖에 던져버릴' 정도로 화가 나서 그녀에게 나의 생각과 느낌을 거침없이 털어놓았다. "그래요. 당신은 마치 매춘부처럼 말하고, 매춘부처럼 옷을 입고, 매춘부처럼 걷고, 매춘부처럼 보여요. 그리고 당신은 식당에서 '더러운 농담'을 한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남자들이, '흠, 그래. 저 여자가 여럿이 있는 데서도 저렇게 까놓고 말하는 것을 보니, 뒤로는 무슨 짓을 못할까?'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신

이 실제로 어떻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어떤 상을 불러일으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주관적 상을 따라 당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환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치료 집단에 있던 다른 여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조지, 프랭크가 옳아. 우리는 당신이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식당 근처에 있는 그 남자들은 달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네가 너무 작은 블라우스를 입어 젖가슴을 내보이고, 너무 짧은 스커트를 입었다는 말을 하기도 해. 너는 그런 여자에게나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구."

이렇게 되자 이 환자는 훌쩍이며 다른 여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자세를 갖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성을 들여 그녀에게 도움을 제공했고, 그녀는 열심히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열흘쯤 지나자, 그녀는 자기 몸에 맞는 블라우스를 입었고,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했으며, 무릎까지 내려오는 적당한 길이의 스커트를 입었고, 점잖은 걸음걸이로 걸었으며, '더러운 농담'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등, 다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아주 매력있는 '젊은 숙녀'의 외모를 갖추게 되었다.

집단 동료들이 그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녀의 우울증은 개선되었고, 그녀의 행동도 극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소문들도 갑자기 멈추게 되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따뜻하고 우정어린 행동과 야하게 유혹하는 행동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은 기뻐하며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고, 2주일 후쯤 고향 마을에 직장을 얻게 되자 바로 퇴원하였다. 그 이후 그녀는 다시 병원에 오지 않았다.

Ⅲ. 참고 자료

1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이 해 인

주여 나로 하여금
이웃의 말과 행동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하루의 작은 여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의 말과 행동을
건성으로 들어 치우거나
귀찮아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가로막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웃을 잘 듣는 것이
곧 사랑하는 길임을
내가 성숙하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적당히 듣고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는 무심함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못 들은 척 귀 막아 버리고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하며 핑계를 둘러대는
적당한 편리주의, 얄미운 합리주의를

견책하여 주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과 사건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앉아야 할 자리에 앉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울어야 할 때에 울고
웃어야 할 때에 웃을 수 있는
민감하게 듣고 순응하는
삶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자신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잘 듣는 사람만이
남을 잘 들을 수 있음을
당신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거듭 깨우치게 하소서
선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침묵과 고독 속에
자신을 조용히 숨길 줄도 알게 하소서

나는 두 귀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귀머거리임을 몰랐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만 많이 했음을 용서하소서

들으려는 노력도 아니하면서

당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해
멋대로 의심하고 불평했음을
지금은 뉘우칩니다.

매일매일의 내 작은 여정에서
내 생애의 큰 여정에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이가 되도록
밝고 큰 귀와 입을 갖고 싶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위해
마음의 귀가 크게 열려 있는
성인들의 사랑을 본받고 싶습니다.

말소리만 커지는 현대의 소음과
언어의 공해 속에서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겸손히 듣고 또 듣는
들어서 지혜를 깨우치는
삶의 구도자 되게 하소서

2 온정으로 바꾼 인생

온정으로 바꾼 인생

1921년에 Lewis Lawes는 뉴욕에 있는 Sing Sing 교도소 소장이 되었다. 당시에는 Sing Sing 교도소보다 포악한 교도소는 없었다. 그러나 Lawes 소장이 20년이 지나 은퇴할 무렵에 그 교도소는 인도적인 기관이 되어 있었다. 그 교도소를 조사해 본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는 Lawes 소장의 공로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소장은 "교도소밖에 묻혀 있는 나의 훌륭한 아내 Catherine 덕분이죠." 라고 말했다.

Catherine은 남편이 교도소 소장이 될 무렵 세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아내였다. 모든 사람

들이 처음부터 교도소 담 안에 절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녀를 막지 못했다. 교도소에서 첫 농구경기가 개최되었을 때 그녀는 세 예쁜 아이들을 데리고 교도소 체육관으로 가서 수감자들과 함께 스탠드에 앉았다.

그녀는 "내 남편과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볼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나를 보살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소자들과 친숙해지고 그들의 기록을 알아야 하겠다고 우겼다. 그녀는 한 살인범이 장님인 것을 알고는 그를 찾아갔다. 그 사람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는 "점자를 읽을 줄 압니까?" 하고 물었다.

"점자가 뭐요?" 하고 그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점자를 가르쳤다. 몇 년 뒤 그 죄수는 그녀를 만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다.

훗날 Catherine은 교도소 안에 한 농아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수화를 배우기 위해 수화학교에 다녔다. 많은 사람들이 1921년부터 1937년까지 Sing Sing 교도소에 예수가 Catherine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는 자동차사고로 죽었다. 다음 날 아침 Lewis Lawes 소장은 결근을 하였고 부소장이 그를 대신했다. 교도소 전체가 무언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각 알게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그녀의 시신은 교도소에서 1킬로 떨어진 그녀의 집에 마련된 관속에 누워 있었다. 부소장이 아침 일찍 순찰을 돌다가 가장 난폭하고 험악하게 생긴 많은 죄수들이 한떼의 짐승들처럼 정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깜작 놀랬다. 가까이 가서 그들 얼굴에 비통한 슬픔의 눈물을 보았다. 그는 그들 모두가 Catherine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다. "좋소, 여러분. 가십시오. 다만 오늘밤에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열어주자 Catherine에게 줄지어 서서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단의 죄수들이 1킬로를 경비원 하나 없이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그날 밤에 되돌아왔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 3 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대책

서 론

청소년 약물남용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하고, 이들에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 마약남용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어떤 약물이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미치는지, 이런 약물의 종류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약물로 마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환각제 · 기타 법으로 규제되지 않으나 남용되는 약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마약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늘 마약에 대한 사건 사고를 들어왔기 때문에 '마약은 대략 이런 것일거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더욱 마약의 정의를 안다고 하여도 여기에 속하는 종류를 보게 되면 더욱 어려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마약은 사전에 의한 의미로는 고통을 경감시키는 반면, 사용을 중단하면 탐익성 및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정의되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우리가 약물 또는 약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를 영어로는 drug이라는 용어로 옮기게 되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drug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약품 즉 medicine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마약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별생각 없이 머리가 아파 아침에 drug을 먹었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은 마약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drug의 의미가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약물은 사용할 때 적절히 사용하면 사용(us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오용(misu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마약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남용(abuse)된다. 남용이란 약물의 기본적으로 의약적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으로 두통약이 환각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편안한 기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

게 남용되는 약물(Abused drugs)은 대부분이 마약으로 구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약물들을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로 나뉘어 그 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2000년 7월 이전에는 남용되는 약물을 마약법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 대마관리법으로 규제하였으나, 2000년 7월부터는 이들 3개의 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남용약물의 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약물의 종류는 각각 100종 이상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 모두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률이 통합이 되었어도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에 속하는 약물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들에 속하는 약물을 크게 대별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최근 유입되는 마약류의 특징

남용되는 약물에 대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으로는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ATS)의 남용 증가를 들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 등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은 식물성분에 함유된 각성제를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이 합성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확산을 촉진시켰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현대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작업능률의 향상 · 인내심 · 자신감 등을 향상시킨다는 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남용하게 되었다.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남용은 아시아 · 북아메리카 등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의 남용이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암페타민류의 남용은 지역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약물에 따라 남용되는 패턴 역시 달라 유럽 · 호주 등에서는 암페타민이 주로 남용되는 반면, 북미 · 아시아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주로 남용되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암페타민보다도 엑스타시의 사용빈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다. 메스암페타민 남용은 일본 · 대만 및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 호주 등에도 이의 남용이 심각해지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다양한 마약류의 특징을 보면, 엑스타시 · MDMA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한 약물(amphetamine-type stimulant)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값이 싸고 환각 작용의 지속시간이 길다는 점 때문에 남용 정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과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하여 파티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남용되는 식물인 khat의 국내 유입(khat : 잎을 씹으면 암페타민과 같은 흥분작용이 일어나 원기가 생기고 각성 작용이 생긴다고 함), 태국에서 유입되는 야바, 최근 케타민과 암페타민을 혼합하여 엑스타시와 같은 에너지와 편안함을 갖기 위해 이들 약물이 파티장 같은 곳에서 남용되고 있다.

중국산 비만 치료제인 펜플루라민, 태국산 비만 치료제에 함유된 펜터민 등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살을 빼고자 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남용되고 있다. 이들 약물의 특징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 약물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지를 모르고 살을 빼겠다는 생각만으로 복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마수지인 해쉬쉬와 더불어 온실에서 재배한 대마의 등장으로 THC의 농도가 높아 지고 있으며, LSD의 유입도 문제화되고 있다. 이란 사람들의 국내 취업으로 생아편 등의 남용이 공장 지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특징을 보면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이 주를 이루고, 아주 특징적인 경향으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약물의 남용을 생각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이들 보통약의 남용정도는 전체 규제 남용되는 약물과 비교하여 볼 때 1992년 이래 매년 약 10% 수준으로 그 수적인 면만 본다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통약 중 남용되는 약물로는 진해거담제인 dextromethorphan, 근육이완제인 carisoprodol 등이 있고,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날부핀이 있다.

Polydrug 형태의 남용도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1996년까지는 한가지 약물만의 남용이 주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메스암페타민 · 대마 등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례가 보여지고 심한 경우 3가지 다른 마약류를 복용하는 polydrug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2 마약류의 정의, 분류 및 약리작용

(1) 마약의 정의

마약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반면, 사용을 중단하면 탐익성 및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앵속 및 아편 알카로이드류 · 코카인 · 헤로인 및 페치딘 등의 마약이 여기에 속한다.

마약은 습관성(habituation)이 크고, 내성(tolerance)이 있어 증량을 하여야 효과를 나타내며, 탐익성(眈溺性 : addiction)이 있어서 사용을 중단하면 이상(異常)의 갈망(渴望)을 나타내어 이를 얻기 위하여 시위적 · 연극적으로 갖은 애원을 다하며, 취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폭

언 · 폭행 · 기물파괴 등을 감행한다. 또한 약물의 효력이 소실되면, 불쾌감 · 침울 · 가려움 · 환각 · 불면 · 식욕상실 · 발한 · 구토 · 설사 · 사지통 · 경련발작 등의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법률로서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2) 마약류의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어 이들의 불법소지, 불법사용 또는 제조, 매매의 행위에서 대해 처벌을 한다. 마약으로 규제되는 것은 양귀비 · 아편 · 코카엽과 더불어 아편 알카로이드(morphine, heroin, codeine) · 코카알카로이드(cocaine) · 페치딘 · 메사돈 등의 합성마약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환각제에 속하는 LSD ·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 · 암페타민 · 엑스타시류와 바르비탈산유도체가 속하는 수면제가 있고, 로라제팜 · 트리니트라플루제팜 등의 신경안정제류 등이 규제되고 있다. 대마는 대마엽, 해쉬쉬, 해쉬쉬오일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3) 마약

1) 아편

양비귀의 미숙과에서 채취한 유액을 건조한 물질을 아편이라 하며 약 10%의 모르핀, 0.5%의 코데인, 1%의 파파베린 등 30여 종의 알카로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산지에 따라 알칼로이드의 함량차는 크며, 남용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르핀이다.

2) 헤로인(디아세칠 모르핀)

모르핀을 아세칠화하여 생성된 물질로 정제가 잘된 경우에는 백색의 분말이나 그 순도는 원료인 모르핀의 제조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갈색의 분말도 있다. 헤로인을 위장 또는 증량하여 판매 취급할 목적으로 희석제나 증량제를 사용하는데 유당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그 외에 카페인 · 암페타민 · 바르비탈산 등이 사용된다. 헤로인은 의약용으로는 전혀 쓰이지 않고, 경구 · 흡입 · 주사 · 흡연 등에 의하여 마약으로 남용되고 있다.

3) 코카인

중추신경 흥분제로 중남미 즉, 페루 · 볼리비아 · 브라질 등에서 재배되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코카엽에는 평균 0.5~1%의 알카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쓴맛이 있는 백색분말

로 주로 코점막 흡입의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중독성이 마약 중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

4) 합성마약

페치딘 · 메사돈 등이 여기에 속하며, 메사돈은 마약중독자의 치료에 쓰인다. 합법적으로 제조되나 불법으로 남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

1)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등장되는 약물은 히로뽕, 필로폰으로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밀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는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가 주된 법과학적 문제였으나, 1985년경 부산과 서울 용산의 유흥가에서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약물남용자가 인지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게 되었다. 약물복용 여부와 관련되어 당 연구소에 의뢰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불법약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메스암페타민 관련 의뢰건수는 1985년에 13건, 1986년 301건, 1987년 415건, 1988년 2,438건 의뢰되어 1988년까지는 급증하였으나 1995년까지는 그 수가 감소하였고 1996년부터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4,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① 약물투여 경로

메스암페타민은 주로 정맥이나 피하주사로 투여되지만 간혹 경구 · 흡연으로도 사용된다. 흡연에 의해 폐로 흡수되든가 snorting에 의해 코점막으로 흡수된다. 경구투여하면 위장관을 통해 잘 흡수되며 신체 각 부위에 잘 분포된다. 남용자들은 이 약물의 염산염 형태를 10~30mg 정도 물에 녹여 정맥에 주사하는데, 심한 경우는 2~3시간마다 500~1000mg을 주사하기도 한다.

② 상용량 및 부작용

상용량은 10mg이며, d-이성체에 의해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처음에는 안락감이 나타나지만 불안 · 불면 · 구토 · 두통과 더불어 중증이 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허탈상태에 이르러 혼수에 이른다. 연용에 의해 내성이 생기기 쉽고 처음의 흥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약물의 용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금단현상은 강하지 않으나 수면장애 · 피로감 · 두통 · 활동성 저하 등

이 나타나며,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 기분이 저하되고 피로감이 생긴다.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심한 정신증상은 정신분열증과 비슷한 정신이상 상태에 이른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특이한 정신적 부작용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몸을 떨며, 신체적 불안감을 느끼는 과대 망상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며, 비현실적으로 사물을 오해하여 살인 ·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각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정신착란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약물작용에서 깨어나게 되면 심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장시간 기분이 저하되는 점도 부작용으로 들 수 있다.

2)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로는 바르비탈산유도체 및 벤조디아제핀류 등으로 이들은 대개 다량을 연용할 경우 마약보다는 작용이 약하지만 습관성이 있고 탐익현상을 일으키나 과량을 복용하지 않는한 치명적은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는 수면제로는 바르비탈산유도체류가 있는데 이들은 중추신경 억제제로 육체적 ·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심 · 구토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시간 · 거리 등에 대한 판단력이 상실되므로 반사력 · 운동조절기능 등이 차단되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수면제는 특히 술과 같이 복용하면 약물의 상승작용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벤조디아제핀유도체류는 불안 · 긴장 등에 쓰이고, 페노치아진유도체류는 정신병치료에 쓰이는데 모두 중추신경 억제제로 의존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각장애 ·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고, 약물복용 후 운전을 하면 위험하게 된다. 또한 벤조디아제핀유도체는 마취강도 사건에도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3) 엘에스디(LSD)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환각제로 밀이나 다른 곡식에서 자라는 균에서 추출한 반합성 알칼로이드이다.

아주 작은 양으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평균 100㎍ 정도이면 작용이 6~12시간 지속된다고 한다.

무색 · 무취 · 무미로 액체나 분말의 형태이고, LSD의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는 동공확대 · 혈압 상승 · 체온저하 · 메스꺼움 · 빠른 심장박동 등이 보고되어 있다. 환각작용 · 혼란 · 시각 · 청각 · 촉각 · 후각 등에 변화가 생기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고 한다.

4) 지페프롤

비마약성 진해제로 아편과 같은 신체적 의존성 등의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처방대로 복용하면 안전한 약물이라고 하나 다량을 복용할 경우에는 아편과 같은 안락감이 생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아편과 같은 증상 및 환각작용을 얻기 위해 1회 복용량인 75mg보다 10~15배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량의 약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 사례도 많이 발생하여 1991년 이래로 국내에서 약 65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었었다.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사이로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었고 여자가 21명, 남자가 44명으로 남자가 많았다. 이 약물은 그 남용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1995년 9월 4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그 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그 이후 사망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5) 야바(Yaba)

야바(Yaba)는 주로 태국 등지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제제를 일컬으며, 정제형태로 백색 · 오렌지색 · 황색 · 보라색 · 갈색 · 검은색 · 녹색 등 다양한 색상과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야바제제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어떤 제제에는 데오필린 · 코데인 · 헤로인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6) 엑스타시(ecstasy)

이들 약물의 작용은 자기 몰두를 일으켜 개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게 되어 평화로운 느낌을 갖게 되며, 독성 작용으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지게 된다. 이들은 모두 신경독성이 있는데 그 독성의 정도는 MDA, MDMA ,MDE 등의 순이나 빈맥, 구갈, 땀, 진전, 수면장애, 불면 등이 처음에 나타나고 나중에는 간증대, 황달 등이 일어난다. 만성 장기간 복용으로 인한 작용으로는 간장애, 기분저하, 정신병, 심장마비 등이 일어난다.

(5) 대마

대마는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환각성 약물로 미군부대 주둔지역에서 끽연용으로 건조엽을 사용 또는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예가 가끔 있다. 원래는 인도산 대마초만이 규제되었으나, 한국산 대마도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에 관련 법규는 대마관리법(1981. 4. 13 법률 제3441호)이 공포되어 있으며 1조에 “이 법은 대마의 관리

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의 1항에 "이 법에서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마엽 중 유효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THC)이며, 그 외에도 칸나비놀 · 칸나비디올이 있다. 대마엽 중 THC의 함량은 5%까지도 이르나 보통은 2~3% 범위이고 대마수지로 만드는 해쉬쉬 및 해쉬쉬오일등은 대마엽보다 THC 함량이 훨씬 높다. 대마는 정신적 · 신체적 의존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육체적으로 결막염 · 기관지 천식 · 만성 기관지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며, 정신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왜곡되고 취한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육체적 · 정신적으로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또한 대마 사용에 의한 환각 또는 몽롱한 상태에서 분별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3 마약류 남용원인

약물을 남용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호기심으로,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서, 약물의 세계가 어떤가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주변압력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자아나 가치판단력이 결핍되어, 주변상황(전통 · 가치 · 문화, 권위 등)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허무와 권태로부터 향락을 추구하고자 약물을 남용한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몇 번의 경험을 거친 후 그같은 행위가 의학적, 법적,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남용을 중단한다. 그러나 현실도피나 환각을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중단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을 설명하는 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원인을 조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들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

(1) 생물학적 요소

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질이 불균형하거나 어떤 물질이 많다면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생물학적 요소에는 유전적 요소, 신경학적인 요소, 특이한 생리학적인 요소 등이 있다.

1) 유전적 요소

가족 연구 · 쌍둥이 연구를 통해 알콜중독의 경우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약물남용의 경우는 술중독에 비해 가설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약물남용의 경우에도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2) 신경학적 요소

뇌에서 신경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전자화학적 과정으로 뇌에 들어간 약물은 이 과정을 쉽게 방해할 수 있다. 약물남용자가 경험하는 뇌의 화학물질 이상(異常)의 정도는 사용한 약물의 유형과 양 및 빈도 그리고 개개인의 신경물질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심리적 요소

약물남용 행위는 한 개인이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감성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행위양식이다. 다시 말해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더 자기애적이고 보다 수동적이다. 곧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인성결함을 지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인성결함은 문제있는 가족관계, 건전한 역할모델의 결핍, 모순적인 부모의 기대, 그리고 애정결핍 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은 주위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속에서 일련의 발달단계를 통하여 인성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욕구충족을 향하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되며, 각 단계별로 충족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불충분하게 충족하였거나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 도피형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 불안 · 우울 · 권태 · 외로움 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약물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도피성 심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피심리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다.

2) 대리만족형

억압된 성(性)적 · 공격적 · 자기충동적 ·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 때, 이를 현실이 아

닌 약물의 세계에서나마 대리로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약물에 의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3) 자기애적 성격

자신을 특별한 인간으로 느끼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격이며 남의 비판에 대해 못 견디며 화를 낸다. 대인관계가 힘들고 남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약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

4) 구강기 성격

구강기는 태어나서 1~2살 될 때까지의 시기로서 입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 동안 만족의 정도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형성된다.

5) 기타

① 감정추구

모든 인간의 일반적 특징 중의 하나는 감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약물남용도 감정표현의 한 방식이다.

② 종교적 영적 요소

어떤 사람들의 경우 영적인 각성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약물을 남용하면 남용자의 인지변화를 일으켜 영적인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③ 반항과 소외

각종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또는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④ 오락적 · 사회적 촉진

마약류 및 약물은 집단내의 동지애적 감정이나 모험심을 증가시키고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⑤ 사회적 기능 촉진

사회적 도움을 촉진하기 위해 혹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즉 약물남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개방된 분위기를 창조하도록 돕는다.

(3) 사회적 요소

약물남용 행위는 성격상 상호연관된 복합적인 사회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 중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의 빈도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a. 약물사용 역할모델에 더 크게 노출될 때,
b. 약물을 사용하는 또래집단과 성인과 더 많이 교제할 때,
c. 긍정적인 보상은 더 많은 반면 부정적인 반작용이나 처벌은 더 적을 때,
d. 약물사용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의를 하기보다 긍정적인 정의를 할 때,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준거집단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또래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곧 준거집단의 영향력은 또래집단 압력에 대한 순응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약물사용 기술의 학습, 약물효과를 즐기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이러한 약물효과를 즐거운 것으로 규정하거나 사회적 모형 혹은 모방의 전형적인 예로서 제시한다.

1) 가정과 가족

약물남용은 한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가족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가족구성원간의 좋지 않은 관계, 부부 간 혹은 부모자식 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가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구성원간에 불만과 걱정, 두려움 혹은 적대감까지 갖게 되면 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밖에서 보내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약물 남용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의 모습은 영향력있는 모델이 되어 어린이들은 그들의 행동모형을 부모들과 동일한 형태안에서 구한다.

2) 동료압력과 집단가입

사람은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하는데, 동료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행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약물남용이 보편화된 환경에

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이 여러 나쁜 행동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약물 남용이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약물남용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

3)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지에 따라 약물 남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 초기 단계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물을 시도하게 된다.

_ 또래 압력 : 집단 내에서 타인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십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_ 어른들의 사용(모방) : 술, 담배를 사용하는 어른들
_ 성인이 되었음을 느끼기 위해
_ 기존의 가치관이나 권위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_ 호기심
_ 스릴을 맛보기 위해
_ 어떤 문제에서 도피하기 위해
_ 오늘날 약물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 중기 단계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 기대로 인해 계속해서 약물을 남용한다.

_ 권태로부터 벗어나고자
_ 더욱 힘찬 활력을 얻기 위해
_ "쾌감(환각)"을 얻기 위해
_ 창의력을 얻기 위해
_ 걱정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_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_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_ 사교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 최종 단계

마약류 및 약물이 필요하게 되어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

_ 육체적 · 정신적 의존
_ 금단증상의 고통

4 범죄 및 테러와 연계되는 마약

마약과 범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되어 있다. 불법 마약의 불법생산 · 제조 · 배포 · 소유와 소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별히 1961년, 1971년, 1988년 UN마약통제위원회에 서명한 나라들에서 형사범죄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4년도 모든 연방 죄수 가운데 거의 60%가 마약범죄자였는데, 이것은 1988년의 45%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다.

마약은 많은 종류의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마약관련 범죄는 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는 불법거래집단 사이의 폭력적인 충돌을 포함한 불법거래관련 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도둑질이나 매음을 통하여 탐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마약 소비자의 요구로부터도 기인한다. the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1975~1989년 사이에 수집되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기간의 경향이 마약관련 범죄와 강도는 전체 범죄에 있어 유괴에 이어 가장 빨리 증가하는 구성요소임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범죄행위(특히, 재산에 대한 범죄에 개입)가 물질 남용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형태의 범죄가 일단 탐닉이 일어나면 증가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관련된 문헌을 검토해 보면 마약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비사용자보다 의미있게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약 탐닉이 범죄행위에 깊이 관여되는 경향이 있다는 강한 개연성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미국의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는데, 이 조사는 1992년 폭력범죄의 희생자 30%가 그들을 공격한 사람이 마약이나 알콜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Liverpool Drug Dependency Unit 에 참여한 헤로인 남용자에 대한 연구는 1985~1987년 사이 약 90%가 마약상용에 필요한 자금(40파운드/일)의 일부를 날치기나 강도를 통해서 조달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는 1993년 England와 Wales에서 일어난 도둑질의 총비용 중 거의 50%가 마약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미국 Drug Use Forecasting Programme의 결과에 토대를 둔 연구-비마약관련 중대범죄로 벌을 받은 약 3,000명을 시험했다는 New York과 Philadelphia의 마약 남용자 중 약 3/4와 District of Columbia의 마약 남용자 중 2/3가 코카인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아냈다.

전문가들은 치료기간 동안 마약사용이 줄어들면 재산범죄수준이 의미있게 감소하며 또한

탐닉 중단 후에도 감소하는 경향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미국에서의 다른 연구-1990년대 초에 California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기초-는 마약 남용자가 일으킨 도둑질로 인한 손실과 희생자가 입은 해가 치료전 평균 9,790달러/년에서 치료 후 4,320달러/년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약관련 범죄와 폭력은 소비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생산국가에서도 높은데 가장 두드러진 예가 Colombia이다. Colombia 정부는 지난 20년 넘게 마약무역과 수많은 시민의 죽음 사이의 관련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마약 재배와 밀매가 성행하면서, 사망자의 수가 대규모의 마약재배가 시작되기 전인 1973~1975년 기간에 10만 명당 17명에서 1988년에 63명으로 증가했고 이는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살인율이었다. 폭력의 지역적 분포에 관한 연구는 그 나라의 폭력빈발지역 10개중 8개가 코카인과 마리화나의 주요한 생산 및 밀거래 지역임을 보여주었다. 빈곤 또는 불평등과 폭력사이의 관련성은 마약생산 및 밀거래 지역이 폭력과 갖는 관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마약과 범죄 사이의 연결 고리가 잘 정립되어 있음에도 법집행이 마약남용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범죄를 얼마나 예방할 것인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견해는 다르다. 어떤 연구자들은 법집행이 특정 종류의 범죄-시장점유를 위한 딜러사이의 폭력충돌과 마약상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남용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와 같은-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의문을 표하기까지 한다.

2000년의 국제테러는 아 · 태지역을 제외한 구주 · 중동 · 미주 등 전지역에서 각국의 적극적인 대테러 활동과 정부-반정부 세력간의 평화협상 진척 등으로 작년에 비해 15% 감소하였으나,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원리주의 · 민족분리독립 · 극좌 · 극우조직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0년에는 항공기 관련 테러와 공공시설 점거 및 인질납치 테러가 빈발하였는데, 총 9건의 항공기 관련 테러가 발생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경종을 울렸고, 미얀마 · 필리핀 등 정세가 불안한 국가에서 정부 및 공공시설 점거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는 사상 최대규모의 인질납치 피해자가 발생한 한 해였다.

이러한 국제테러와 관련하여 마약과의 관계가 미국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의 폭발사건으로 재조명되게 되었다. 이 전에 마약 불법 거래와 테러 활동이 통상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미국의 비행기에 의한 뉴욕, 워싱턴, 펜실베이니아에서의 테러 공격 후에 이제 사회는 이러한 두 가지 범죄 활동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미국의 마약수사청에서는 마약과 테러리즘 사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들 관계에 대한 조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마약 불법 거래상들이 불법 도박 · 매춘 · 무기 매매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범죄 세계의 다양한 면들은 함께 관련되어 있다. 아마도 이러한 관련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실례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의 이탈리아 마피아의 확대일 것이다. 범죄 세계의 다양한 면들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생활양식이나 목적,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종종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약 불법 거래를 위해 돈세탁을 하는 조직들이 또한 무기 불법 거래상 · 테러리스트 들을 위해 돈세탁을 한다. 마약과 테러리즘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5 약물 검사의 목적 및 의의

소변중 약물검사는 약물남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약물남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 마약류의 남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약물검사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게 한다는 점뿐 아니라 약물남용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약물남용자에 대한 법적처리를 하기 위한 경우(Forensic drug testing)와 서구에서 주로 많이 적용하는 것과 같이 직원채용 및 직원들의 마약남용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workplace drug testing)가 있고, 약물 남용자를 치료하거나 재활하는 곳에서 이들이 약물을 계속적으로 남용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남용약물 검출을 위한 생체시료 비교

약물 복용여부 판정에 쓰일 수 있는 시료로는 요(소변), 혈액, 타액, 땀과 더불어 모발이 있다. 이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장 점	단 점
소 변	· 많은 양을 취할 수 있다. · 비교적 많은 양의 약물을 함유하여 측정이 용이하다. · 수용성으로 분석이 용이하다.	· 소변 중 약물농도와 약리작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 일정시간 경과후에는 검출되지 않는다. · 희석하거나 다른 물질의 오염이 가능하다.
혈 액	· 빠른 시간내 약물이 혈액으로 이행된다. · 약물투여량과 혈액중 농도가 비례한다. · 전문가에 의해 채취되므로 바뀔우려가 없다.	· 혈액분석법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 많은 시료량 채취가 어렵다. · 혈액중 약물농도는 낮다.
타액, 땀	· 약물 검출이 가능하다. · 시료 재취가 간편하다.	· 실험에 필요한 양의 채취가 어렵다. · 정량이 불가능하다.
모 발	· 시료 채취가 용이하다. · 약물복용 후 장기간 경과한 다음에도 약물 검출이 가능하다.	· 시험방법이 복잡하다. · 약물사용 후 48시간 이내에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다.

약물검사의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이 규제되는 모든 약물이 그 대상이 되며, 약물 복용여부 판정에 사용되는 시료는 소변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약물검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험법은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 실험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본실험이며, 이들 두 실험법 모두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시료는 양성으로 의뢰기관에 통보된다.

소변 중 약물검사는 약물남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약물남용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 마약류의 남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부분이 된다. 약물검사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게 한다는 점뿐 아니라 약물남용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예비시험 및 확인시험

약물검사 실험실은 실험실 자체 내에서 대마, 코카인, 아편, 암페타민염류 및 펜사이클리딘 등에 대한 일차적인 면역분석법 및 가스크로마토그라피/잘량분석법를 이용한 확인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 면역시험에서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확인시험을 거쳐 실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소변에서 약물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은, 우선 많은 수의 시료 중 양성의 반응과 음성만을 구

별할 수 있는 예비실험과 양성으로 반응된 시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본실험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약물 검출을 위한 예비실험은 양성 및 음성인 시료를 신뢰성이 높게 구별하여야 하며, 높은 감도로 다수의 시료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처리비용이 저렴하여야 할 것이다. 면역시험법(immunoassay)이 남용약물의 예비실험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면역시험법의 항체는 특이성이 낮아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양성인 시료는 반드시 다른 화학적 원리를 갖은 분석법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확인 실험에는 감도가 높으며 특이성이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등이 사용된다.

6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나 남용되는 약물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은 러미라정(상품명)등의 성분으로 급만성 기관지염 · 감기 및 폐결핵 등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이며, 과량 복용시 구토 · 졸음 · 운동실조 · 중독성 · 정신병 · 과민성 행동 · 정신억압 증상 및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각 등의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카리소프로돌은 에스돌정(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근경련 · 근육통 및 신경장애의 경감 등에 사용하는 골격근이완제이며, 과량 복용시 졸음 · 혼수 · 흥분 및 운동실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중독 증상으로는 정신적인 혼란 등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각 등의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7 청소년들이 노출되기 쉬운 환각제

(1) 환각성 유기용매류(Inhalents)

유기용제 중에는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인 벤젠 톨루엔 및 크실렌 등과 그 외에 아세톤 · 에테르 · 초산에칠 및 메칠알콜 등 산업체에서 원료 및 용매로써 수요가 광범위하다.

특히 각종 접착성 수지의 용제로 사용되는 유기용매는 생산회사 및 사용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공업용 신나(thinner)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을 주성분으로 하며 보통 라카신나의 조성은 에스테르류 알코올류 탄화수소류를 함유하며 대표적인 신나의 배합비는 초산에스테르 20%, 초산부틸 5%, 초산아밀 4%, 부탄올 5%, 셀루로즈 1% 및 톨루엔 65%이다.

최근 청소년들간의 본드류 흡입은 사회문제가 되어 급성 및 만성 중독사고가 발생되고, 특히 흡입시 마취성 환각성에 기인되어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대통령령 제13257호(91. 1. 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에서 접착제 및 도료 등의 흡입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시판되는 본드류는 대부분이 2-클로로부타디엔과 페톨수지 등 주원료에 톨루엔, 메틸알콜, 초산에틸, 사이클로헥산 및 노르말핵산 등의 혼합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질의 흡입은 Glue Sniffing으로 1960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청소년층에 폭발적으로 유행하여 한때 100여 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나, 1972년 톨루엔을 규제한 후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는 1979년 영월에서 본드를 흡입한 고교생이 사망한 사건이 최초로 발생하였고 1981년부터 규제되었다. 국과수 자료에 의하면, 유기용매류 흡입과 관련된 감정 의뢰는 1987년 482건으로 서울 경기지역에 90%가 편중되었으나 1990년 1,105건으로 전년 대비 140%의 증가를 보였고 1991년에는 1,567건으로 양적 팽창과 함께 의뢰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본드류의 흡입은 10~20세의 청소년층이 주를 이루었다.

1) 톨루엔(Toluene)

페인트 · 염료 · 화약 · 용매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사람의 경우 흡입시 흥분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며, 고농도 폭로시 주로 중추신경계의 억제작용이 나타나고 200ppm에 노출시 약간의 피로감, 피부의 지각증상이 있으며, 명정감과 중독에 기인된 반복흡입으로 인하여 의식장애, 감정불안, 일시적 기억상실증 등의 임상증세와 함께 기질적 변화를 보이는 일이 있다.

2) 메탄올(Methyl alcohol)

무색 투명한 자극성이 있는 휘발성 · 가연성 액체로서, 포유류의 흡입치사량(LC50)이 0.4%이고 체내 흡수되어 독성이 강한 포르말린과 개미산이 된다. 이는 시신경의 장애를 일으키며 대사시간이 늦어 체내 조직중에 장기간 잔류되어 독성이 지속된다. 인체에 대한 중독치사량은 10~20㎖에서 실명하고 30~100㎖로 사망한다.

3) 초산에틸(Ethyl acetate)

특유의 과실향을 갖는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이고 쥐에 대한 흡입시 50% 치사량(LC50)은 0.16%이다. 폐 · 소화관으로 흡수되거나 피부로 흡수될 수 있으며 증기 폭로실험에 의하면 호흡기로부터 체내에 흡수되는 양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에틸아세테이트가 신속히 에탄올과 초산으로 대사되기 때문이며 점막에 닿아 자극작용과 동시에 마취작용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

(2) 연료용 가스류(Fuel gases)

연료용 가스류와 석유류의 성분인 지방족 포화탄화수소는 천연가스와 원유에서 자연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 가정에서 연료용 및 공업용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탄화수소류는 탄소수에 따라 C1~C2:\ : natural gas 25℃(bp.), C3~C4 : liquid petroleum gas 25℃, C4~C6 : petroleum ether 20~60℃, C5~C7 : petroleum benzin 40~90℃, C6~C8 : petroleum naphtha 65~120℃, C5~C10 : gasoline 36~210℃, C7~C9 : mineral spirits 150~210℃, C9~C16 : kerosin 170~300℃, C5~C16 : jet and turbo fuels 40~300℃, C17 이상 lubricating oils 300~700℃로 분류할 수 있다.

판매되는 연료용 가스의 구성성분은 86~94%의 프로판을 함유한 것과 61.3~68.7% 노르말 부탄 및 22.8~34.7% 이소부탄 · 기탄 탄화수소를 함유한 2종류가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PG)는 프로판이 · 액화천연가스(LNG)는 메탄이 주성분이다. 연료용 가스는 구입이 용이하여 청소년들에 의한 흡입 및 이와 관련된 변사, 화재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당소에도 88년 9건, 91년 의뢰 건수 중 27건이 흡입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되었다. 연료용 가스류에 의한 남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95년 3월부터 부탄가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거물 및 생체시료에서의 가스류 분석은 GC 및 GC/MS를 사용하여 감정하며, 가스류 흡입에 의한 사망시 채취된 혈액은 즉시 밀봉하되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노르말 부탄(n-Butane)

상온에서 무색 기체로 가연성이 있고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가스 누출시 낮은 곳으로 유입되어 인화 폭발하는 일이 있다. 액상으로 접촉시 화상 또는 동상의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경우 0.05% 이하의 농도에서는 악취를 감지할 수 없으며 고농도에서 기능장애(마취성)를 일으키고 혈액 내 산소분압이 낮아져 질식성의 장애를 일으키며 흡입 치사량(LC50)은 658g/m^3에서 4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이소 부탄(iso-Butane)

가연성 가스로 대기중에 44~74ppb 정도 함유되어 있고 담배연기에서도 10~60ppm정도가 발생한다. 쥐에 대한 독성은 52㎎/㎏ 중 1시간 폭로시 흡입치사량이다.

3) 노르말 프로판(n-Propane)

상온에서 무색 기체로 가연성이 있고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시 낮은 곳으로 유입되어 인화 폭발하기도 한다. 액상에 접촉시 화상 또는 동상의 위험이 있으며 사람의 경우 2% 이하에서 악취가 감지되지 않으나, 10%인 경우 눈 · 코 · 기도 등의 자극이 약간 있고, 2~3분 폭로시 가벼운 현기증을 느낀다. 고농도 폭로시 기능장애(마취성)가 있으며 산소분압이 낮아져 질식성 장애를 일으킨다.

8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을 논하기 전에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약물남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징후, 외부에 나타나는 증상 및 약물남용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나열하고, 대책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약물남용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

1) 가계에 술중독자가 많음.
2) 가계에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이 많음.
3) 가족 구조나 운영상의 문제.
4) 어린시절의 반사회적 행동 및 과잉반응.
5) 부모의 약물사용 혹은 부모의 약물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6) 낙제를 포함한 학업성적 부진.
7) 잦은 학교 결석.
8) 학교에 관련된 일에 참여할 동기 결핍.
9) 폭력을 비롯한 소외된 행동 혹은 반사회적 행동.
10)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11) 정신건강문제를 포함하는 건강문제.
12) 빈곤, 거주할 곳이 없는 것 등과 관련된 문제.
13) 범죄가 잦거나 약물사용이 빈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2) 약물을 남용한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징후

1) 결석, 숙제를 잘 안한다.

2) 집에서 생활방식의 변화

3) 신체적 쇠약감 호소

4) 주변에서 약물이 발견되며 남의 눈치를 살핀다.

5) 동공이 커져 있거나 작아져 풀려있다.

6) 친구에게 돈을 자주 빌리며 부모에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

7) 집에 있는 물건 내다 팔고 돈을 훔친다.

8) 약물사용을 위해 음침한 곳을 자주 찾으며 방문을 자주 닫아 걸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3) 외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증상

1) 신체적 증상

충혈된 눈 / 흐릿해 보이는 눈 / 눈꼽이 낀 눈/ 졸음 / 건망증 / 콧물이 흐른 코 / 팔의 주사자국 / 체중감소 / 경련 / 영양부족(실조)

2) 정신 및 행동 증상

환각 / 피해망상 / 헛소리 / 과도한 흥분 / 취한 행동 / 초조 / 불안 / 공격적 행위 / 사고력의 혼란

3) 정서적 증상

청소년이 약물을 사용한다면 정서적 행동이 변화하고 가치체계도 변화한다. 또, 집안의 규칙들에 저항하고 부모와 말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인 청소년도 행동이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분해내기 어려우나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함께 발생한다면 주의해 봐야 한다.

4) 기타 증상

약물보관함에서 약물이 사라짐 / 와인이나 술이 없어짐 / 무단 결석 / 교통사고(음주운전) / 안약의 사용 / 옷이나 소지품의 분실 / 낯선 전화

(4) 약물남용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1) 면역기능의 저하 : 사소한 염증도 크게 번지고 회복이 늦어지게 됨
2) 약물의 투여 방법에 따른 합병증 : 부탄가스, 본드, 대마초 사용시 축농증, 코뼈의 뚫어짐,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폐렴, 폐결핵 등
3) 근육주사나 혈관 주사를 이용할 때 : 전염성 질환에 잘 이환되거나, AIDS에 걸리게 됨.
4) 주사기 사용시 위생수칙을 잘 지키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 : 폐렴, 정맥염, 심장내막염, 혈전증, 피부염 등
5) 기타 :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암, 성불구, 수태능력장애, 기형아 출산
6) 정신과적 합병증 : 우울증 및 자살, 불안발작, 환각, 정신분열증(의심증,피해망상)

(5)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

청소년의 유해화학물질, 마약 등에 대한 접촉은 흡연, 음주의 문제와 더불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의 약물남용 문제는 기성세대의 생각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약물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청소년 약물남용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처음에는 흡연, 음주 등 가벼운 물질남용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 처음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들이 환각물질, 마약등 점차 강도가 강한 약물로 이동할 때 문제를 인식하여 접근을 하면 때를 놓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 질 청소년들이 이런 가벼운 물질에 처음부터 접촉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관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1회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장 · 단기적 대책을 세워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시하여 본다.

1) 가정 교육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마약 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학교 교육

학교에서 적절한 마약류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는 청소년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상주 하여 항상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3) 언론을 통한 홍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유명연예인 등을 통해 마약의 폐해 등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

4) 청소년들만을 위한 시설 설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이 갖추어진 전용시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담배, 술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다. 청소년들의 동료 간의 압력에 의해 약물남용에 노출되므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

5) 가정이나 학교당국에만 이런 문제를 맡기지 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기관, 특히 정부 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청소년의 약물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국가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절 학교폭력과 대처방안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에는 고의적인 괴롭힘, 금품갈취(소액부터 시작), 언어적 놀림(별명, 모멸감을 주는 내용), 협박, 욕설, 신체적 폭행, 집단적 폭행, 집단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비록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엄연한 폭력 행위가 된다. 대개 이러한 폭력 행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집단 따돌림은 공격적인 행동이거나 고의적인 악의적인 행동(harm doing)으로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성지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다.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따돌리고 괴롭히는 이른바 집단따돌림, 즉 왕따는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는 bullying, 일본에서는 이지메(ijime), 이태리에서는 bullismo, 태국에서는 nisai mai dee라는 용어로,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lingru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일본의 이지메를 번역한 집단따돌림, 집단괴롭힘 그리고 왕따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한편 한림의대 성심병원 청소년정신과 김영신 교수가 수도권 2개 중학교 2, 3학년생 1,756명을 대상으로 약 8개월 동안 집단따돌림과 자살 및 자해 관계를 추적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왕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까지도 자살과 자해 위험률이 정상 학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01. 10. 11:24). 즉, 만성적인 집단따돌림의 피해학생들은 정상적인 학생에 비해 자해 및 자살시도의 위험이 2.28배 높았다. 만성적인 가해 학생의 경우도 정상학생에 비해 2.1배나 그 위험성이 높았으며, 가해 학생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경우는 정상 학생에 비해 2.8배나 자해 및 자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실태

(1)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타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구타를 하거나 힘껏 밀어붙이는 행위.
-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집단 활동에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행위.
-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위.
- 언어적으로 별명 등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협박, 비난, 위협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실태

2003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전국 150개 초 · 중 · 고교 1만 4천6백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학생의 26.1%가 학교폭력과 왕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초 · 중 · 고 학생들 4명 중 1명꼴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왕따) 등 각종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 비중은 각각 조사대상자의 19.1%, 7.0%로 전년도 조사 때 나타난 5.3%, 1.5%보다 크게 늘어났다. 학교별 폭력피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4.3%로 중학 및 고등학교 19.9%, 11.3%보다 오히려 높았다. 폭력 장소는 교내 건물 뒤 28.4%, 교실 27.0%, 화장실 18.3%로 동료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학교 안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폭력경험은 23.4%로서 여학생의 13.0%보다 약 2배 가량 높았고(특히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30%수준에 이름) 폭력유형별은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얻어맞는(주

먹 · 발 사용 35.8%, 빗자루 · 몽둥이 사용 4.6%)" 신체적 폭력 유형이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경험자는 약 7.0%(2002년도 5.5%)였으며, 폭력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학생의 24.5%가 '집단 따돌림 목격했을 때 아무것도 안한다' 고 답하고, 42.5%는 '왕따를 받는 이유가 있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학생들이 집단따돌림에 무감각한 현실을 반영했다.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난 척하는 아이(17.2%), 고자질하는 아이(11.3%), 어벙해 보이는 아이(8.5%) 순으로 약 42.5%가 '집단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있다' 고 대답하였다.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에 대해 친구, 가족, 교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측의 인지가 미흡함을 말해주었다. 또한 아예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의 경우 그 이유가 확대를 우려해서(33.6%), 알려도 소용없어서(22.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대응책이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초 · 중 · 고교 학생 66.1%가 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해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 노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편 2002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이유로 징계받은 중학생이 4,187명, 고교생이 3,075명으로 학교폭력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의 조직폭력화 경향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 내 폭력서클 적발 건수는 2001년 34건, 2002년 79건, 2003년 21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들에 의한 학교폭력은 더욱 대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04. 1. 13:7). 특히 학교폭력 서클이 지역적인 연대모임을 결성하거나 조직폭력 세력과도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① 초등학교부터 조직화

각 반마다 '짱' 이 존재하는데 이들 짱은 모여서 '전교짱' 을 뽑는다. 주로 오락실이나 노래방에 몰려다니지만 인근 중 · 고교 일진들과 함께 모임을 갖기도 한다.

초등학교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학원 폭력조직 회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폭력과 '삥뜯기(돈 뺏기)' 등을 일삼아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② 지역연합도 존재

한번 폭력 서클에 가담한 회원들은 졸업 후에도 여전히 뭉쳐 다닌다. 특히 이들은 각 학교별

모임을 뛰어넘어 지역연합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중 · 고교 명의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강남연합' 등의 모임도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커뮤니티에선 신고식, 일일 락카페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되고 예절교육 지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연합 중에는 가끔 모임을 갖는 수준도 있고 학교간 서열을 매기며 조직화한다.

③ 조폭과 연결

조폭들은 지역내에서 잘 알고 지내는 고교 졸업생들을 통해 후배를 관리하는 것이 관례다. 이들은 후배들에게 조폭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놀러오게 한 뒤 술을 사주고 음란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 중 이른바 '싹수' 가 보이는 고교생만 선별, 조직원으로 받아들인다.

3 학교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1) 피해자의 특성

학교폭력 피해자의 개인적 특징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한 성격, 대인관계, 적응력 등의 부족으로 친구가 적음,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하지 못함,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 잘난 척함, 신체적으로 힘이 약함, 이기적인 성격, 특이한 행동이나 외모, 신체적 결함(장애 등)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적 특징으로는 부모의 과도한 자녀 보호, 지나친 방임과 무관심,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 가정 폭력이나 학대 등을 들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는 친한 친구가 적거나 아예 없고, 또는 비행 친구와 어울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가해자로부터 각종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으로 피해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 정신적 피해로는 스트레스, 초조감, 혼란스러움, 자존심의 손상,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우울증, 불안, 피해망상 등과 같은 정신, 행동적 장애를 보인다. 신체적 피해로는 신체적 고통과 상해, 두통이나 복통 등을 호소하며 심한 경우 성장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수면, 식욕장애와 등교 거부나 학교에 대한 극단적 두려움, 자살 생각 및 충동의 증가, 실제 자살기도, 대인관계의 단절이나 부적응, 가족관계의 갈등과 와해, 학업 능력의 저하와 적응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나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의 징후를 정리할 수 있다.

- 자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 몸에 난 상처를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 운동하다 다쳤다며 대답을 얼버무린다.

- 교과서나 노트에 죽어라, 죽고 싶다는 욕설 등 낙서가 갑자기 나타난다.
- 집에 오면 잘 나가지 않는다.
- 입맛이 없다며 밥을 잘 먹지 않는다.
- 외부전화를 피하고 전학을 가면 어떠냐고 부모에게 묻기 시작한다.
- 결석을 자주 한다.
- 안색이 안 좋아진다.
- 기가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
- 매사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표정이 나타난다.
- 옷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한다.
-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 몸이 아프다고 한다.
- 용돈 요구의 액수가 크고 자주 한다.
- 자다가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

(2) 가해자의 특성

학교폭력의 가해자의 경우도 정상적인 학생에 비해 특징적인 징후를 보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해자의 개인적 특징으로는 충동적이고 반항적임, 타인에 대한 동정심 부족, 타인을 배려하지 못함, 규칙을 잘 준수하지 못함, 좌절과 스트레스를 잘 참지 못함,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신체적으로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 학업과 학교에 관심이 적음, 타인에게 우쭐대고 싶은 심리, 자기와 관련된 피해의식, 과거 폭력 및 비행 연루 경험, 약물(담배, 알코올 등) 사용, 대인 갈등 해결 능력 부족, 정서장애와 심리적 문제, 주의집중 장애 등을 들 수 있다.

가해자의 가족적 특징은 부모의 애정이나 관심 부족,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 엄격한 훈육이나 신체적 처벌, 부모의 감독과 통제 부족, 가정에서 폭력 경험,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인 가치관, 부모의 범죄성향 등을 들 수 있다.

가해자와 또래집단 교제의 특징은 친구들이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비행 또는 폭력 친구와의 교제,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일 경우 학교폭력의 가해자 여부를 의심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가정과 학교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폭력예방자료, 2002).

- 언어가 거칠어진다.
- 갑자기 우쭐대고 부모 이야기에 대꾸가 심하다.
- 부모가 사주지 않은 물건을 자주 볼 수 있다.

- 전화가 오면 작은 목소리로 혼자서 속삭인다.
-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만화책이나 잡지책을 자주 본다.
- 용돈 요구가 적어진다.
- 모양(멋)을 내기 시작한다.
- 싸움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을 수도 있다.
- 머리 회전과 눈치가 빠르다.
- 약자에게 자주 복종을 강요하고 쉬는 시간이나 퇴교할 때 다른 학생의 뒤를 따라간다.
- 질서를 부정하고 반감을 자주 나타낸다.
-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 자기보다 튀는 학생을 폭력으로 응징하려는 태도가 보인다.
- 여러 학생으로부터 험담이 많이 나온다.
- 교사의 징계나 체벌에 반항하고, 독자적인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가정형편에 비해 고급 의상을 착용하거나 돈의 씀씀이가 헤프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붕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 주머니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친구들에게 물건이나 돈을 자주 빌린다.
- 성적의 기복이 심하거나 하위에 머문다.
- 수업참여 태도는 불성실하나 주위에 친구들이 많다.

4 학교폭력의 사례

다음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례를 언론보도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사례 1】 "돈가져 오라" 학원폭력배 협박 못 이긴 고교생, 장기 팔려다 브로커에 납치

학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고3 진학을 앞두고 자퇴한 10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을 더 가져오라"는 학교 주변 폭력배들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장기를 팔려다 장기매매 브로커에게 납치돼 몸값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 모 고교 2학년생이던 이모군(18)은 지난해 7월 학교를 자퇴했다. 돈을 요구하는 학교주변 폭력배들의 찰거머리 같은 협박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자퇴 후에도 폭력배들의 협박은 계속됐고 이군은 지난해 11월 서울역 화장실에서 장기매매 스티커를 보고 휴대폰 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이군은 장기매매 브로커 오모씨(40)가 "간염검사 비용 등 1백80만원을 송금하면 간이식 후 4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두 차례에 걸쳐 1백80만원을 부쳐주었으나 오씨는 돈만 챙긴 뒤 잠적했다. 오씨 일당 3명은 이어 지난 7일밤 이군을 집 근처

로 불러낸 뒤 승용차편으로 납치했다. 이들은 이군의 아버지를 협박해 3백만원을 뜯어내고 현금보관증을 쓰게 한 뒤 10시간 만에 이군을 풀어줬다. 오씨 일당은 9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붙잡혔다.

이군은 경찰에서 서울 ㄱ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최근까지 학교 폭력배들로부터 65차례에 걸쳐 모두 8백90만원을 뜯겼다고 진술했다. 특히 학원폭력배와 동급생들은 유복한 집안 출신의 이군을 동료 폭력배들에게 '인수인계' 하면서 지금까지 5년간 돈을 뜯어왔다는 것이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이군이 학교를 자퇴하고 "더이상 줄 돈이 없다"며 버티자 폭력배들은 "도둑질을 하든, 장기를 내다팔든 5백만원에서 8백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이군은 진술했다.

이군은 결국 자신의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장기매매 알선조직에 연락을 취했다 또다른 봉변을 당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오씨 등 장기매매 브로커 일당 3명에 대해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뜯어온 학원폭력배와 동급생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2003. 2. 10:19)

【사례 2】 중3 … 친구가 맞는것 보고 복수 … 수업중 … 학교짱 … 찔러 살해

"친구가 맞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한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꼭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모 중학교 4층 3학년 4반 교실.

전날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의 현장검증에 나선 피의자 방모(14) 군이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사건은 전날인 15일 점심시간 때 시작됐다.

이 학교 '짱' 으로 통하는 김모(14) 군을 비롯, 3,4명의 학생이 오후 1시 15분쯤 운동장 한쪽에서 방군의 친구 최모(14) 군을 괴롭힌 게 발단이었다. 최군은 "평소 내가 말 안 들어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며 운동장에 불러내 10여분 동안 발로 차고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4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최군과 형제처럼 지내온 방군은 친구가 맞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방군은 점심시간 뒤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하고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왔다. 방군은 "너무도 괴로워서 양호실로 갔다."고 말했다.

양호교사는 "방군이 간단한 드링크제를 마시고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다 일어나 오후 2시

10분쯤 교실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군은 교실 대신 학교 근처 집으로 향했다. 30분 뒤인 오후 2시 40분 방군은 종이가방에 흉기를 넣은 채 3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서는 6교시 글쓰기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방군은 아무 말 없이 교실 맨 뒷자리에 있던 김군에게 다가가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교실 바닥이 아수라장이 됐다. 방군은 겁에 질린 교사와 울음을 터뜨리는 동급생들을 뒤로 한 채 친구 최군이 있는 3학년 8반 교실로 향했다. 교실 문을 열고 최군의 얼굴을 쳐다보던 방군은 흉기를 조용히 교실 바닥에 내려놓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가 자수했다. 이 학교 한 교사는 "방군은 교실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였다."며 "학교 폭력이 이런 비극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 4. 17:31)

【사례 3】 고교생 수업 중 급우 살해… 폭행-따돌림에 앙갚음

13일 오전 10시 10분경 부산 남구 용호동 D정보고 1학년 2반 화공과 교실에서 김모 군(16)이 식칼로 급우 박모 군(16)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급우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결석한 김군은 이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가 2교시 수업시간 중 식칼을 신문지에 싸서 숨긴 채 뒷문으로 들어와 뒷문 바로 옆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박군의 왼쪽 등을 1차례 찔렀다.

사건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 29명이 출석한 가운데 사회과목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교사 신모씨(41)가 공책 검사를 하고 있었으나 김군이 갑자기 들이닥쳐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교사와 급우들이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칼에 찔린 박군은 심장을 관통당해 쓰러졌으며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졌다. 김군은 사건 직후 집으로 도망쳐 옷가지를 챙겨 나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군은 경찰에서 "입학 직후인 3월부터 박군이 너무 괴롭혀왔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게 억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김군은 영화 '친구'를 컴퓨터를 통해 40여 차례나 보고 보복심리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군이 이 영화의 대사를 전부 다 외울 정도로 심취해 있었다고 밝혔다. 김군은 박군보다 덩치가 더 컸으나 반에서 속칭 '짱'으로 통하는 박군에게 상당한 괴롭힘을 받아 왔다고 급우들이 전했다

(동아일보, 2001. 10. 14:19)

5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1) 학교폭력 관련법의 적극적인 시행

학교폭력 등에 대책법으로 미국에서는 1994년도에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 사회법(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을, 그리고 영국에서는 1998년도에 "범죄 및 무질서법(The crime and disorder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 12월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에 법적 제재수단을 구비하였다. 이 법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이를 학교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각급학교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Mento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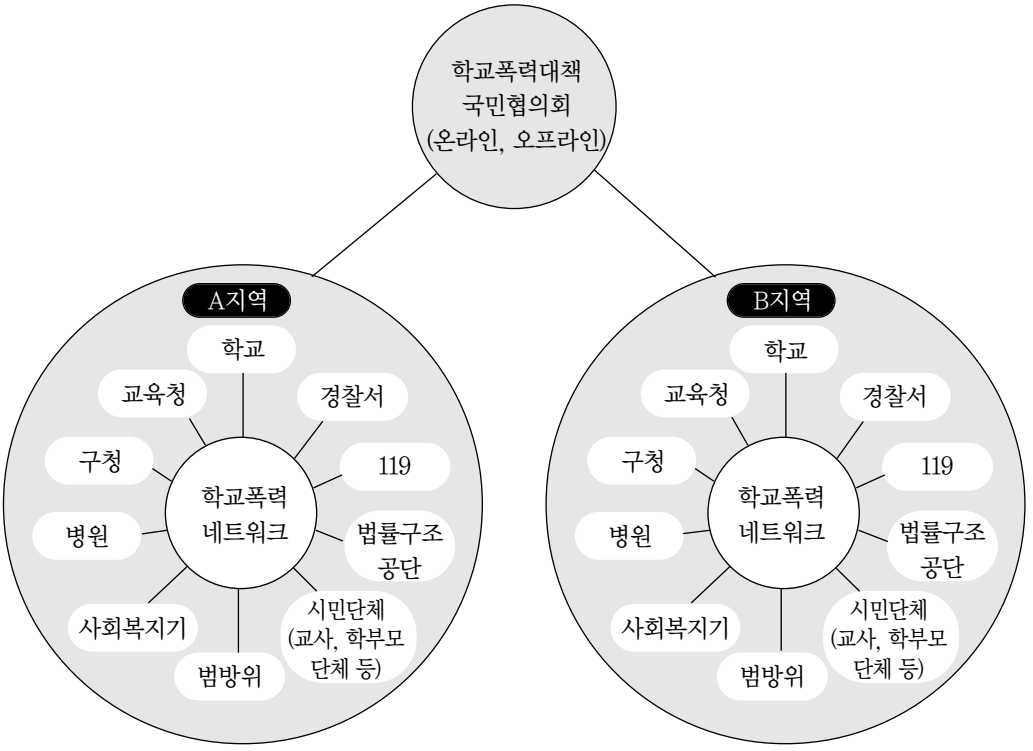
청소년과 자원 봉사자인 성인이 짝을 이루어 교육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인 성인의 역할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3) 지역네트워크의 강화-범죄예방위원의 활동

학교폭력은 학교와 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대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을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와 각 검찰청의 범죄예방위원은 그 분포가 다양하고, 인원도 방대하므로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약국이나 PC방을 가정 및 학교폭력의 1차 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범죄예방위원의 주택이나 사업장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차 피난처에서는 1318서포터스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학교나 시교육청의 감독소홀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폭력분과위원회보고서. 78, 재구성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왕따를 예방하고,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01년 8월에 서울고법민사4부는 학교폭력의 피해배상금 중 60%는 가해학생과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5) 학교폭력 관련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지원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이에는 또래 집단의 중재, 갈등해결, 건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관용과 기술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등이 있다. 또한 분노조절, 갈등해결, 시민의식, 반폭력, 반약물, 성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학생들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로 끌어들여 이

들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이들이 사회적 일탈세력이 되어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After school Recreation Program :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인의 관리와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흥미위주 프로그램은 청소년 폭력과 비행의 기회를 줄여준다. 또한 소외감이나 비행을 일으키는 또래 집단과의 교류 등 청소년 비행의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감소시키며, 여가활동 기술, 청소년과 성인 간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보호요인을 경험하도록 한다. 방과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 기술, 음악 및 신체율동 습득과 소년(소녀)단 활동 등 학생의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Ontario주 Ottawa에서 이루어졌는데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개입으로 평가되었다.

(7) 수호천사 프로그램(Guardian Angels)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웃 주민 지역을 도보로 감시하며 지역내의 청소년폭력과 비행을 예방하고, 관련 사건을 목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 수호천사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비행을 비롯한 일반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와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8) 부모의 자녀교육 강화

부모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경우, 홀부모인 경우 등 전통적인 가정의 부모로서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공부에 대한 압박 또는 자녀와의 대화의 단절은 학교폭력을 부추기거나 방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종교시설이나 직장, 자치단체 등에서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제 3 장

보호관찰의 이론과 실제



제 1 절 보호관찰 제도론

Ⅰ. 보호관찰제도

1 연 혁

- 19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법률 제4509호)
- 1989. 7. 1. 보호관찰제도 도입실시
- 1994. 4. 1. 성폭력범 보호관찰 실시
- 1995. 5. 1.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실시 (법무부훈령 제365호)
- 1995. 12. 29. 형법개정(보호관찰관련 조항 신설)
- 1996. 12.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개정
- 1996. 12. 12. 사회보호법개정, 보호관찰실시
- 1997. 1. 1. 보호관찰제도 전면 확대실시
- 1998. 7. 1.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실시
- 2000. 2.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0. 7. 1 보호관찰 실시

2 보호관찰제도 의의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자에 대하여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원호와 범죄예방위원의 원조를 받게 하여 교화 · 개선하고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제도.

1) 도입 배경

- ■ 범죄자에 대한 형벌수단의 다양화, 형사정책의 선진화 전통적인 구금형에 대한 반성
- ■ 사회 내에서의 적극적인 감독과 전문적 처우로 범죄성 개선, 범죄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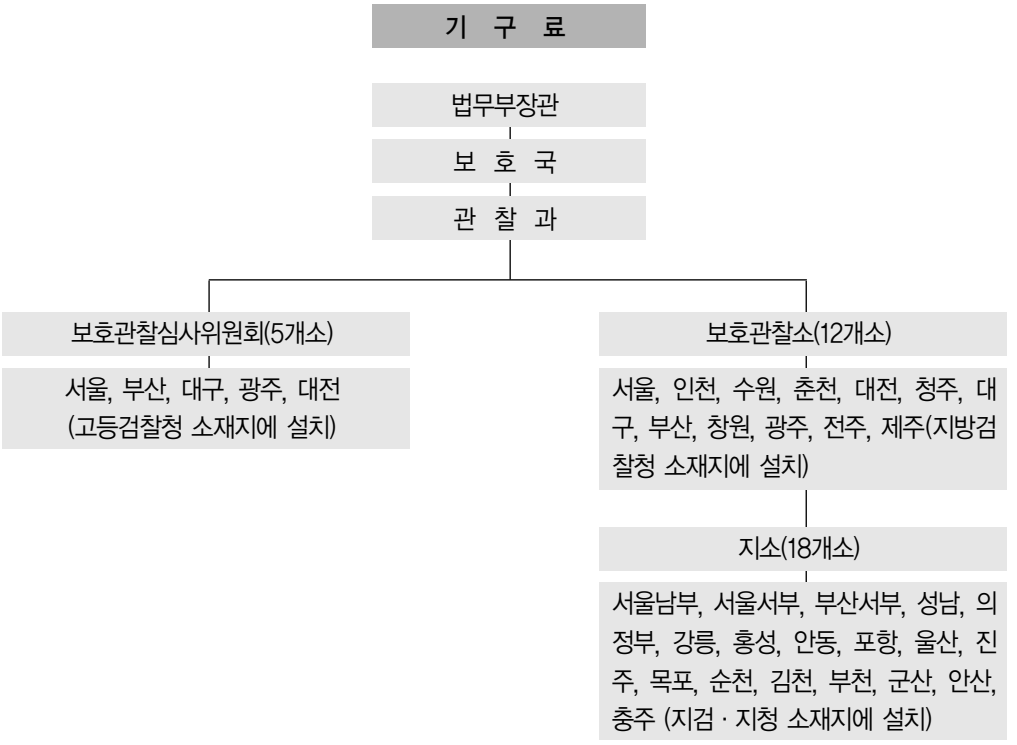
2)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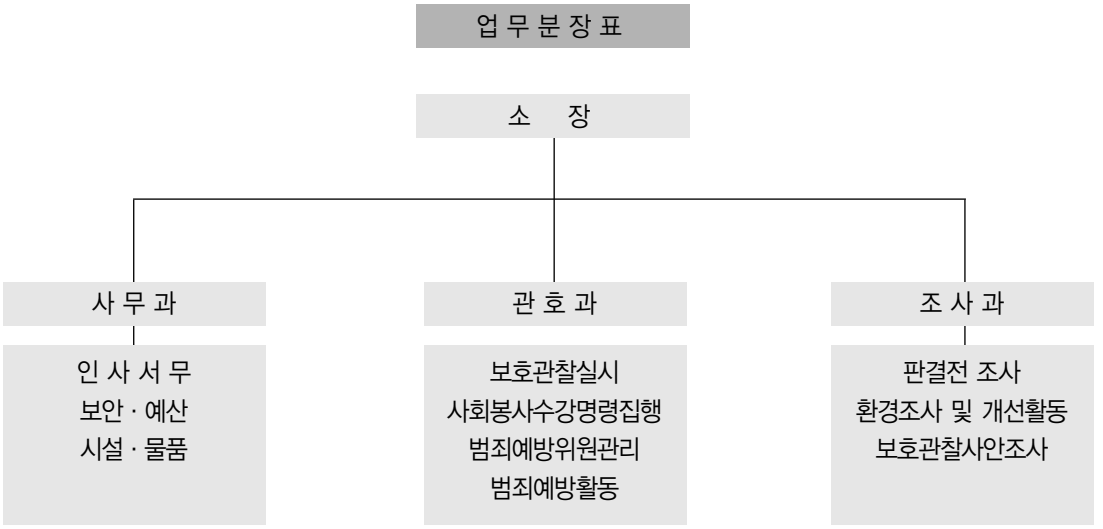
- 시설 내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 방지 및 수용경비 절감
- 사회 내에서 체계적, 전문적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응 촉진
-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감독을 실시, 재범방지 및 사회보호
- 민간자원봉사자 등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화합된 사회분위기 조성

3 보호관찰제도 비판론

(1) 관대한 처분이다.
(2)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
(3) 동일환경에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4) 지도 · 감독 · 원호가 유명무실해진다.
(5) 재정부족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
(6) 대상자 선정에 자의, 독선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
(7) 준수사항이 가혹하여 실행불능의 엄한 조건이 있을 수 있다.
(8) 피해자의 복수욕을 해소시키지 못한다.

4 보호관찰기관(2003. 4월 현재)





5 관장 사무

1)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5) 가석방 중인 자의 부정기형 종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 결정.

2) 보호관찰소

(1) 보호관찰의 실시 및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의 실시.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

(4)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5) 범죄예방활동.

(6)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6 대상자

(1) 보호관찰대상자

①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② 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형법 제73조의 2 또는 보호관찰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호관찰 조건으로 가석방 또는 가퇴원 된 자.

④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 받은 자.

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자.

(2)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

① 형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를 받은 자.

② 소년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

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자.

(3)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7 판결전 조사 제도

현행보호관찰법에 의하면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 2(선고유예부 보호관찰) 및 62조의 2(집행유예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전 조사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소년범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별처우를 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이 다양화되고 어떤 유형의 처분이 소년범에게 가장 적당한가를 선택하는 분류작업의 중요성이 생긴다.

이점에서 판결전 조사제도 취지와 같이 환경조사제도와 그 환경개선활동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8 환경조사와 환경개선활동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활동의 결과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선정,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

고 특히 소년범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가퇴원심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행 보호관찰법은 수용기관의 장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 소년수용자의 가석방이나 가퇴원 신청을 할 때에는 환경조사와 그 환경개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소년수용자에 대한 가석방의 적부를 심사하고 보호관찰 필요성 여부를 심사결정할 경우 환경조사 또는 환경개선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환경의 영향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소년범이 시설내에서 교화 · 개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출소자 본인이 사회에 돌아온 경우에 범죄나 비행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 다시 범죄를 범하기 쉽다는 데 그 실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 **환경조사란**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가석방 · 가퇴원 신청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죄원인 등의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 그를 제거해 주어야 할 범죄유발 원인의 조사제도이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의하면, 수용기관의 장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보호처분 받은 자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의뢰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자 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환경조사 사항은

① 인수인, 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②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③ 피해변상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④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⑤ 석방 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전망.
⑥ 범죄 및 비행의 동기.
⑦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이 경우 범죄예방위원은 환경조사 보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 **환경개선활동이란** – 범죄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활동으로서 교정시설내에 수용중인 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석방 후 선량한 시민으로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석방전에 그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환경개선활동방법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 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관찰 기간

구 분	대 상 자	기 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 보호관찰 결정받은 소년 · 장기보호관찰 결정받은 소년 6개월	6개월 2년(다만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가능)
소년법적용 대상자	· 가정법원(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단기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	6개월
형법적용대상자	·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	1년
	·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유예기간 또는 유예기간 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 가석방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된 자	무기형에는 10년 유기형에는 잔형기(단 10년 초과할 수 없다)

구 분	대 상 자	기 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자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가퇴원 결정을 받은 소년	6개월~2년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결정을 받은 소년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 다만, 15년의 형기 또는 부정기형의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는 그 기간
사회보호법 적용 대상자	·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가출소결정을 받은 자	3년
	· 병과된 형집행 중 가석방 결정을 받은 자	3년
	· 치료위탁 결정을 받은 자	3년(다만,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
성폭력법적용 대상자 (소년 · 성인병)	·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1년 유예기간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 가석방 결정을 받은 자	잔형 기간
가정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적용 대상자	·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자	6개월 기간변경시는 1년
	· 검사로부터 선도위탁된 1급기소유예된 자	1년
	· 2급 기소유예된 자	6개월

10 준수 사항

1)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 일반준수사항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④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특별준수사항

①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②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③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④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2) 사회봉사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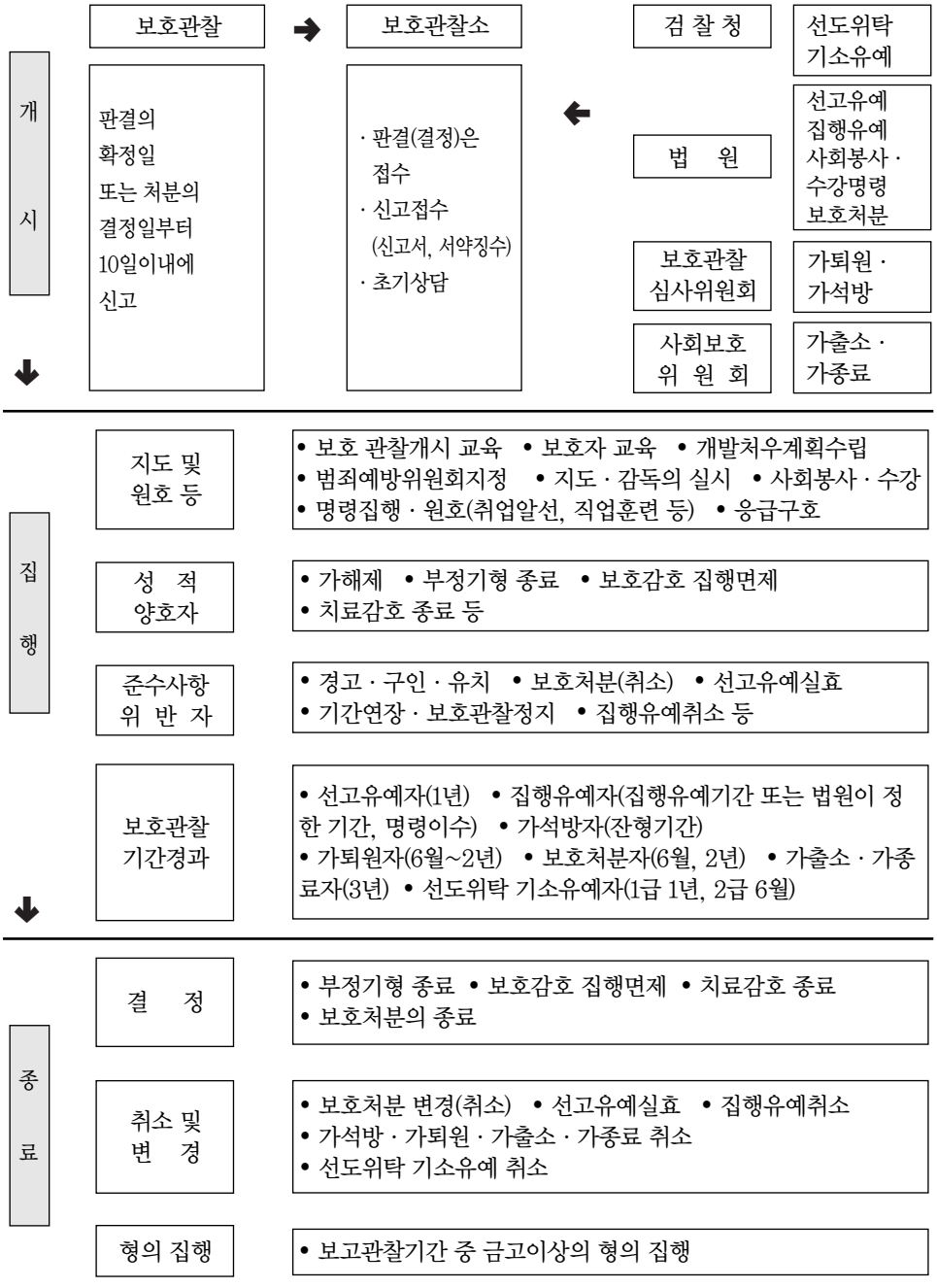
①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② 주거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③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그 특별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11 보호관찰 실시

(1) 보호관찰 실시절차



(2) 보호관찰 실시 방법

1) 지도 · 감독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을 한다.

◎ 지도 · 감독의 방법

①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②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③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2) 원호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원호를 한다.

◎ 원호방법

① 숙소 및 취업알선.

②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③ 환경 개선.

④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원조의 제공.

12 보호관찰 담당자

보호관찰 담당자라 할 때 보호관찰관과 그의 업무를 지원, 보조하는 범죄예방위원을 들 수 있다.

(1) 담당자의 기본상(표준상)

① 상호 인간 대 인간애에서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범죄예방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③ 선도에 열성이 있고, 공 · 사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담당자는 신뢰와 사회적 덕망이 있어야 한다.
⑤ 사회봉사에 열성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⑥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
⑦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⑧ 반드시 선량한 사회인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⑨ 늘 관용이 있어야 한다.
⑩ 인간 대 인간관계에서 접촉 상담하여야 한다.

⑵ 지도 · 감독 요령(기법)

1) 대상자와 상담접촉

① 대상자의 행동을 관용하는 인내심, 이해력이 필요하고
② 대상자의 지위를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고
③ 대상자의 언행을 유의관찰 해야 하고
④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드러운 대화를 해야 하고
⑤ 자립의지와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해야 하고
⑥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2) 상담접촉시 담당자 유의사항

① 대상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부터 탈피할 것.
② 관계기록을 미리 읽어 상담준비할 것.
③ 권위를 과시하여 심문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
④ 귀담아 듣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
⑤ 과거 비행이나 결점을 언급하지 말 것.
⑥ 대상자 장점을 들고 용기를 줄 것.
⑦ 한번 실수는 갱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
⑧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피할 것.
⑨ 위압적으로 수첩이나 서류에 기록하는 태도 지양할 것.
⑩ 대상자 가정방문시는 인근 주민에 알리지 말 것.
⑪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위협을 하지 말 것.

⑫ 준수사항을 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복귀의 지름길임을 알릴 것.

⑬ 접촉에서 접촉으로 그칠 것.

3) 접촉상담의 중요성

① 개별적 접촉상담은 보호관찰의 불가결의 방법이고

② 지도 · 감독의 핵심이며

③ 보호관찰의 본질적 수단이고 본질적 요소이다.

⑶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와 지위

◎ 직무

① 현행법상의 직무(지원).

② 현행법시행규칙상 직무.

③ 범죄예방위원 기본규정상 직무.

◎ 범죄예방위원의 중요성, 필요성의 지위

① 보호관찰 성패의 지위.

② 보호관찰 기능부족을 보충하는 지위.

③ 범죄예방활동 가능성의 지위.

⑷ 보호관찰관과 범죄예방위원 관계

13 보호관찰 성적양호 조치, 불량의 제재 조치

⑴ 양호 조치

· 보호관찰의 가해제.

· 가석방자 부정기형의 종료.

· 가출소자 집행면제, 가종료자 치료감호 종료.

⑵ 준수사항 위반자 강제제재 조치

· 경고.

· 구인
· 유치
· 선고유예 실효
· 집행유예 취소
· 가석방 취소
· 가퇴원 취소
· 보호처분 변경
· 가출소 취소, 가종료 취소, 치료위탁 취소를 재집행

II.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수강명령제도

1 사회봉사명령제도 의의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1) 기대 효과

· 강제집행에 따른 적극적인 범죄자 처벌.
·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
· 범죄자 구금에 필요한 예산 절감.
· 근로정신 함양, 자존심 회복.
·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2) 집행 분야

· 자연보호활동(공원 · 하천 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등).
·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양로원 · 고아원 ·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 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
· 공공시설 봉사(고속도로 · 국도변 쓰레기 · 오물 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 등).
· 병원지원(응급실 인력보조, 환자간병 보조 등).
· 공익사업 보조(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등).
· 문화재 보호 봉사활동(문화재 보수 · 제설 · 배수로정비 등).
·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업무지원.

2 수강명령제도 의의

유죄가 인정된 약물 의존 · 중독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1) 기대 효과

- 준법의식 고취.
-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 사회적응력 배양.

2) 집행 내용

- 교육 내용(프로그램별)
  약물 오 · 남용 방지교육, 알콜남용 방지교육, 정신 · 심리치료 교육,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 교육 방법
  시청각교육, 강의, 견학, 참여식 토론, 심리검사 등
- 기타 교육
  -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 훈련 등 인성교육을 위한 집단지도
  -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 활동
  - 예절 및 준법교육
  - 명사 · 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토론
  - 직업교육
  -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

Ⅲ.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제도 의의

광의 –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된 자, 보호처분 받은 자, 형기만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도 · 감독 · 원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자립갱생케

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사회복귀시키는 제도

협의 – 교도소, 소년원에서 출소, 출원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 추수지도방법으로 자립갱생케 하는 제도

2 목적

(1) 재범 방지
(2) 자립 갱생
(3)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4) 복지 증진
(5) 사회 보전

3 현행갱생보호제도

(1)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받은 자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이다.

(2) 갱생보호 방법

1) 직접 보호

① 숙식 제공
② 여비 지급
③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의 지급 또는 대여
④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⑤ 자립 지원

2) 선행 지도

위 제 ①호 내지 제 ⑤호의 보호에 부수하는 선행 지도

⑶ 갱생보호 신청절차 및 조치

1) 신청

갱생보호 대상자 및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장, 갱생보호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에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갱생보호 대상자 및 관계기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비로소 갱생보호가 개시되는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이다.

2) 조치

그 신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갱생보호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함에는 신청서 및 대상자의 면담 등에 의하여 대상자의 전과, 죄질, 연령, 학력, 가정사정, 교육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갱생보호담당기구

⑴ 한국갱생보호공단

⑵ 갱생보호사업 허가받은 자

① 한국소년갱생보호원
② 행정갱생보호회
③ 한성갱생보호회
④ 한국기독교 교화복지원
⑤ 갱생보호후원회
⑥ 세계교화갱생보호회
⑦ 담안선교회
⑧ 빠스카 교화복지회

5 범죄예방위원의 갱생보호직무

1) 법제18조 ①항에 의하면

범죄예방활동을 행하고, 보호관찰 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2) 규칙제23조 ④항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그리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 보호관찰소 관장사무의 하나인 "갱생보호의 실시(법 제15조 제2호)"를 하고 있으므로 범죄예방위원은 갱생보호실시를 지원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다.

Ⅳ. 최근 외국의 보호관찰기법

대표적으로 선진미국의 최근 보호관찰실시기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① 밀착감시(집중)보호관찰
② 가택구금
③ 전자감시
④ 충격보호관찰
⑤ 병영훈련
⑥ 음주운전자 운전감시용 잠금장치 보호관찰
⑦ 음주운전자 자동차시동 잠금장치
⑧ 교통사고 보호관찰

제 2 절 보호관찰현황과 보호관찰법령

1 연 혁

보호관찰의 기원은 1942년 재단법인 사법보호회에서 찾을 수 있다. 1961년에는 출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갱생보호회가 발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63년에 보호관찰 근거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있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983년에 부산지검에서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를 지니지 못하였고 인적 · 물적으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88년 소년법 및 보호관찰법 제정을 계기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소년범죄자의 증가, 죄질의 열악화 및 학교교육의 불충분성이 중요한 배경이었다. 1989년에 보호관찰소 12개소, 지소 6개소로 출범하였다. 1995년에 형법총칙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도입되고, 1996년에 이르러 "보호관찰법"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보호관찰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동법률은 갱생보호법상 갱생보호제도도 흡수하는 등 사실상 사회내 처우에 관한 기본법전의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2004년말 기준 보호관찰소 12개소, 지소 21개소로 확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앞서 소개한 중간적 제재는 실시하지 않고 논의단계에 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단계의 사회내 처우를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2 보호관찰 현황

표-1)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수강명령 집행현황

(단위 : 건)

구분 / 연도	총 계		총 계		총 계		총 계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실시사건	접수사건
2000년	146,856	93,297	94,705	47,870	42,761	37,295	9,390	8,132
2001년	145,021	91,592	90,424	45,032	43,361	37,536	11,236	9,024
2002년	146,090	93,667	89,163	43,168	45,026	40,160	11,901	10,339
2003년	147,734	92,837	89,428	41,108	46,074	40,981	12,232	10,748

표-2) 각 법률별 보호관찰 집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 계			146,856	145,021	146,090	147, 734
보호관찰	계		94,705	90,424	89,163	89,428
	형 법	소 계	31,522	34,721	40,462	42,428
	소 년 법	소 계	54,737	46,725	40,535	37,533
	사회보호법	소 계	1,692	1,594	1,535	2,459
	성폭력범	소 계	731	763	793	720
	가정폭력범	소 계	1,699	2,458	2,363	2,464
	선도위탁	소 계	4,324	4,163	3,475	3,824

표-3) 각 법률별 사회봉사 집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사회봉사명령	계		42,761	43,361	45,026	46,074
	형 법	소 계	31,679	33,918	36,123	37,400
	소 년 법	소 계	9,953	8,041	7,667	7,379
	성폭력범	소 계	658	543	423	388
	가정폭력범	소 계	471	859	813	907

표-4) 각 법률별 수강명령 집행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사회봉사명령	계		9,390	11,236	11,901	12,232
	형 법	소 계	6,648	8,881	9,575	9,618
	소 년 법	소 계	2,066	1,706	1,361	1,682
	성폭력범	소 계	39	48	85	89
	가정폭력범	소 계	637	601	880	843

3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법률적 근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포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는 형법(1995제정, 1997년 7. 1부 실시), 소년법(1988), 사회보호법, 성폭력처벌법(1994) 및 가정폭력처벌법(1998), 성매매처벌법(2004),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등을 들 수 있고, 대체로 개별법률에서 보호관찰의 요건과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보호관찰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모두 보호관찰의 한 방식이라는 견해와 독자적인 제도라는 견해가 있으나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별도로 보고 있다. 보호관찰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도 한다.

연혁적으로 보아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일반 보호관찰보다도 강도 높은 제재로서 파악되었다. 보호관찰보다도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제약하는 중간적 사회내 제재로 이해하여야 한다. 개별법에서도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과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규정하는 입법예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1년) (형법 제59조의 2, 제3조)

② 형사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유예기간 또는 법원이 유예기간내에서 정한 기간) (형법 제62조의 2, 제3조)

③ 가석방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된 자(잔형기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간) (형법 제73조의 2, 제3조, 제24조)

④ 소년부 판사가 2호 또는 3호 처분을 한 자(전자는 6월, 후자는 2년 단 1년 이내의 기간 연

장가능)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3조)

⑤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소년(6월 또는 2년, 이 경우 1차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제3조 제1항 제5호)

⑥ 사회보호법상 사회보호 위원회로부터 가출소 결정된 자(3년), 병과된 형집행 중 가석방된 자(3년), 치료위탁을 받은 자(3년, 1차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 (제3조 제1항 제5호)

⑦ 성폭력법 위반사범(보호관찰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 1년, 집행유예받은 자 유예기간 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제3조 제5호)

⑧ 가정폭력법(6월을 원칙으로 하고 1년으로 연장할 수 있음) (제3조 제5호)

⑨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된 자(1급 1년, 2급 6월) (제15조 제3호)

⑩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가퇴원 된 소년(6월 이상 2년 이하) (제3조)

⑪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결정을 받은 소년(가석방전 형집행을 받은 기간,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하면 그때 형기가 경과한 것으로 하여 집행종료로 하고 보호관찰은 종료함)

⑫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6월) 또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제3조 제5호)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내용

(1) 보호관찰의 개시와 종료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때부터 개시된다(제29조). 가석방 또는 가퇴원은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우를 말하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22조). 선고유예판결,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어 통지된 때, 가석방 결정이 통지되어 석방된 때, 소년법 제32조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을 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판결이나 결정이 이루어져 통지되면 통지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소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접수하면 즉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대상자 신고를 접수하고 초기상담을 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에 회부되는 절차는 이 밖에도 검사의 보호관찰관 선도위탁보건부 기소유예결정(제15조),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소 가퇴원결정 또는 치료감호소 가종료결정에 의하여 개시된다(사회보호법 제10조).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자에 대하여 형집행 중 가석방된 후 가석

방이 취소되거나 실효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하면 사회보호 위원회가 가출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있다(사회보호법 제10조 제2항).

보호관찰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일정한 기간을 시행하면 보호관찰 기간경과로 종료한다(제51조 제1호). 선고유예자는 1년,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기간 또는 따로 법원이 정한 기간, 가석방자는 잔여기간, 소년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은 집행한 형기와 동일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가퇴원자는 6월 내지 2년, 가출소(보호감호), 가종료(치료감호) 중인 자는 3년으로 한다.

보호관찰은 다른 처분에 부수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피부수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전과발견)되면 당연히 그에 부수된 보호관찰은 종료한다(제47조). 선고유예, 가석방, 가퇴원의 경우 부과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배가 있을 경우 선고유예, 가석방, 가퇴원의 취소가 있게 된다(형법 제61조 제2항, 제48조). 가출소, 가종료의 취소도 있다(사회보호법 제30조).

소년법 제60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가 그 형의 단기가 경과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형집행기간과 같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도 결정으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다(제50조). 이 밖에 가정보호 처분이 종료되거나(가정폭력처벌법 제47조), 보호감호 집행이 면제되거나(사회보호법 제27조) 치료감호위탁이 종료되어도 보호관찰은 종료된다(사회보호법 제10조).

보호처분이 변경한 때(제49조, 제51조 제4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소도 종료사유이다.

(2) 조직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기간 중 대상자를 지도 · 감독하여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하며, 이로써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한다(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설수용방식의 처벌은 응보와 위하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교정과 교화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고, 사회인적 자원이 범죄자와 접촉함으로써 범죄자와 일반인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내면화하게 되며 범죄자는 사회와 재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행정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소장 및 보호관찰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등이 담당한다.

법무부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를 두어 ①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② 가퇴원과 그 취소에 관한 ③ 보호관찰의 가해제와 그 취소에 과한 사항 ④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⑤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⑥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 ⑦. ①~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사 · 결정하도록 한다(제6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는 법원의 판결 · 처분이 있은 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계속 실시여부 및 조기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2급상당 및 3급상당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심사위원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변호사,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제7조, 시행령 제3조, 제4조).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 및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국 · 공립기관 또는 기타 단체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시행령 동제2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보호관찰소를 둔다(제14조 제1항). 지소도 둘 수 있다(동 제2항).

보호관찰소는 ① 보호관찰의 실시,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의 집행 ② 갱생보호의 실시 ③ 검사가 보호관찰부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시 선도의 실시 ④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⑤ 범죄예방활동 ⑥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규정된 사항을 관장한다.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선도를 위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 사회봉사 명령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 등 보호관찰관의 업무보조,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원호하고, 의료시혜, 약품지원 기타 지역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을 한다(제18조 제18조 제1항, 법무부훈령 범죄예방 자원봉사기본규정 제3조).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을 지원 · 지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지도위원회 및 범죄예방 지역협의

회가 구성되어 있다(동 제8조 및 제13조). 위탁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제출이 중요한 사무이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22조).

(3)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

(조사 및 심사)

■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시 판결전 조사** :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소재지 또는 피고인소재지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소 소장은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한다. 법원은 조사를 위탁하면서 인적 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송부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 판결을 위한 자료제공이다(제19조 제1항, 제2항). 조사는 면접, 심리검사, 자료분석, 각 단체에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전에 법관이 아닌 제3자가 범죄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권의 침해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사실 관계를 넘어서서 그의 성행과 환경 조사를 하여 양형참작사유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법권침해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법권행사에 있어서 형벌개별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판결전 조사제도(Interlocut)가 널리 확대되었다.

법원은 선고유예부 보호관찰, 집행유예부 보호관찰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0조).

■ **소년범에 대한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 소년교도소장 및 소년원장은 소년범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수용된 자의 신상조사서를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소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비행동기, 직업, 상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을 조사하여 의뢰기간의 장에게 송부한다(제26조). 이는 소년에 대한 처우를 위한 자료제공이다.

환경조사시 ① 인수인 · 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②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③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④ 수용전 직업 · 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⑤ 석방 후 취업계획 ⑥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⑦ 기타 참고사항을 조사한다.

이 조사과정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환경조사결과 수용된 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7조). 환경개선 활동시 보호관찰소 소장은 수용자와의 면접,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 · 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3조).

각종 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소환하거나 국 · 공립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7조).

■ **보호관찰사안조사** :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장은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중인 성인에 대하여 행형법상 가석방 신청을 할 때 가석방 심사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당해 성인수형자를 면담하고 제26조에 규정된 사항 및 재범위험성,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의 소재지 또는 당해 성인수형자의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안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28조).

법무부에 설치된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 소장의 보호관찰사안조사서를 참고하여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기도 한다.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소년법 제65조에 의하여 가석방 심사대상 소년수용자 또는 수형자의 가석방 및 가퇴원을 심사하고 보호관찰부과를 결정한다(제22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감독)

■ **준수사항부과** :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한다(제32조 제1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행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그 밖에도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특별준수사항을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적절한 훈계를 고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 대상자는 주거이전,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시 이전예정지나 여행지, 이전사유나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을 신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다른 보호관찰소구역으로 이전하면 다른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 제2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대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제62조 제2항).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따른 지시에 따를 것.
- 거주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지도 · 감독 :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도 · 감독을 한다(제33조).

- 보호관찰관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지시.
-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시행.

■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을 위배하면 대상자를 구인 또는 긴급구인할 수 있다(제39조 및 제40조).

(원호 및 긴급응원)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자조의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의 개선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호를 할 수 있다(제34조).

-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직업훈련기회의 제공.

· 기타 필요한 원조.
·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가 생겨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서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응급구호를 할 수 있다(제35조, 시행령 제20조).

(경고 · 구인 · 유치)

■ 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촉구 및 형의 집행 등 불이익한 처분을 경고할 수 있다(제38조).

보호관찰소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보호관찰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호관찰소 소장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제39조). 구인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구인기간은 48시간이다. 유치하지 않는 한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41조). 긴급을 요하여 제39조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긴급구인을 할 수 있다(제40조).

보호관찰소 소장은 경고사유 및 구인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가석방 및 가퇴원 취소 · 보호처분의 변경 등의 신청이 필요할 때 유치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유치는 대상자를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48시간 이내 수용기관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수 있다(제42조 제1항).

유치허가를 받은 후부터 24시간 이내에 각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42조 제3항). 유치기간은 20일을 한도로 하고 1차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43조).

보호관찰소 소장은 검사가 보호관찰소 소장의 선고유예의 실효신청,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때, 법원이 검사의 위의 신청을 기각한 때,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 소장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위반이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아니하다고 하여 가석방이나 가퇴원의 취소신청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때,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을 불허한 때, 법원이 보호관찰소 소장의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불허한 때는 유치는 해제한다(제44조, 제47조~제49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신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처해질 자에 대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성을 함양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제재이다.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를 배상하고 속죄하는 마음을 함양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형법, 소년법, 가정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 근거법률이다.

사회봉사에는 자연보호, 오물수거, 공공시설봉사, 병원이나 요양소지원, 농촌봉사, 문화재보호봉사, 수해복구봉사, 산불방지 감사활동 등을 하도록 한다. 16세이상의 소년범에게 많이 활용되고 가정폭력범 등 성인에 대해서도 효과가 높은 제재로 인식되고 있다. 집행유예에 처할 때 사회봉사 명령시간은 500시간 이내이다(제59조 전단). 소년법상 장기보호관찰의 경우 200시간 이하이고 단기의 경우 50시간 이하이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제61조). 보호관찰관이 국 ·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제61조 제1항 후단) 이 경우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수강명령은 준법의식고취, 사회성 개발 및 자아확립을 위한 의식화를 위한 제도로서 사회봉사명령과 유사하다. 유죄가 인정된 습관성 중독성 범죄자에게 부과한다. 형법, 소년법, 가정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 근거법률이다. 형법상 집행유예부 보호관찰을 부과할 때 200시간 이내이다. 소년법상 장기보호관찰의 경우 200시간 이하이고 단기의 경우 50시간 이하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심성순화교육, 준법운전강의, 약물치료강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등이 그 예이다.

5 갱생보호

협의로는 교도소, 소년원에서 출소, 출원한 자에 대하여 사후적 추수지도방식으로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예방을 하려는 것이다. 광의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되거나 보호처분받은 자, 형 종료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갱생보호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행하는 것이다. 갱생보호 실시를 주요 내용을 하는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어

있다(제71조 내지 98조). 이러한 자에 대하여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부수하는 선행지도 등을 내용을 한다(제65조).

보호관찰소의 장은 원호 및 긴급원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 · 공립기관, 갱생보호사업허가를 얻은 자 기타 한국갱생보호공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 숙식제공 기타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36조).

제 4 장

범죄예방 활동의 실무



제 1 절 선도유예 실무

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의의

자유형(혹은 구금형)으로 대표되는 시설내처우가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패하였다는 인식이 생겨남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보호관찰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내처우를 발전시키는 것이 최근의 형사정책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식적인 사법처리 자체가 범죄인에게 낙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비공식적 절차를 거쳐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보내는 다이버전(diversion) 정책도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 그리고 행형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형사절차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나 가석방과 같은 각종의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유예처분에 보호관찰을 결합한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제재수단의 하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들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1978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다가 1981년 전국으로 확대실시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선도유예제도' 라고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이라 한다) 제15조 제3호에 근거를 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제도' 라 한다)를 들 수 있다.

전자는 검찰청에서, 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소년의 선도를 담당한다는 점 및 전자는 소년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후자는 성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대한 것만을 국한해서 본다면, 양자 모두 범죄소년을 소년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이탈시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II.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연혁

1 도입배경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범죄소년을 공식적 형사절차로부터 이탈시키면서, 선도보호 방안도 능동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재범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에 따라 창안되었다.

검찰이 선도유예제도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보호관찰제도를 주로 참고하였고, 일본의 갱생보호회제도나 인도의 임의보호관찰관제도, 말레이시아의 소년복지위원회제도, 홍콩의 지원자제도, 필리핀의 민간보조자제도와 같은 민간의 갱생보호제도도 고려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선도유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

즉 선도유예처분의 활용은 법령을 따로 손질하지 않고도 범죄소년을 공소제기나 소년부송치로 처리하는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전과자의 양산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더욱이 검찰과 선도위원이 협력하여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소년범죄의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당시 소년법원이 소년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년보호이념을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또다른 배경이 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당시 소년심판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소년범죄는 증가하지만, 그에 대한 소년법원의 대책은 엄격한 처벌과 방치라는 양극단적 선택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양극단을 메워 줄 수단으로서 선도유예제도가 창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입과정

광주지검에서 1978년 4월부터 175명, 1979년 123명, 1980년 8월까지 91명 등 총992명에게 선도유예처분을 한 결과 재범자는 25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81년 법무부훈령 제88호로 소년선도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유예제도는 전국으로 확대실시되었다.

선도유예제도가 등장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전국적으로까지 실시된 것은 검찰이 기소재량과

선의권을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예방과 범죄소년의 사회복귀에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1988년 소년법이 개정되고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보호처분이 다양화되고 보호관찰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선도유예제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선도유예제도상의 선도위원과 보호관찰법상의 보호위원의 자격요건과 업무내용이 유사할 뿐 아니라 보호활동의 대상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로 통합되었다.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다이버전 이론

1 선도유예제도와 다이버전

일반적으로 소년사법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할권을 갖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이원적 절차로 나누고 있다. 이와 같은 소년사법구조에 따라 비행소년은 통상 경찰과 검찰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된다.

그러나 선도유예제도로 인해 소년사건이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채 검찰의 처리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공식적 사법처리의 대안이라는 다이버전의 핵심적 요소가 선도유예제도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다이버전의 개념

낙인이론은 전통적인 범죄이론과는 관점을 달리하면서 특히 사회통제구조에 초점을 두고 낙인의 생성 · 전개과정과 부정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였다. 낙인이론은 형사정책에 있어서 사회내처우와 다이버젼을 통한 사회통제의 인간화, 나아가 비범죄화와 같은 불개입정책을 제안하였다. 낙인이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범죄억지를 위한 사법처리가 낙인효과로 말미암아 범죄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공식적 사법처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다이버전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사법절차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요소와 사회내처우 프로그램에의 위탁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파악된다. 다이버전이 시설내처우를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것과 같이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 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다이버전이라 한다.

3 다이버전의 목적

형사정책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중심으로 형성 · 전개되어 왔고, 형벌권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범죄인에 대하여 수사, 기소와 재판을 거쳐 형벌을 집행함으로써 구현되는 것이다. 범죄인에 대한 법원의 형벌선고를 회피하는 절차인 다이버전은 필연적으로 형벌집행의 포기도 초래한다.

형벌집행은 형벌목적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집행 포기를 내포하고 있는 다이버전은 형벌목적 나아가 형사정책적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가능하다. 그러나 과잉범죄화의 위험이 지적되는 상황도 생겨났고, 더 나아가 형법 특히 형벌의 사회통제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에 대한 회의가 증대하였다. 다이버전은 이와 같은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이라고 하겠다.

범죄인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형집행이 낙인효과를 가져와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자아의식에 영향을 미쳐 자기실현적 효과 때문에 재범을 부추킨다는 사실이 다이버전을 모색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따라서 다이버젼의 가장 큰 목적은 범죄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피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형사사법실무에 있어서 법원의 업무부담을 덜고 사건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다이버전의 또다른 목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버전이 추구하는 구체적 · 개별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사법제도에 융통성을 인정함으로써 범죄인과 사회의 필요에 대하여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범죄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범죄인에게 형사절차와 유죄판결의 결과를 회피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범죄인에게 범죄행위를 중단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사법제도가 최적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다섯째, 범죄인이 책임감과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여섯째, 범죄인이 직업을 갖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범죄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Ⅳ.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내용

1 선도유예의 요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대개 경찰의 수사단계를 거친 다음 검찰로 송치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를 종결한 경우 크게 나누어 불기소, 기소 또는 소년부송치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중 검사가 선도유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협의의 불기소의 대상이 아닐 것을, 적극적으로는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1) 협의의 불기소의 대상이 아닐 것

선도유예처분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기소나 소년부송치에 대한 대안이고, 불기소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에는 선도유예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도유예의 요건으로 된다.

첫째, 범죄의 혐의를 받는 소년이 범죄행위시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보호지침이 '주로 18세미만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1항), 18세~19세의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선도유예를 할 수 있다.

둘째,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소년사건이 협의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는 재량에 따라 소년부송치, 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필요는 없지만 기소유예는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기소유예한다고 하여 범죄소년이 저절로 사회복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원호와 감독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검사는 중간적 조치로서 선도유예처분을 하게 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선도유예의 적극적 요건을 '선도보호의 필요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유예제도의 운영실무에 있어서는 선도유예의 요건의 하나인 선도보호의 필요성을 어떠한 참작사유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소년사건 가운데 선도유예로 처리할 대상적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2 선도유예의 기준

선도유예의 기준과 관련하여 소년선도보호지침은 '범죄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할 수 있지만(제4조 제1항), 죄질과 범정을 살펴 선도유예의 대상소년을 선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여기에서 '죄질과 범정' 은 일반적으로 '정상참작사유' 라고 하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도유예제도가 범죄소년의 사회복귀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보호의 임무가 포기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범가능성이 많은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사회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한 형사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해 소년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죄질과 범정' 이 기소로 처리할 만큼 무겁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기소유예로 처리할 만큼 가볍지도 않지만, 적절한 선도보호조치를 취한다면 재범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년에 대하여 선도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

선도유예는 처분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되,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 등은 원칙적으로 선도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4조 제1항). 이들은 일반적으로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범죄유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3 선도유예의 절차

(1) 선도유예 대상소년의 선정

검사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협의의 불기소나 소년부송치를 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처리의 기준에 따라 선도유예처분을 할 대상소년을 선정하게 된다. 선도유예의 대상소년을 선정하는 경우에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거나 피의소년을 직접 신문하여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재범가능성과 선도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한다(제5조 제4항).

이 경우 비행성 예측자료표와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참작해야 하며,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배상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및 유치장행장기록을 임의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2)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1) 선정의 원칙

검사는 선도유예의 대상소년을 선정한 다음에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를 위탁해야 한다. 이 경우 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6조 제1항). 그러나 범죄예방위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교사, 직장상사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유예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의 경우에는 주임검사가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한다.

2) 권고 인수

주임검사는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의 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권고인수라 한다(제7조 제1항).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 범죄예방위원은 검

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여부 및 선도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 책임인수에 앞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5조).

1.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
2.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요인.
3.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
4.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및 교우관계.
5. 대상소년의 건강상태.
6.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범죄예방위원은 위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상 소년의 선도보호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임검사 또는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이를 시정보완케 하여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제17조).

범죄예방위원은 위의 사항을 예비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제16조).

1. 대상소년과의 대화.
2. 대상소년의 보호자등과의 대화.
3. 대상소년의 학교 · 직장에의 조회.
4. 대상소년의 이웃에 수소문.
5. 대상소년의 친우면접.
6. 관계 공무소에의 조회.
7. 기타 필요한 방법.

범죄예방위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소년선도 보호책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 경우 주임검사는 선도유예를 재고하거나 다른 범죄예방위원에게 책임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자진 인수

범죄예방위원은 자진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할 수 있다. 이를 자진 인수라 한다(제8조). 또한 범죄예방위원이 아니더라도 성직자, 교직자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유예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자진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예소년의 주변사정을 예비조사하여 그 소년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주임검사는 전항의 의견서를 해당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전담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사건을 결정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자진인수 희망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3) 선도유예처분

검사가 선도유예의 대상소년을 선정하고 범죄예방위원에게 선도보호를 위탁한 다음에는 선도유예처분을 하게 된다.

이때 주임검사는 유예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동 서약서와 절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준수사항란을 간인케 한 후 이를 절취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 경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4 선도의 내용

(1) 유예소년의 준수사항

선도유예를 받은 소년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제10조 제2항).

1. 석방 후 늦어도 3일 내 범죄예방위원을 방문할 것.
2. 선도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 ·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장기출타시는 범죄예방위원에게 신고할 것.
3. 선도기간 중 범죄예방위원과 수시 접촉을 갖고 선도상의 지시에 순응할 것.
4.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
5.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것.
6.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것.
7.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유예사건의 재기 등 여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 없이 이를 감수할 것.

이 밖에 유예소년과 그 보호자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보호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

응, 협조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2) 범죄예방위원의 준수사항

범죄예방위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여부 및 선도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보호하여야 하고(제2항), 대상소년의 개인사정, 가정사정 및 주변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대상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제3항), 대상소년에 대하여 ① 일정주거여부, ② 접촉지속여부, ③ 정직정려여부, ④ 불량교우여부, ⑤ 전비반성여부, ⑥ 피해보상여부 등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하고(제4항),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선도보호조치내용과 대상소년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기재한 선도경과를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3) 선도 방법

1) 접촉선도와 원호선도

유예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방법에는 접촉선도와 원호선도가 있다.

접촉선도란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과 직 · 간접으로 접촉하여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을 선도함에 있어서는 상담 등 직접접촉과 서신 · 전화 등 간접접촉의 방법에 의하여 소년과 월 1회 이상 접촉을 가져야 한다(제18조 제1항). 원호선도란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에게 일정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예방위원은 유예소년이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접촉선도이건, 원호선도이건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년의 가족, 이웃사람, 친지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접촉선도 시에는 상담, 지도, 대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접촉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학비보조, 취학알선,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8조 제3, 4항, 제19조 제2항).

2) 선도방법 및 범죄예방위원의 변경

전담검사는 접촉선도이든 원호선도이든 선도보호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전

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전담검사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이 주거지의 이동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대상소년을 선도보호할 수 없거나 담당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의 선도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을 교체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새로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할 때에는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제3항).

3) 통보

범죄예방위원은 선도기간 중 매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내용 등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유예소년에 대한 접촉(원호)선도경과 통보서에는 접촉상황, 선도조치내용, 범죄예방위원 의견 등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접촉(원호)선도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은 기본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마지막 달의 접촉(원호)선도경과 통보서에 해제, 연장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

지역 범죄예방위원협의회 회장은 해당지역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지역 범죄예방위원은 자신의 개별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 범죄예방위원협의회 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기타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게 ① 재범, ② 소재불명, ③ 이주사유, ④ 사망, ⑤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⑥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이 통보를 받은 검사는 담당범죄예방위원과 협의하여 대상소년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재불명의 경우 담당범죄예방위원에게 동 · 면사무소를 통한 대상소년의 거주이동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동인의 가족친지 등을 통하여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전담검사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 또는 경과통보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할 때에는 이의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촉구는 그 취지를 범죄예방위원에게 통보하고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2항).

5 선도 기간

유예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1년,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6개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검사는 유예소년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족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 중 접촉(원호)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제26조 제1항). 이 경우 전담검사는 접촉선도경과 통보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을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2항). 기간을 연장한 경우 전담검사는 기간연장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제3항). 선도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하지 아니한다(제4항).

6 선도유예의 효과

전담검사는 선도기간 중 유예소년에게 ① 재범, ②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③ 소재불명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취소는 접촉(원호)선도경과 통보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2항), 선도 조치를 취소한 경우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취소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제3항). 선도유예가 취소된 경우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한다(제4항).

그러나 유예소년이 선도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접촉선도조치를 해제한다(제27조 제1항). 해제는 전담검사가 접촉(원호)선도경과 통보서에 해제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제2항). 선도유예를 해제한 경우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접촉(원호)선도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 수사하지 아니한다.

V. 선도보호의 사례소개

(한양대학교 멘터프로그램)

1 멘터프로그램의 취지

선도보호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소년에 대한 선도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아울러 필요하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 기존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이외에 세대차가 적은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내처우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와도 부합한다.

세대차가 적은 대학생들이 소년범을 선도하는 예로서 이하에서는 한양대학교와 서울동부검찰청이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공동으로 실시했던 멘터(mentor)프로그램을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한양대학교 멘터프로그램은 중단상태에 있지만, 동프로그램은 청소년 선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멘터프로그램은 이후 광주의 호남대학교, 부산소재의 몇몇 대학교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 멘터(mentor)는 고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BC 1200년경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멘터(Mentor)였다. 멘터는 오디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여년 동안 왕자의 친구, 교사,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 이후 멘터라는 그의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왔다. 즉, 멘터(mentor)는 지혜롭고 믿을 만한 조언자(a wise and trusted advisor)라고 할 수 있고 멘터링(mentoring)은 지도(coaching)하는 일을 포함한 그와 관계된 모든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멘터의 역할들은 조언자(advisor), 후원인(sponsor), 후견인(tutor), 옹호자(adocate), 인도자(guide)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멘터란 현명하고 믿을 수 있는 조언자로서 단순한 상담자가 아닌 조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범죄예방위원과 범죄소년 사이의 세대차이가 너무 큰 경우 양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도보호가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소년범과 세대차이가 적은 대학생들을 범죄소년 선도에 활용하자는 것이 멘터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멘터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범죄소년보다는 우범소년이나 불량소년들의 선도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한양대학교의 멘터프로그램은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학생 역시 인격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 선도의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학생만으로 범죄소년을 선도하기보다는 대학생이 범죄소년 선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멘터프로그램의 내용

멘터프로그램은 1998년 여름학기부터 시작되었는데,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동부지청이 공동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도를 자원한 한양대학교 학생이 동부지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 혹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된 소년과 1 : 1로 교제함으로써 비행소년을 선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진행되고, 2001년 6월 현재까지 제6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한 기(期)에는 대체로 20~25명 정도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같은 수의 비행소년 등 40~50명 단위로 운영된다.

멘터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멘터에 대한 교육, 집단활동, 개별활동 및 평가 등 네 가지로 나뉜다.

(1) 멘터에 대한 교육

멘터에 대한 교육은 매일 5시간씩 이틀에 걸쳐 행해졌다. 첫날에는 멘터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해, 비행청소년의 사법처리절차,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의 내용 등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한양대학교의 교수, 동부지청의 담당검사, 동부지청의 범죄예방위원들이 강의를 담당한다. 둘째날에는 대화기법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을 하며, 집단활동, 개별활동, 소그룹활동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행한다.

(2) 집단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은 자원봉사 대학생과 비행소년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대체로 월 1회 정도 행해진다. 제일 먼저 행하는 집단프로그램은 관계형성을 위한 1박 2일의 수련회이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나 비행소년은 처음 만나게 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서로 처음보는 사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수련회는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학생과

비행소년과 자연스럽게 짝이 맺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련회기간 동안 대학생과 소년은 식사, 대화, 게임, 등산 등 모든 행동을 같이하게 된다. 6회에 걸친 시행결과 이 수련회를 통해 소년들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이후에 걸친 개별활동을 위한 기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된다.

기타의 집단활동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에의 참가, 등산, 체육대회,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체험하기 등이 집단활동으로서 행해진다. 이러한 활동에서도 대학생자원 봉사자와 비행소년은 일 대 일 혹은 소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

(3) 개별프로그램

이는 대학생자원 봉사자와 비행소년이 일 대 일 혹은 소그룹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멘터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대상소년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소문난 먹거리 찾아다니기, 함께 운동하기, 2인 1조로 DDR하기, 같이 목욕하기 등.

둘째, 대상소년으로 하여금 문화적 경험을 쌓게 하는 활동으로서, 함께 영화 혹은 단편영화 보기, 청소년 전문가들의 강의듣기, 놀이공원가기, 청소년거리 가보기, 방송국의 공개방송관람, 유적지나 고궁답사, 기억에 남는 책 권하기, 문화도시방문, 청소년 문화단체 방문 등.

셋째, 컴퓨터를 통한 선도활동으로 청소년 대화사이트 방문, 청소년상담 홈페이지방문, 이메일 교환,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컴퓨터 게임하기 등.

넷째, 대상청소년에게 새로운 삶의 경험을 쌓게 하는 활동으로서, 부모님의 일터 방문, 직장이나 학교로 청소년 초대, 정신대 할머니들과 만나기, 헌혈하기, 새벽시장 가보기, 야외로 소풍가기, 장애인 단체 방문 등.

다섯째,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활동으로서, 집에 초대하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기, 아끼는 물건을 바꾸어 보관하기, 서로에게 일기를 써보기, 청소년이 만든 작품감상, 취미활동을 배우기, 새벽에 같이 운동하기, 모교방문 등.

여섯째, 대상소년의 진로설정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으로서 MBTI 적성검사하기, 일자리 구하는 경험해보기, 장래 직업에 대한 이야기, 직업학교 방문, 농사체험 등.

실제 자원봉사 대학생과 대상소년이 많이 하는 개별활동으로는 스포츠 · 영화 · 공연관람, 체육활동, 취미활동, 학습지도, 컴퓨터지도,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 여행, 상담 및 대화 등이다.

(4) 평가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에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가 있다. 중간평가는 자원봉사 대학생 전원, 지도교수, 동부지청검사, 동부지청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진행상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최종평가는 같은 사람들이 6개월에 걸친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과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다음 기(期)의 멘터프로그램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는 것이다.

3 멘터프로그램의 장점

비행청소년의 선도는 대상소년이 좋은 영향을 받을 때에 잘 이루어진다. 좋은 영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대상소년이 좋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다.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들은 또래그룹들과 자주 접촉하고 이들을 통해 비행수법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비행적 접촉을 줄이고, 모범적인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준법을 생활화 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선도에 중요하다. 따라서 비행소년들에게 대학생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멘터프로그램은 충분한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멘터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경우 초기 약물사용은 45.8% 감소, 초기 음주 27.4% 감소, 타인 구타행위 31.7% 감소, 학교 성적 3.0% 증가, 수업 결석 36.7% 감소, 학교 결석 52.2% 감소, 부모에게 거짓말은 36.6% 감소의 변화가 있었다는 통계조사도 있다. 그러나 멘터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의 접촉은 비행소년들에게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좋은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억은 비행소년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준법생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멘터프로그램의 가장 큰 존재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대학생멘터는 기성범죄예방위원들에 비해 대상소년들과 형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훨씬 넓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비행소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멘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6기에 걸친 멘터제도 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비행소년의 부모들이 멘터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들은 자기 자식이 과거 범죄를 저질렀지만 현재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멘터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국가가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들은 대상소년이 멘터활동을 통해서 이전 범죄를 같이 하였던 공범소년을 만나는 것과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에 대해서는 대상소년의 비행성(非行性)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멘터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점 및 멘터활동은 소년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음으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감독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경우 부모들에게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협조할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

대상소년들의 부모가 대학생멘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대상소년을 담당하는 범죄예방위원들이 부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비행소년이 멘터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공범소년을 만나게 되는 문제는 검사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때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대학생멘터의 경우 군입대, 취직, 아르바이트, 데이트, 과외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봉사하겠다던 계획을 변경하거나, 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생멘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멘터와 범죄예방위원간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대학생과 범죄예방위원간에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선도에 열의가 있는 범죄예방위원과 대학생을 확보하고, 대학생멘터와 범죄예방위원 간의 역할분담, 연락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제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멘터가 범죄예방위원에게 연락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경우 범죄예방위원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부모의 협조를 통한 비행소년에 대한 선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아가 대상소년 선도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범죄에방위원이 주도권을 잡고 대학생멘터에게 연락을 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멘터제도운영을 위한 비용확보가 필요하다. 6기(期)에 걸친 시행결과 멘터 20명, 범죄소년 20명 총40명의 6개월 동안의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집단활동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준비비 등 직접경비만 최소 500만원이 필요하다. 한양대학교 멘터프로그램의 경우 동부지청의 범죄예방위원들이 집단프로그램등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비용을 찬조하는 형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년이나 한 기(期)에 필요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

그램운영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1997년 미국의 경우 정부에서 7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멘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만이라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확립이 시급하다. 개별활동의 경우 대학생멘터들에게 경비일부를 보조하였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여 자신의 용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멘터들도 많았다.

다섯째, 집단프로그램은 사회봉사단 직원이 관리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큰 문제가 없었으나 개별프로그램은 대학생멘터의 열의나 능력에 의해 격차가 심했다. 따라서 대학생멘터에게 열의를 불어넣고, 구체적 개별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대상소년이 대학생멘터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놓고, 나오지 않거나 늦게 나오거나 대상소년의 부모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학생멘터의 열의가 식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소년이 멘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검사가 소년과 부모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학생멘터들이 오랜기간 활동하지 않고 대개 한 기(期), 6개월만 활동함으로 인해 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활동 경험 내지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멘터동아리를 조직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단순히 학생들의 열의만을 가지고 멘터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일정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 범죄예방위원의 격려등이 필요하다.

일곱째, 대상소년들에게 일정한 일을 맡김으로써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단활동을 계획하고 준비, 진행하는 일이나 멘터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만드는 것 등의 일을 대상소년에게 맡기고 대상소년이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해 낸 경우 대상소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효과적인 선도방법이 될 수 있다.

5 한양대학교 제5기 멘터프로그램의 내용 및 자체평가

Ⅰ. 사 업 개 요

1. 참가자 현황(총인원 : 40명)
   - 대학생(멘터) : 20명
   - 청소년(멘티) : 20명

2. 실시기간 : 2000. 6월~2000. 11월말까지(6개월간)

3. 프로그램 내용

⑴ 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회의, 기본교육(멘터 프로그램 이해, 비행청소년의 이해), 전문교육(현장사례, 대화기법), 개소식 및 상견례

⑵ 집단 프로그램 : 관계형성을 위한 수련회, 레크레이션, 등산, 극기훈련, 복지시설 1일체험 봉사활동, 금연학교입교, 가을농촌봉사활동 등

⑶ 개별 프로그램 :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문화활동(영화 · 연극 · 콘서트 축제 등 관람), 새로운 세계체험, 진로적성검사, 여행, 학습 및 컴퓨터지도, 고민상담 및 대화 등

⑷ 평가 프로그램 : 설문조사 및 중간/최종평가회

II. 사업내용 및 일정

1. 교육 프로그램

⑴ 교육(1일차)

- 일 시 : 2000년 6월 26일(월) 11:00~16:30
- 장 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2층(제1세미나실)
- 내 용 : 11:00 ~ 12:00 멘터와 함께 프로그램회의
  12:00 ~ 13:00 중식
  13:00 ~ 13:20 멘터 비디오 상영
  13:20 ~ 13:50 멘터프로그램 소개(주성수 소장)
  14:00 ~ 14:30 비행청소년의 이해(오영근 실장)
  14:30 ~ 15:20 한석훈 동부지청 청소년담당 검사
  15:30 ~ 16:10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위원회 회장
  16:10 ~ 16:50 청소년 범죄예방 선도위원회 멘터 담당위원

⑵ 교육(2일차)

- 일 시 : 2000년 6월 27일(화) 13:00~17:50
- 장 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2층(제1세미나실)
- 내 용 : 13:00 ~ 14:50 대화기법 1(이론)(류진혜 전임상담원)

15:00 ~ 16:50 대화기법 2(실습)(류진혜 전임상담원)
17:00 ~ 17:50 개별/소그룹활동 프로그램 소개 이용이

(3) 교육 (3일차)–(멘터 대학생 M · T)

– 일 시 : 2000. 6. 28일(수)~29일(목) (1박 2일)
– 장 소 : 미정
– 내 용 : 멘터링에 관한 교육 및 친목도모

2. 제5기 멘터–멘티의 첫 만남

– 일 시 : 2000년 7월 1일(토) 15:00~19:00
– 장 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01 강의실(예정)
– 내 용 : 15:00 ~ 17:00 서로 친해지기(레크레이션)
17:00 ~ 18:00 대화의 시간(캠퍼스에서…)

3. 멘터 대학생과 범죄예방 위원간의 첫 만남

2000년 7월 2일(일)부터 8일(토) 중 1회 이상 범죄예방 위원과의 첫 만남을 통해 상견례를 가짐으로서 멘티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다.

4. 집단 프로그램

(1) 관계형성을 위한 수련회

– 일 시 : 2000년 7월 22일(토) 15:00~23일(일) 16:00(1박 2일)
– 장 소 : 천안 에스원 연수원(예정)
– 목 적 : 멘터와 멘티, 멘터와 범죄예방 위원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이후 프로그램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준비작업
– 내 용 : 팀별친목 다지기, 극기훈련,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서 처음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소한다.
– 기대효과 : 이후 프로그램 진행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킨다.

【팀별활동(소그룹 프로그램)】

- 기　간 : 2000년 7월~11월 25일(주 1회 만남)
- 목　적 : 팀별 또는 개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간의 보다 원활한 관계 형성
- 내　용 : 봉사활동, 체육활동(농구, 축구 등), 여행, 새로운 세계체험, 문화활동(연극, 영화, 스포츠, 콘서트 등 관람), 학습지도 등
- 기대효과 : 개별 접촉을 통해서 보다 빨리 서로를 이해한다.

(2) 수상스포츠 활동

- 일　시 : 2000년 8월 15일(화) 10:00~15:30
- 장　소 : 한강 고수부지
- 목　적 :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보다 원활한 관계를 형성
- 내　용 : 물놀이, 수상스키 강습
- 기대효과 : 운동을 통한 성취감과 대리만족 달성

(3) 사회복지 시설방문 1일 체험 봉사활동

- 일　시 : 2000년 9월 24일(일) 10:00~16:00
- 장　소 : 수도권 지역
- 목　적 :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이해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
- 내　용 : 사회복지 수용시설(양로원, 고아원,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을 경험하게 한다(청소, 빨래, 목욕, 체육활동, 레크레이션 등).
- 기대효과 : 어려운 이웃 및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함으로써 비행을 치료하고 예방한다.

(4) 가을농촌봉사활동

- 일　시 : 2000년 11월 5일(일) 10:00~16:00
- 장　소 : 미정
- 목　적 :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웃에 대한 이해와 베풂의 즐거움을 체험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 내　용 : 농촌 일손 돕기
- 기대효과 :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즐거움과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

하게 한다.

5. 개별 및 소그룹 프로그램

⑴ 봉사활동(월1회 3시간)

⑵ 학습 및 생활 지도

⑶ 문화활동(연극 · 영화 · 콘서트 · 축제 등 관람)

⑷ 스포츠 활동

⑸ 진로적성검사(부모와 멘티, 멘터 참여)

⑹ 컴퓨터 지도

⑺ 새로운 세계 체험(각종 단체 방문활동 등)

6. 평가 프로그램

⑴ 중간평가

– 일 시 : 2000년 8월 19일(토) 10:00~12:00

– 장 소 : 한양대학교

– 목 적 :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

⑵ 종결평가

– 일 시 : 2000년 11월 25일(토) 10:00~12:00

– 장 소 : 한양대학교

– 목 적 :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차기 계획에 반영

7. 기타 계획

⑴ 멘터 홈페이지 제작관리 운영(2000. 6월부터 계속)

⑵ 멘터 메뉴얼 및 멘터 교육자료 보완(2000. 6월부터 계속)

8. 자체평가(2000. 11. 25)

⑴ 프로그램 진행 현황

동부지청과 본교 제3섹터 연구소가 1998년도 여름학기부터 공동으로 '학교평화 멘터프로

젝트“를 시범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 비행 치료 및 예방 등의 지역사회모델을 정립하였다. 지난 4기에 이어 이번 제5기는 2000년 6월부터 멘터 대학생 자원봉사자 22명을 모집하여 멘터의 의미와 역할, 청소년과의 대화기법, 범죄예방 위원들의 선도기법 등을 배우면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교육 후에 멘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명이 그만두었으며 또한 활동 중에 1명이 병가휴학으로 계속할 수 없었다. 멘티 청소년들 중에도 처음부터 본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4명이 참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국에 멘터 대학생 19명과 멘티 청소년 19명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6개월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4기때와는 달리 형식적인 발대식을 없애고 바로 레크레이션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짐으로써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는 데 노력하였다. 후에 서로 1 : 1로 연결시켜 바로 개별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서로의 동화시간을 약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수련회를 떠남으로써 보다 친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2) 현재까지 멘터프로그램 활동 현황

- 제 1기 : 1998년 6월 22일~8월 17일까지(2개월간 시범실시)
  - · 멘터(대학생) – 36명 · 멘티(청소년) – 24명
- 제2기 : 1998년 8월 29일~1999년 2월 7일까지(6개월간 실시)
  - · 멘터(대학생) – 35명 · 멘티(청소년) – 25명
- 제3기 : 1999년 3월 8일~8월 11일까지(6개월간 실시)
  - · 멘터(대학생) – 21명 · 멘티(청소년) – 27명
- 제4기 : 1999년 12월 13일~2000년 5월 28일까지(6개월간 실시)
  - · 멘터(대학생) – 21명 · 멘티(청소년) – 23명
- 제5기 : 2000년 6월~11월말까지(6개월간 실시)
  - · 멘터(대학생) – 19명 · 멘티(청소년) – 19명

(3) 사업별평가

가. 멘티와의 첫만남

1) 일 시 : 2000년 7월 1일(토) 15시~18시

2) 장 소 :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401 강의실

3) 참석인원 : 총41명(멘터대학생 20명, 멘티청소년 17명, 진행 4명)

4) 활동내용 : 금일 프로그램 진행은 특별한 형식 없이 처음부터 레크레이션으로 시작하여 서로 자유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상견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과회 시간을 통해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멘터 대학생들은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눈여겨 보았던 청소년들 중 자기와 같이 6개월간 활동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시간도 가졌다.

5) 평가 : 본 행사는 지난 4기때와는 달리 경직된 개소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첫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얼굴만 쳐다보고 말도 없이 조금은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으나,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새 화기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간이 갈수록 다들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적극적이었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다. 이번 청소년들은 4기 때보다는 조금은 더 적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앞으로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이번에도 지난 기수와 마찬가지로 대상청소년 전원이 참가하지는 못했다. 본 프로그램 대상 청소년 22명 중 5명이 불참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아무튼 딱딱하고 형식적인 개소식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멘터 대학생들과 멘티 청소년들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나. 멘터-멘티 수련회

1) 일　시 : 2000년 7월 22일(토)~23일(일) (1박 2일)

2) 장　소 : 여주 청소년 수련원

3) 참석인원 : 총37명(멘터대학생 19명, 멘티청소년 15명, 진행 3명)

4) 활동내용 : 첫째날 수련회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간단한 교육을 실시한 후 우리는 바로 팀별활동을 실시했다. 팀별활동은 팀명, 팀구호, 팀가 등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과 팀별 장기자랑, 게임 등을 통해 같은 팀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별자리 관측은 실내에서 별자리 모형과 비디오를 통해 실시되었다. 그리고 간식시간과 다과회시간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둘째날은 밤새 내린 비로 인하여 물이 불어나 레프팅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팀별로 족구와 탁구시합도 하고,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5) 평　가 :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수련회에 참관해 주신 한석훈 검사님과 이종관 회장님 그리고 범방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좋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여주청소년 수련원까지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도 본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보다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범방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멘터 대학생들과 멘티 청소년들의 전체 만남은 지난 첫 만남을 하면서 상견례를 가진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그래서 그런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부모님들을 설득하느라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맑고 좋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오후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약속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다. 따라서, 출발 시간도 1시간이나 늦어져 15시에나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게 출발장소에 나타난 학생들은 서로 전화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버스를 따라오는 적극성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다. 아무든 우리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여주 수련원에 계획보다는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하여 석식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4기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버지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다음 기수부터는 양친부모 모두 교육에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 듯싶다.

둘째, 모두들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나타났듯이 1시간이나 늦게 출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셋째,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멘티 청소년(22명)들이 전원 참석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어제만 해도 다 참석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간다는 것이다. 아무튼 8명이나 불참을 했다. 앞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 우천 관계로 최초 계획했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레프팅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다들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첫날밤에는 잠도 안자고 새벽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열의를 보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다. 멘터-멘티 수상 스포츠활동

1) 일　시 : 2000년 8월 15일(화) 10:30~16:30

2) 장　소 :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

3) 참석인원 : 총38명(멘터대학생 14명, 멘티청소년 11명, 진행 3명, 안전요원 10명)

4) 활동내용 : 집단프로그램으로는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멘터와 멘티가 여름에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 활동으로서 윈드서핑과 레프팅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하였다.

우리는 오전 9시 30분에 건대입구 역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시작부터 출석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안 나온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1시간 정도 늦은 후에야 한강 뚝섬 유원지로 출발할 수 있었다. 항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참석률은 멘터가 멘티보다 조금 더 많았다. 최종 인원 확인을 마치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버스 안에서 멘터 멘티들끼리 서로 장난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오래 전부터 만나온 사이 같아 보였다. 10시 30분이 조금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우리 때문에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3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강사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질 보조강사들 소개를 받은 후 교육은 시작되었다. 먼저 금일 교육 일정과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교육받은 후 11시경부터는 본격적인 기초교육에 들어갔다. 우리는 오전에 A, B 2개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A조는 먼저 윈드서핑을 B조는 레프팅을 나중에는 조를 바꾸어서 A조는 레프팅을 B조는 윈드서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전에는 기초교육인 장비명칭 소개와 타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며, 오후에는 실전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평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처음에는 엉성한 자세에서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취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에는 자세도 제법 나오고 다들 재밌어하고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시간을 가졌다. 야외에 나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다들 점심을 맛있게 먹고 휴식시간에는 서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13시 30분부터는 실전교육이 진행되었다. 레프팅조는 2대의 고무보트에 나누어 타고 안전요원의 동승하에 힘차게 영차, 영차 구령에 맞추어 하나가 되어 노를 저었다. 다들 처음에는 못할 것 같더니 보트가 제법 똑바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환

호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윈드서핑은 혼자서 해야 하는 운동이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계속 강물 속으로 첨벙, 첨벙 빠지면서도 다들 즐거워했다. 어떤 친구는 방향을 바꾸지 못해서 강 가운데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안전요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16시경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오늘 수고해주신 강사선생님과 안전요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본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신 본교 체대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5) 평　가 : 이번에 처음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하지만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 그리고 모임시간이 항상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예정대로 모였다면 보다 많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이번 프로그램은 물에서 하는 활동었기에 내심 안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 별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많은 멘티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라. 멘터프로그램 중간평가회

1) 일　시 : 2000년 9월 2일(토) 13~15시
2) 장　소 : 사회과학관 408 강의실
3) 참석인원 : 총23명 (멘터대학생 19명, 교수 1명, 진행 3명)
4) 활동내용 : 6월말부터 시작한 5기 멘터프로그램이 어느덧 절반이 지났다. 최초 계획으로는 8월 마지막 주 개학하기 전에 중간점검 차원에서 평가회를 범방위원들과 같이 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오늘 주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멘터대학생들과 평가회를 갖게 되었다. 그래도 멘터대학생들이 1명 열외없이 100% 참석해서 서로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진지한 시간도 있었다. 이번 5기들의 중간점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팀은 멘티청소년과 가족들의 비협조로 힘겨워하는 멘터도 있었다. 매 기수마다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점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쉬움이 많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본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아버지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부모님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현재 실시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멘터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교육, 즉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실직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3.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드는 경비가 부담이 된다. 물론 1~2회 정도는 괜찮겠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대학생들도 용돈을 부모님들에게 타쓰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4. 멘티 청소년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비협조적이다. 약속시간을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아예 약속장소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5. 범죄예방 위원님들과 멘터, 멘티가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6.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청소년들의 참석률도 높아질 것이다.

마. 사회복지 시설방문 1일 체험봉사활동

1) 일　시 : 2000년 9월 24일(일) 10~17시
2) 장　소 : 김포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3) 참석인원 : 총23명(멘터대학생 12명, 멘티청소년 7명, 진행 4명)
4) 활동내용 : 전형적인 가을날씨 우리는 오전 9시까지 한양대 본관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매번 그렇듯이 오늘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멘터대학생들밖에 없었다. 9시 15분경 멘티 2명도착, 멘티 가정으로 일일이 전화를 해보니 일요일이라 그런지 대부분이 늦잠을 자는 사람이 많았다. 또 어떤 친구는 집에서 1시간 전에 출발을 했다는 사람, 교회에 갔다는 사람 등등… 이유가 분분하였다. 아무튼 아침부터 머리가 아팠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다들 알았다고들 하더니 이런 배신을, 결국 오늘 10시40분까지 참석한 멘티는 7명뿐이었다. 김포 석암베데스다 장애인 요양원에 도착하니 12시20분이었다. 우리는 먼저 담당선생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오늘 해야 할 봉사내용과 시설에 있는 식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받고, 2개조로 나누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조는 창고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가전제품과 집기들 그리고 이불, 겨울옷과 여름옷의 교체정리 등의 작업을 했다. 창고에는 정말로 많은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언제나 다 정리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품목별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창고정리를 마칠 수 있

었다. 또 2조는 담당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강당과 각 방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깨끗이 했다. 우리는 2시가 넘어서 점심식사를 하고, 3시부터는 식당청소와 설거지, 김치 만들기, 도색하기, 휠체어 산책, 야외청소 등을 하였으며, 4시부터는 각 방에 2명씩 들어가서 원생들과 준비해 간 간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4시50분에 원생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많은 장애인들을 뒤로한 채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오늘 다들 피곤해서 그런지 학교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한잠 자다 눈을 떠보니 어느 새 학교 근처에 와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서 저녁을 먹으면서 간단하게 오늘을 평가하고, 격려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과 주의 사항을 전달한 후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5) 평　가 : 이번 사회복지 시설방문 체험봉사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불참하는 관계로 출발 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참가한 학생들이 땀흘리며 너무 열심히 해주어서 다행이었다. 오늘 참석한 멘터, 멘티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들 수고들 많이많이 했다. 우리 멘티청소년들은 이번 장애인 시설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이번을 기회삼아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해서 다시는 문제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 추계등산활동

1) 일　시 : 2000년 11월 12일(일) 10~16시
2) 장　소 : 도봉산(집결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09:40분 집합)
3) 참석인원 : 총26명(멘터대학생 12명, 멘티청소년 10명, 진행 4명)
4) 활동내용 : 오늘 새벽 일기예보를 보니 날씨가 오전에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린다는 말에 조금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별로 춥지도 않고 흐리기만 해서 등산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씨였다. 우리는 9시 40분까지 도봉산역 개표소 앞에서 모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약속시간에 나타난 사람들은 소수인원이었다. 할 수 없이 또 각각 멘티들 가정에 전화를 해서 출발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10시 30분쯤 되어 올 사람들은 다 온 것 같아 우리는 매표소로 이동을 해서 표를 산 후 산을 오를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학생들도 있어서 정상까지 갈 계획은 아니였는데, 오르다 보니 정상이 코앞에 와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간식을 먹고, 휴식할 사

람은 휴식을 하고, 정상에 갔다 올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 그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하산을 했다. 처음에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또는 종교활동에 불참할 수가 없어서 등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인원이 불참해서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웠다. 그러나 등반 중에는 멘터, 멘티가 서로 대화도 하면서, 장난도 치며, 힘든 코스에서는 서로 끌어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계절에 맞게 단풍구경도 하고, 장시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참가자들 대부분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계절에 맞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예 :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그래야 청소년들도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본다. 아무튼 이번에도 전원참석은 못 하였지만 그래도 산을 좋아하는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끝으로 우리 멘티청소년들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조금은 서운하면서도 시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우리와 같이 생활한 6개월, 무엇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청소년기를 아무 사고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 동안 모두 모두 수고들 많이 했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사. 문제점 및 발전방안

첫째,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 본 프로그램에는 단체프로그램과 개별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약간의 세부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 기수마다 보면 대학생 멘터나 청소년 멘티들의 상당수가 단순히 집단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계절에 따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청소년들도 많이 참석해서 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활동지침서가 필요하다. 여러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다수의 멘터대학생들이 개별프로그램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멘터대학생들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는 상황에 맞는 활동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멘티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보다 참여도도 높아지고, 책임있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이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학생 멘터나 청소년 멘티 모두 시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6기부터는 조별활동을 철저히 관리해서 될 수 있으면 조장 책임 하에 조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범죄예방 위원들과의 정보교류가 미흡하다. 범죄예방 위원들과의 정보공유 문제로 멘터가 멘티의 현재 상태나 성격 또는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멘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선도기법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멘티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사전에 대학생 멘터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멘터링 활동을 하기 전에 상대 멘티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다 빨리 가까워질 수 있고, 시간도 절약되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섯째,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멘터도 바쁘고 멘티도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전화 통화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어느 정도 서로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학기 중에는 서로 바쁘다 보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조별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여섯째, 멘터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멘터대학생들에 대한 기존에 실시해 온 단순하고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로 멘티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멘터링 기법, 성공한 선도사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에 대학생멘터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멘터들의 역할과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그동안 활동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멘터의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멘터는 기본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멘티 청소년을 이끌 만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멘터 대학생들을 선발해야 좀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멘티 청소년들 또한 멘터 대학생들에게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여덟째, 부모님들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지난 4기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본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님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수에서도 부모님들의 이해부족으로 상당수가 프로그램 진행에 비협적이었으며, 부모님의 반대로 몇 명의 멘티는 본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참가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청소년 멘티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멘티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관심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홉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매번 문제점으로 튀어나오는 단골 메뉴 중의 하나가 활동 자금 문제이다. 개별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일방적으로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생 멘터들도 1 : 1 만남인 개별프로그램을 조금은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터 대학생들과 범죄예방 위원님들 간의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3자가 한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 소요경비 및 사용내역

1. 소요예산 총액

(단위 : 원)

사업 기간	최초사업 예 산	사업비 내역			비 고
		신청 예산	지출 예산	잔 금	
2000. 6월부터 5월말까지(6개월간)	6,000,000	4,882,800	4,096,150	786,650	잔금 범방위 통장으로 입금

2. 프로그램별 예산지출내역

(단위 : 원)

프로그램명	신청 예산	지출 예산	사용후 잔금	비 고
총 계	4,882,800	4,096,150	786,650	잔금 범방위 통장으로 입금
멘터교육 및 멘터, 멘티와의 첫 만남	897,500	899,500	-2,000	
멘터-멘티 수련회	2,093,000	1,596,650	496,350	잔금 범방위 통장으로 입금(8/1일)
수상스포츠 활동	627,300	631,400	-4,100	
장애인복지시설방문 (1일 체험봉사활동)	850,000	559,700	290,300	잔금 범방위 통장으로 입금(10/5일)
추계동산	415,000	426,750	-11,750	

제 2 절 보호관찰 실무

Ⅰ. 환경조사 작성기법

1 의의 및 기능

- 소년원,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수용 중인 소년원생 및 소년수형자, 보호감호소에 수용된 피보호감호자 중에서 수용기관의 장이 의뢰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관찰관(범죄예방위원), 또는 소속직원이 그 생활환경, 출소 후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 수용기관에서 수용자의 교정처우시 참고자료로 활용.
- 가석방 · 가퇴원 · 가출소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 나타난 범죄유발요인 등 문제환경에 대한 개선 및 조정에 활용.

2 조사의 시작과 끝

- 조사의뢰서 접수 : 환경조사 접수처부에 등재.
- 조사담당자 지정 : 담당직원 및 범죄예방위원.
- 가족 또는 수용자 면담 : 면담조사 실시.
- 현지확인 및 관계인 면담 : 생활근거지, 수용 전 취업처 등 방문조사 및 관계자에 대한 방문조사.
- 환경조사서의 작성 :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서 작성.
- 통보 : 접수처리부에 기재.

3 환경조사의 방법

1) 개요

환경조사는 면접조사, 자료분석조사, 현지방문조사, 사실확인조사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여건을 파악하고 범죄나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요인과 개선해 주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는 것임.

2) 면접조사

- 수용자 · 가족 · 관계인 등과 면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할 사항이나 확인을 위한 사항을 미리 질문요지로 작성하여 면접에 임함.
- 수용자를 면접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조의뢰' 공문을 미리 수용기관에 보내고 수용기관을 방문하여 면접.
- 면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퇴원 · 가석방 등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하는 등 불필요한 언급은 가급적 피함.
- 가족과 면접을 할 때에는 조사자에 대한 경계심 · 불신감 · 국가기관에 대한 피해의식 등 거부감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환경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
- 취업해 있던 직장의 직원이나 재학 당시의 교사와의 면접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화로 승낙을 얻어 적당한 장소에서 면접함.
- 교우 등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면접을 할 경우에는 피면접자가 경계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접근하여 생활상황을 알아내는 것이 효과적임.
- 가족 등과 면접을 시도할 때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시는 주소부정, 주거이전, 소재불명 사실 등을 기재하여 통보.

3) 현지방문조사 및 사실확인조회

면접조사 등에서 얻어진 정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수용시설에서 송부되어 온 신상조사서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항들은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조사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

4 환경조사서 작성

1) 개요

환경조사는 조사한 결과내용이 가치 있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한 자

료를 잘 정리하고 내용을 명료하게 조사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함.

2) 작성요령

- 성　명 :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
-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재하되 귀주예정지가 있으면 예정지를 기재.
-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
- 성장과정 : 연도와 주요 특이사항을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 가족사항 : 관계, 성명, 연령, 학력, 동거부여 등을 간략히 기재.
- 교우관계 : 범행 당시 친밀히 접촉했던 자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자들을 기재.
- 출소 후 생활계획 : 수용자의 진술과 가족의 면담조사를 토대로 출소 후 현실성이 있는 취업처 및 취업예정지를 기재.
- 사회적응 가능성 : 수용 중 상벌 및 기능자격증 취득여부, 수용자의 반성 정도, 출소 후의 안정된 취업처 확보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응력 여부를 기재.
- 조사자의 의견

· 조사자가 판단한 범죄원인을 간단히 기술.
·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재.
· 사회적응 가능성, 보호자의 인수의지, 가족간의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와 가석방.
· 가퇴원 · 가출소 심사시 일정 척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재.
· 사회내에서의 적절한 환경개선 내용 기재.

5 환경조사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 수용기관에서 보내온 신상조사서에 기록된 수용자의 연령, 직업, 범죄내용 등을 참고로 조사사항에 대한 항목별 질문목록을 만들어 조사할 것.
■ 피조사자에 대한 환경조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것.
■ 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는 특수한 전문용어를 제외하고 평이한 용어로 간결하게 기술하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할 것.

○○ 보 호 관 찰 소

(031-212-7151)

분류번호 : 사무 -　　2005년 6월 일

수　신 : ○○○ 소년원장　　발신 : ○○보호관찰소장

(인)

제목 : 환경조사 회보

분류번호 - 38에 의거 아래 사람에 대한 환경조사를 회보합니다.

수용번호	2002-018	성 명	○○○	주민등록번호	○○017-○○02421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30-1번지			전화번호	02-591-8733
최종학력	○○○ 학교 중퇴				
수용전 직업	공원	근무 기간	○년 월	월급 (수입)	만원	근무 태도	양호, 보통, 불량

가 족 사 항

관 계	이 름	나 이	학 력	직 업	월수입	동거여부	비 고
양 모	○○○	59	초퇴	공 원	60만원	별 거	공장숙소
이복누나	○○○	42	중졸	가내자영업		별 거	만두도매점
매 형			고퇴	가내자영업		별 거	만두도매점

교 우 관 계

관 계	이 름	나 이	학 력	직 업	교제동기	주거지

공 범 관 계

관 계	이 름	나 이	학 력	직 업	처벌내용	교제동기	주거지
	김성열				6호	인근동네	
	김진수				6호	인근동네	
	송재억				6호	인근동네	

<table>
<tr><th colspan="8">생 활 환 경</th></tr>
<tr><td>성장과정</td><td colspan="2">친부모, (양부모), 편모
편부, 조부모, 기타</td><td colspan="2">출 생 별</td><td colspan="3">적자, 서자, (사생아)</td></tr>
<tr><td>결혼여부</td><td colspan="2">미 혼</td><td colspan="2">종 교</td><td>없음</td><td>취미
특기</td><td>컴퓨터 조작</td></tr>
<tr><td>주요경력</td><td colspan="2"></td><td colspan="2">질 병 력</td><td colspan="3"></td></tr>
<tr><td>현 주 거
형 태</td><td colspan="2">자택, 전세, 월세, 기타
(콘테이너박스)</td><td colspan="2">생 활
정 도</td><td colspan="3">상, 중 (하)</td></tr>
<tr><td>인 수 자</td><td>이 름</td><td>○○○</td><td>관 계</td><td>양 모</td><td>나 이</td><td colspan="2">59</td></tr>
<tr><td></td><td>인수의사
여 부</td><td colspan="6">인수의사 없음</td></tr>
<tr><td rowspan="2">귀 주
예 정 지</td><td>가족과의
유대관계</td><td colspan="6">– 양모는 첫 결혼에서 남편과 사별한 후 뒤늦게 낳은 딸을 친척집에 보내고 소년의 양부와 재혼하였으나, 아이가 없자 시어머니가 돌이 지난 소년을 데려와 입적하여 현재까지 양육하였으나 모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함
– 날품 일을 하던 양부도 수년 전에 병사하면서 빈곤한 삶에 비행을 반복하는 소년에 대한 유대감은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음</td></tr>
<tr><td>본인에 대한
주민감정</td><td colspan="6">– 양모의 딸인 이복누나가 결혼하여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나 역시 인수의사 없음</td></tr>
<tr><td>출 소 후
생활계획</td><td colspan="7">– 양모는 동네에서 남의 땅 위에 콘테이너 박스에서 살림을 하던 중 현재는 숙소를 제공하는 공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등 지방에 거주, 실질적인 보호자가 없고 귀주예정지가 불분명한 상태임</td></tr>
<tr><td>사회적응
가 능 성</td><td colspan="7">– 소년이 성장하면서 그 태도가 반항적이고 비행성이 깊어 가족들이 소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에 소년을 돌봐줄 사람이 없음
– 재범가능성 있음</td></tr>
<tr><td>환경개선
필요여부</td><td colspan="7">– 퇴원 후 소년을 인수할 사회기관이나 지도위원등과의 연계가 요망됨</td></tr>
<tr><td>조 사 자
의 견</td><td colspan="7">– 가족들의 무관심, 유대감 상실로 사실상 가족들의 신뢰회복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 수용 중 심성순화 등 사회적응을 위한 정서적 교육 외에 실질적인 사회기관과의 보조연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조사자 범죄예방위원회 이름 ○○○

II. 경과통보서 작성기법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1 관련 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①항(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범죄예방 활동을 행하고 보호관찰 활동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④항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대상자 지도의 법적 의미

1) 지도 · 감독의 방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32조 제2항(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위 법률에 의거 주거지 상주, 생업종사, 불량교우 접촉금지, 지도 · 감독 순응, 주거이전시 사전 신고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제33조 제2항(지도 · 감독)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하는 바, 그 방법은

· 긴밀한 접촉을 갖고 항상 그 행동, 환경 등을 관찰하고
· 위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필요한 적절한 지시를 하며
·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출석면접, 각종 교육, 서면생활보고 지시, 범죄예방위원 위탁지도, 상담, 현장방문지도, 보고내용 확인, 관계인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실시한다.

이는 행정주체인 보호관찰관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객체인 대상자에게 행하는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범죄예방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명하는 것도 역시 지도방법의 하나이며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이에 순응할 의무를 진다.
- 대상자를 의뢰받아 지도하게 된 범죄예방위원은 公務受託私人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갖게된다.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 의해 일정한 공권력이 私人에게 부여될 때 그 私人을 公務受託私人이라고 한다) 따라서 범죄예방위원은 의뢰받은 대상자에게 위와 같은 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대상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3 대상자 지도시 유의할 사항

- 대상자 지정 초기에 반드시 부모 면담.
  위원지도의 취지 설명, 지도협조, 지도방법 고지.
- 대상자와 면담 · 지도의 규칙을 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
  면담회수, 일시, 장소지정 등 지도방법 엄격 적용.
  – 월 1회 이상 면담 지도 필요, 수시 전화접촉.
- 주거지 상주여부 수시 확인.
  가출 · 외박 금지, 심야외출 통제, 주거이전 여부 확인.
- 생업 종사 여부 확인.
  학업 · 취업여부, 학교 · 직장명, 하는 일, 월급 등 확인, 필요시 취업 알선.
- 생활상태 점검.
  잘가는 장소, 잘 어울리는 사람, 불량교우 교제여부, 귀가시간, 가족과의 관계, 기상, 취침시간 등 생활상태를 점검.
- 위원지도에 불응, 연락두절, 소재불명, 재범 등 중대한 준수사항위반 발견시 즉시 보호관찰소에 통보.
-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발견시 시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지도 · 감독.

■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요령

1 관련 규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 ⑥항
보호관찰관은 동조 제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호관찰 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의 의미

■ 대상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행정행위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1) 행정행위의 내용을 명확화, 객관화하고 적법성을 담보.
2) 보호관찰카드의 보호관찰경과 기록 유지 자료.
3) 처우변경 필요시의 근거자료.
4) 가해제 또는 제재조치시 근거자료가 되며
■ 작성된 보호관찰 경과통보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경과통보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가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된다.

3 보호관찰 경과통보서 작성요령

1) 작성요령
■ 사건번호, 보호관찰기간
– 보호관찰카드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보호관찰기간을 기재
■ 주소 : 실제 거주지를 기재
■ 전화 : 자택, 직장, 기숙사 등으로 구분 기재(휴대전화도 기재)
■ 일시 : 1개월 동안 실제 대상자와 접촉했던 일자를 모두 기재
■ 장소 : 대상자 · 보호자 · 관계인 등과 접촉, 상담했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전부 기재

■ 만난 사람

– 대상자의 지도 · 감독을 위하여 실제로 만난 사람을 기재

– 만난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 모두 기재

■ 지도 및 원호활동

– 현재의 상황, 진로지도, 교우관계 개선 등 대상자의 선도 · 교화를 위하여 지도상담한 내용과

–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지원한 내용을

– 자세하고 충실하게 기재

■ 신상 · 생활변동 상황

– 보호관찰 계속 중에 전과 다른 부분이나, 최근 특별하게 나타난 가정환경, 교우관계, 학업이나 직장관계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재

■ 재범가능성 유무

– 보호관찰 중 제반행동이나 태도를 예의 주시한 결과 향후 재범이나 재비행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수준인지를 상세히 기재

–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가해제가 필요한 경우 그 의견도 기재

■ 작성자 표시

– 소속 지구협의회 및 범죄예방위원의 성명 기재 후 반드시 날인

– 여백에 위원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및 은행명 기재

※ 기타 : 기록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 또는 별지 활용 가능

2) 작성상의 유의점

■ 년, 월, 일을 정확하게 기재

■ 문장은 내용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 대상자에 관한 각종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상세히 기록

■ 의심스럽거나 명확지 않은 사실은 지양

■ 추측이나 막연한 경험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사항을 기재

■ 위원의 확고한 의견이나 판단사항을 명백히 기재

3) 보호관찰 경과통보서의 제출

■ 제출방법

–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 또는 담당직원에게 직접 우편이나 인편 또는 FAX로 송부함이 원칙

– 지구회에서 취합하여 송부할 수도 있음(보호관찰소와 사전협의)

– 보호관찰소 주소 및 담당자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90-1 수원보호관찰소
· 담당 보호관찰관 : 담당자 :
· 연락처 : 전화 (031) 212-7766~8, FAX (031) 212-7152

■ 제출시기

– 매월 1회 반드시 제출

– 가능하면 대상자 지도 · 상담 직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제출시기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매월 1회 제출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실비사례금 지급

– 대상자별 경과통보서 접수 월 1건당 월 10,000원으로 하되 범죄예방위원 1인당 월 30,000원 초과할 수 없음

– 면접지도한 경우만 지급, 전화로만 지도한 경우는 미지급

–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내용이 부실한 경우 미지급

– 분기 1회, 위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

※ 경과통보서 여백에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및 은행명 기재요망

〈다음의 첨부한 보호관찰경과통보서 양식은 복사하여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 경과통보서 작성례 】

보 호 관 찰 경 과 통 보 서

2005년 10월 1일

<table>
<tr><td rowspan="2">대상자</td><td>사 건 번 호</td><td>03-2003-
130-00123</td><td>성 명</td><td>홍 길 동</td><td>보호관찰 기 간</td><td>2005. 2. 5 ~
2007. 2. 4</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 rowspan="5">보호관찰내용</td><td>일 시</td><td colspan="3">2005. 10. 23 16:00</td><td>장 소</td><td>대상자 자택</td></tr>
<tr><td>만난사람</td><td colspan="3">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성명 : 홍길동</td><td>방 법</td><td>(면접), 전화, 서신
기타( )</td></tr>
<tr><td rowspan="2">지 도 및 원호활동</td><td colspan="5">지도상담(○), 원호등( )</td></tr>
<tr><td colspan="5">● 여주고 2학년에 재학중이며 학업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방학중 컴퓨터학원 다니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본 위원이 학원비 5만원을 지원하고 격려함
● 공범등 불량한 친구와 계속 만나고 있어 불량교우와의 교제를 단절하고 학업과 가정생활에 충실토록 지도함
● 아직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진로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td></tr>
<tr><td rowspan="2">신상 · 생활 변 동 사 항</td><td colspan="5">이사( ), 직장이동( ), 전학등( ), 기타(○)</td></tr>
<tr><td colspan="5">핸드폰을 바꾸어 번호가 ○○○-○○○-○○○○으로 변경됨</td></tr>
<tr><td colspan="2" rowspan="2">재범가능성 유 무</td><td colspan="5">높음( ), 보통(○), 낮음( )</td></tr>
<tr><td colspan="5">● 범죄예방위원과의 정기적인 상담에는 잘 응하면서도 공범 등 불량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고 있어 아직 생활이 안정된 상태는 아님</td></tr>
</table>

범죄예방위원 : 구(시 · 군) (인)

23234-04911일
210mm×297mm
89.6.12 승인
(신문용지 54g/㎡)

보호관찰경과통보서

년 월 일

<table>
<tr><td rowspan="2">대상자</td><td>사건번호</td><td></td><td>성명</td><td></td><td>보호관찰기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전화 :</td></tr>
<tr><td rowspan="6">보호관찰내용</td><td>일시</td><td colspan="3"></td><td>장소</td><td></td></tr>
<tr><td>만난사람</td><td colspan="3">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td><td>방법</td><td>(면접), 전화, 서신
기타( )</td></tr>
<tr><td rowspan="2">지도 및 원호활동</td><td colspan="5">지도상담( ), 원호등( )</td></tr>
<tr><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신상·생활 변동사항</td><td colspan="5">이사( ), 직장이동( ), 전학등( ), 기타( )</td></tr>
<tr><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2">재범가능성 유무</td><td colspan="5">높음( ), 보통( ), 낮음( )</td></tr>
<tr><td colspan="5"></td></tr>
</table>

범죄예방위원 : 구(시·군) (인)

23234-04911일
210mm×297mm
89.6.12 승인
(신문용지 54g/㎡)

Ⅲ. 사회봉사명령집행 현장감독

1 현장감독의 의의 및 목적

사회봉사명령집행 방법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대상자를 인솔하여 집행하는 직접집행과 협력기관의 조력을 받아 집행하는 협력집행 있는데 보호관찰소 직원이 직접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장감독이 대한 문제가 없으나 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위해서는 적절한 현장감독이 필수라고 할 것인 바, 보호관찰관은 현장감독을 통해 협력집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불법집행과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회봉사명령집행 본래의 목적 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반성을 통해 심성순화를 도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장감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감독 절차

- ■ 배치계획 수립
- ■ 사전교육(2시간)
- ■ 협력기관 배치
- ■ 사회봉사명령 집행상황표 작성
- ■ 협력기관 방문
  - – 봉사현장에 나가 사회봉사명령자 및 협력기관 감독자 면담.
  - – 집행상황통보서의 비고란에 현장감독사실을 확인한 시간의 정확한 기재와 서명.

3 현장감독 내용

- – 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 봉사내용의 적정성 · 안전사고의 가능성 여부 확인.
- – 협력기관 감독자의 선임여부 및 유고시 대체 감독자 지정부 확인.
- – 협력기관 감독자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현장 및 내용파악 여부.

–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시 애로사항과 문제점 파악.

4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

– 사회봉사명령 이행시간으로 인정(2시간).
–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자원봉사와 차이점 설명.
– 대상자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고지(사회봉사자 이행수칙).
–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개시교육 이행 후 각 협력기관에 배치.

5 집행현장 감독시 유의사항

■ 부정행위 관련
– 금품, 향응을 제공하여 편의를 봐주는 행위.
– 봉사집행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자를 허위로 인정하는 행위.
– 선, 후배 등 평소 친분을 이유로 적당히 봐주는 행위.
– 실제 봉사에 종사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
– 형제, 친구 등이 대리로 출석하는 행위.
■ 봉사내용 관련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봉사집행기간 중 음주, 사행성놀이, 낮잠 등 문란한 행위.
– 도급제 등 작업량을 기준으로 시간을 인정하는 행위.
–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작업내용.
■ 안전사고를 발생 가능성 확인

6 감독시 조치사항

■ 대상자
– 불성실한 대상자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 촉구하고, 불성실한 대상자를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타 대상자와의 관계 및 협력기관의 집행질서 유지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 재배치.

– 계속적인 명령집행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조치 강구.

■ 협력기관

– 봉사내용이 사회봉사명령 취지에 부적절하거나 부실 집행시 즉시 시정을 촉구.

7 협력기관 평가

현장감독으로 파악된 사항을 검토, 협력기관의 관리 · 감독, 봉사내용 및 안정성, 기여도 등을 반영한 평가표 작성하여 협력기관에서의 사회봉사명령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즉,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협력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 개선해야 할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바람직한 협력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갱생보호 실무

Ⅰ. 갱생보호의 절차

현행 갱생보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갱생보호를 받은 대상자 또는 관계기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법 제66조 1항).

■ 따라서 출소자는 언제든지 보호관찰소, 갱생보호공단 또는 사업자에게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주로 교도소나 소년원 등이 될 것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도 포함된다.

2 갱생보호 담당기관의 보호결정이 있어야 한다(동조 제2항).

■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공단 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 시행규칙 제51조 4항).

3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갱생보호가 실시되고 갱생보호의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기간과 종료사유가 다르다.

■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급 등은 일회성 서비스이므로 실시 즉시 종료되며, 숙식제공은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41조 2항).

II. 갱생보호의 방법

1 숙식제공

■ 귀주지가 없고 보호를 받을 만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연고자가 없는 출소자 또는 귀주지가 있어도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출소자에 대하여 공단 또는 민간법인의 생활관 등 갱생보호시설에서 숙소와 음식물, 의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여비지급

■ 가족 또는 연고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출소자 중 귀주지 등 목적지까지 갈 여비가 없거나 의복이 마땅치 않은 자에게 여비나 숙식비, 의복 등을 지급하여 출소자의 귀주를 돕는 활동이다.

3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갱생보호대상이 되는 출소자에게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직업훈련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받도록 하는 활동이며, 취업알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받은 출소자에게 적절한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출소자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신원을 보증하거나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활동이다.

5 기타의 자립지원

■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알선, 사회복지시설 또는 병원 · 요양시설 등에의 입원주선, 주민등록 · 호적취적, 결혼 · 입양 · 결연 주선 등 출소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포함한다.

6 갱생보호에 부수하는 선행지도

■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각종의 갱생보호활동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면서 탕진하지 말도록 지도하거나, 지급 후 금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면서 어렵게 구한 직장이니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근무하라는 내용의 정신교육을 하는 것 등이 좋은 예이다.

Ⅲ. 선행지도

1 선행지도의 의의

선행지도는 통신 · 면접 또는 방문에 의하여 선행을 지도 · 장려하고 가정 · 주거 및 교유환경을 조정 · 개선하는 활동.

2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등

■ 선행지도 개시결정을 한 경우 갱생보호공단지부장은 당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에 소속된 범죄예방위원으로 선행지도를 담당할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과 함께 갱생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범죄, 전과 및 출소상황 등 선행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범죄예방위언에게 통지함.

■ 갱생보호 대상자에게는 선행지도를 담당하게될 범죄예방위원의 연락처를 통보하여 상담하도록 함.

3 선행지도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의 임무

■ 범죄예방위원은 선행지도기간 중 면접 · 통신 · 방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갱생보호대상자의 선행을 지도 · 장려하고 가정 · 주거 · 교우 등 환경을 조정 ·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약서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하여야 함.

■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고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것.

■ 선행을 유지할 것.

■ 죄를 범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소행이 불량한 자와 교제를 하지 아니할 것.

■ 범죄예방위원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생업조성금품을 적절하게 관리 또는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기술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취업처에서 중도이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도하고, 기타 자립지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4 선행지도 경과보고 등

■ 범죄예방위원은 매월 1회 선행지도 경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작성예시참조)를 갱생보호공단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범죄예방위원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그 지부의 관할 외에 거주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장은 대상자의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부장에게 그 선행지도를 이관하여야 함.

■ 범죄예방위원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일시 그 지부의 관할 외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며, 지부장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부장에게 선행지도를 위탁하고 보호상황을 통보하게 할 수 있음.

■ 범죄예방위원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동일한 지부의 관할 구역 안에 다른 보호구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단은 생업조성금품 지급 후에는 적절한 관리여부를 감독하도록 범죄예방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은 선행지도 경과보고서에 감독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선행지도경과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5 선행지도의 종료

■ 선행지도기간이 경과한 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사망한 때
■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선행지도의 목적을 달성한 때
■ 갱생보호 대상자가 재범하여 교도소에 재수용 되는 등 사유로 선행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때
■ 선행지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거나 재범하여 교도소에 재수용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은 선행지도경과보고서를 작성 지부장에게 보호의 종료를 신청하여야 하며 지부장은 지체 없이 그 가부를 결정하여 범죄예방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Ⅳ. 갱생보호사업과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갱생보호사업은 출소자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그들을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이를 통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출소자 보호사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사정책적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국가적 시책인 것이다.

출소자 보호를 위한 갱생보호분야의 민간봉사자로서는 해방 이전에 조직되었던 사법보호위원과 통합 이전의 갱생보호위원제도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는 민간자원봉사자로서 출소자와 재범 방지에 크게 공헌해 왔으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의 통합 이후에는 취업알선 및 재정지원분과위원으로서 그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하고 있는데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출소자 사전면담

■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출소 1개월 전 교도소를 방문, 면담을 통하여 재범유발요인을 사전파악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출소자 사전면담에 참여.

2 출소자 취업알선

■ 출소자 중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처를 알선, 이 경우 기업체를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은 출소자를 직접 자신의 회사에 취업시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음.

3 숙식제공대상자 위문격려

■ 갱생보호공단 각지부의 생활관에서 숙식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방문하여 음식과 다과를 베풀면서 위로 · 격려하거나, 위문금품을 전달.

4 불우출소자 생계보조비등 지원

■ 출소자와 결연을 맺고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몸이 불편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직업훈련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마련해 주는 등 출소자 보호활동에 참여.

5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안 기금 출연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과 독지가의 후원금이 IMF 여파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단에 보호신청을 한 갱생보호 대상자는 크게 늘어나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갱생보호사업활성화를 위한 갱생보호기금 출연.

6 기타 지원

■ 그 외에도 출소자에 대하여 합동결혼식 주선, 호적이 없는 자에 대한 호적취적 주선, 취업 시 신원보증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신원보증, 무의무탁자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하며,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같은 범죄의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선행지도 경과보고서 작성요령

① 카드번호 : 선행지도 개시통지서에 명시될 카드번호 기재

② 보호기간 : 통지서에 기재된 보호개시일로부터 1년

③ 성 명 : 선행지도 대상자 한글성명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선행지도개시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거나 미기재되었을 경우 파악 기재

⑤ 주 소 : 현주소 및 가족 등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기재

⑥ 전 화 : 자택, 직장, 기숙사, 셋방 등 구분 기재
(핸드폰, 호출기 등 개인휴대통신 함께 기재)

⑦ 연락사항 : 선행지도 대상자와 연락방법 기재

⑧ 지원한 사항기재 : 공단의 지원사항(생업조성금품, 직업훈련직종) 및 범죄예방위원의 지원사항 기재

⑨ 생활 및 환경의 변화 : 대상자의 심성변화나 가정환경 교유관계, 직업관계 등의 변화내용기재

⑩ 취업사항 : 취업처, 취업직종, 근무시간, 임금등 기재지원한 내용의 활용여부

⑪ 지도사항 : 생업조성금품의 활용여부나 직업훈련교육의 성실이행 여부 및 지도격려사항 기재

⑫ 담당자의 의견 : 대상자의 재범위험가능성이나 선행지도 계속여부 및 공단에 대상자의 생업조성금품이나 직업훈련 추천사항 기재

⑬ 담당자 :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소속협의회 및 성명기재

⑭, ⑮, ⑯은 공단의 지부에서 기재할 사항임.

■ 작성예시

선행지도경과 보고서

주임	계장	과장	지부장

(200 . ○월분)

카 드 번 호	05-○○○	보 호 기 간	2005. 10. 26 ~ 2006. 7. 25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320324-1824321
주 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543번지	전 화 ○○○-○○○○(거주지) HP ○○○-○○○-○○○○	
연락사항 (방문, 면접, 통신)	방문	지원한 사항	생업조성금품 : 목공도구지원 담당위원 쌀 40kg 지원
생활 및 환경 등 의 변 화	취업처 근처에서 셋방을 얻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취업처 동료들과 관계는 원만함		
취업사항	삼성토건에 목공으로 취업		
지원한 내용의 활동여부 및 지 도 사 항	지원한 목공도구는 건설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담당위원의 양곡 지원에 감사함.		
담당자의 의견	취업처에서 열심히 생업종사하고 있으며 가족과는 떨어져 있으나 직장 동료들과 화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계속지도 하겠음.		
담 당 자	○ ○ 협의회 범죄예방 위원 ○ ○ ○ (인)		
지부의 조치			

보호 심사회	가	부	지부장의 결정	

〈별지 제 1호 서식〉

선행지도경과 보고서

	주임	계장	과장	지부장
(200 . ○월분)				

카 드 번 호		보 호 기 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연락사항 (방문, 면접, 통신)		지원한 사항	
생활 및 환경 등 의 변 화			
취업사항			
지원한 내용의 활동여부 및 지 도 사 항			
담당자의 의견			
담 당 자	○ ○ 협의회 위원 (인)		
지부의 조치			

보호 심사회	가	부	지부장의 결정	

제 5 장

상황별 범죄예방 지도

제 1 절 문제성별 지도기법

Ⅰ. 강한 열등감 소유 대상자

인간이란 누구라도 우수한 점이 있는가 하면 열등한 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우열상황이 모여 그 사람의 개성을 형성한다 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우수한 점을 살려가면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된다.

열등감의 원인인 열등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편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열등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행이나 범죄행동으로 연계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강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은 결점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수용하도록 지도하여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가 갖고 있는 특유한 흥미나 빼어난 소질 등을 발굴, 신장시켜 나가도록 잘 지도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로서 그와 같은 존재 자체에 가치를 부여, 선하고나 혹은 악한 자기 현실을 인정하는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무기력한 대상자는 특히 수용적인 면접을 통하여 자기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생활전반에 걸친 의욕을 신장시켜 주도록 하여야 한다.

유별나게 무기력하여 본드를 흡입하거나 본드흡입을 중단하지 않는 등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어느 정도 강제적인 환경 하에서 각종 과제를 부여, 실천토록 하여야 하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달성감이나 충실감을 느껴보도록 함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폭주족에 가입하고 있는 소년의 경우처럼 비교적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대상자는 그 남아도는 정력을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시킴도 좋다 하겠다.

성범죄자의 경우는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자기표현을 제

대로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자세로 접할 수 없다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며 결국 상호관의 신뢰 형성도 어렵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여성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남성성 열등감 형성에도 관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상자의 지도는 대인관계 개선에 기본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종류의 대상자에게는 지도자는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심적 긴장감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인 대인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의 수용경험을 이유로 강한 열등감을 갖게 된 대상자에 대하여 논해 보면 그들은 "다시 태어나 새출발한다"라는 각오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용 자체가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를 면책시키는 것이 아닌고로 과거를 진실로 반성케 하면서 속죄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석방 후의 생활에 의욕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을 조정하여 그러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태세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협력고용주 등을 물색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대상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것은 곧 갱생보호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II. 변명에 능숙한 대상자

대상자가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만 돌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 한 구석에 막연하게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가느다란 양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양심의 눈을 지도자는 예리하게 판단하여 표출시킴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도록 유도하여 대상자 자신의 심적 움직임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또한 책임전가 심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으며 책임을 인정치 않으려는 심리도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는 태도가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수긍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그의 노력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함은 심리적인 저항감을 받게 되어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바

가능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반복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일방만이 책임이 있고 상대방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의 경우 양방 모두에게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가 많은고로 대상자에게만 책임을 요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책임도 동시에 인정해 주는 균형있는 감각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과대하게 전가시키게 되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게 될 경우 성공적이라 하겠다.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면으로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를 회피하려 해서는 문제와 직면하여 해결하기 힘들다.

변명에 능란한 대부분의 대상자는 자신의 문제를 바로보거나 자신의 실상관찰을 매우 두려워 하는고로 지금까지 가능한한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으려 하여 왔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문제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 원활한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싫더라도 자신을 정면으로 대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자신을 정면으로 되돌아 보도록 지원하는 것이 변명에 능란한 대상자 지도의 기본이다.

대상자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여야 좋을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바 때때로 지도자는 대상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줌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대상자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대상자가 만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게만 된다면 자신을 변신시켜 주변사람들에게 수용되도록 자연스럽게 노력하게 한다. 자신이 변신코자 노력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인지하게 되면 그들은 그의 노력을 격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상자의 변신에 플러스적 순환이 이루어진다 하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 환경 즉 가족이나 친지 등 관계인들의 저극적인 원조 및 이해가 필수사항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건성으로 들어 넘기지 말고 잘 들어 주어야 하며 대상자와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함은 심리적인 저항감 때문에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겠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해함과 동시에 지도하는 측에서도 간단하게 체념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끈기있게 지도함이 중요하다.

Ⅲ. 거짓말 능숙한 대상자

거짓말 잘하는 대상자를 지도함에 있어서는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임이 분명할지라도 먼저 그러한 거짓말과 대상자를 수용하면서 지도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간단한 약속(구체적으로 알기 쉬운)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만약 조금이라도 이행한 흔적이 보이면 칭찬이나 격려를 수시로 하여야 효과적이다. 어느정도 대상자와의 인간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대화를 통하여 사실을 직시하면서 솔직하게 대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감각을 갖도록 하거나 대상자가 "거짓 없이도 살아갈 수 있구나"식으로 재활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보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스트레스 발산 방법이나 자신의 장점에 관하여 스스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여야 한다.

Ⅳ. 갈등부모를 둔 대상자

갈등부모를 둔 대상자를 상담할 시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부모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말고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대응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부모의 잘못을 질책함 없이 그들 부모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작은 변화라도 얻을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는 지도자로써의 자세유지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부모들의 갈등에 대상자가 끼어든 것처럼 이번에는 지도자가 끼어들어 중립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가족 중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라는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부모들의 갈등이 심각하여 "조정이 불가능하며 대상자의 갱생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부모역할이 가미된 기숙사, 취업처 숙소 등에서의 생활과 같은 조치로 대상자를 가정에서부터 격리시키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의 자발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가정상황으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지도, 이른바 "강력한 자립"은 대상자가 생활기능이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경험으로 볼 때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난폭한 대상자

포악한 행위가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상자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충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기록을 상세히 읽어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대상자나 관계자들로부터 포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거짓없는 진실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로부터 신뢰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상자를 특별하게 취급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대하면서 그의 심정을 수시 관찰하여 대응하는 등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 본인도 왜 자신이 그와 같은 포악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때에는 그의 포악한 행위 자체를 화제로 전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상자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정리하여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를 통찰할 수 있게 된다.

제 2 절 비행 및 범죄유형별 지도기법

Ⅰ. 각성제사범 대상자

각성제는 강한 정신적 의존성이 있으며 남용하게 된 원인이나 배경도 복잡하고 유감스럽게도 재범률이 높아 각성제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특정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여 죄악감이 부족한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다.

또한 본인 자신은 남용을 끝내고자 하여도 판매책 등이 다시 접근하거나 불량공범들과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재범위험에 처하게 된다.

본인이 각성제 남용을 단절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갖고 구체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지도의 중점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의 생활이나 자신의 행동방식을 크게 반성하여야 하며 각성제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냉정하게 개선시켜 생활방식을 전환시킴이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서 약해나 법규제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 각성제 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꼭 반성해 보도록 하여야겠다.

대상자에 대한 지도와 병행(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하여 가족 등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활동도 효과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보호관찰상 보도원호의 일환으로 처우할 경우는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감정, 사고방식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실시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배려에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과의 신뢰관계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본인의 성격이나 심정,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여러 요소들을 참작, 각성제의 단절이 본인에게 득이 되며 재범이나 재비행이 어째서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각성제사범 대상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밖에 각성제의 밀수, 밀매에 관계된 자나 각

성제의 약리작용이 원인이 되어 다른 범죄를 일으킨 자도 소수이나마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범죄의 배경이나 원인을 상세하게 규명, 적절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II. 절도사범 대상자

절도범죄만을 자행하는 대상자는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가 드물고 어른스럽지만 표정이나 태도에 생명감이 부족한 자에게 많다. 그러므로 절도의 원인을 의지박약이라는 인격적 측면으로 판단해 버려 그 처우에 있어서도 "강한 의지를 갖도록 하라"든가 "절도는 나쁜 행동인 바 하지 말아라" 등의 표면적인 지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대상자의 규범의식을 고양시켜 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표면적 지도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겠다.

예를 들면 알콜중독 대상자가 술을 훔쳤다면 절도 자체에 대한 지도도 필요하지만 덧붙여 알콜중독증세 치료도 중요한 지도과제가 된다 하겠다.

또한 도박에 빠져 있는 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돈을 훔치게 되었다면 생업중심의 생활에 충실토록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도록 하는 생활자세를 바로 세워주는 과제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절도사범에 대한 지도는 절도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절도행위의 배경에는 자신이 품고 있는 불평, 불만 등을 절도라는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무의식적 욕구가 절도라는 행동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절도라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순히 소유욕 때문에 범행하게 되었다고만 단정하지 말고 절도라는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표현코자 하는지를 알아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지도자는 절도를 '의지박약' 이나 '습성' 등 단순한 원인으로 편파적인 단정을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절도행위가 대상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에 착안, 대상자가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배후에 있는 문제점을 의식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필요하다.

Ⅲ. 학교폭력 대상자

1 가정 · 학교 · 지역주민의 이해와 연계

학교폭력 또는 교내폭력이란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써 그 종류는

첫째, 교사에 대한 폭력

둘째, 학생들간의 폭력

셋째, 기물손괴 등 대체로 3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의 교사에 대한 폭력이란 교사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가리키는 것이며 둘째 번의 학생간 폭력이란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며 기물손괴란 학교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한 각각의 폭력행위 양태는 개인이 행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에는 그 종류나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의 케이스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교사폭력의 경우와 집단적으로 일으키는 학생 간의 폭력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각, 학교측의 인식 등 문제의 성질도 크게 다르며 본인이나 학교 등에 대한 대응방법도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많은 경우 사건을 일으켰던 학교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측에 대항 활동도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위에 본인과 학교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항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학교가 상호간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취함이 본인의 갱생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가족 및 학교의 이해와 협력이 없어서는 아니되는고로 그러한 여건조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표면적인 여건조성에 그치지 말고 '원인에 대한 연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 강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학교와의 상호적인 신뢰를 촉진하여 적절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그로 인하여 대상자의 갱생촉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2 본인의 심정파악과 협력

한마디로 학교측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본인의 심정, 예를 들면 '학교가 나쁘다' 라든가 '교사가 나쁘다' 라는 것만으로 종결해 버리려 하지 말고 어찌해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변했는지 본인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심감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강대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본인과 가족들의 상호 불신감이 심각해져 심정파악이나 가족들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만다.

본인과 가족이 품고 있는 학교 및 교사에 대한 감정조정이란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불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며 분명히 불신감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음은 틀림없다. 불신감이 생기게 된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연을 본인 또는 가족들이 자각함으로써 비로소 조정업무가 확실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연을 본인 혹은 가족들만이라도 납득시키는 자기만족적 단계, 즉 꽉 닫혔던 문으로부터 제3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객관적인 단계 말하자면 마음을 활짝 개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학교나 교사에 대한 감정으로 가득 찼던 상태로부터 제3자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해소되는 개방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제3자와 공유하게 되면서 자각심이 생겨 종래의 감정을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3 학교 외의 교우관계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는 학교 내에서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졸업한 선배나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관계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의 배경에는 지역불량집단이나 폭주족들과의 관계가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상자, 가족, 학교 등 3자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본인을 에워싸고 있는 교우관계에도 예의주시하는 등 본인의 생활전반에 걸쳐 파악해 둠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측에서도 학교 외의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바 이러한 면에서 상호간의 정보교환도 잊어서는 안 된다.

Ⅳ. 성범죄사범 대상자

특정한 사람이 만족하는 성적흥미, 관심에 기초한 행위로는 예를 들면 '성매매'나 '에로잡지', '에로비디오' 등도 있는데 모두가 성범죄범주에 드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매도하는 경향은 성을 인간관계로부터 더욱 격리시키면서 단지 쾌락추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성범죄의 근본적인 저변에는 이러한 사회적 왜곡이 있음을 부인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 풍조는 지도자측의 가치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범죄에 관한 '성욕과잉설'도 그 하나로서 이러한 설에 의하면 성범죄란 성충동이 신체물리적인 면에서 강대한 자가 일으키는 범죄로서 지도방법은 성욕을 어떻게 적절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의 문제라 하겠다. 옛날에는 성범죄자를 거세한 나라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성을 도외시한다 함은 대상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전체상을 결하게 된다 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성범죄자 변태설'로 나타난다. 속옷절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소년을 성도착이라고 판단하면 간단하겠지만 소년이 정신발달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적일탈행동이 소년의 마음과 생활전체 속에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춘기는 소년이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며 그러한 한 측면으로 성적역할(남성성)을 익히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때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가족들과의 안정된 인간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심적 충동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될 경우 어른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높아지게 되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성적 일탈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성인의 경우도 성범죄를 일으킨 배경에는 본인이 배워 온 고유의 인간관계 방식, 공격성, 성적 역할에 대한 인식(여성관) 등에 따라 비로소 분명해진다. 성범죄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범죄자들 이상으로 대상자가 갖고 있는 대인관계의 특성이나 가치관, 행동경향을 주시하여 적절한 지도와 원조를 실시해야 한다.

V. 폭력조직 가담 대상자

1 실태파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대상자가 조직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에서의 지위가 낮거나 가입일이 미천할수록 이탈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관할 사법기관에 조회하여 얻는 정보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정보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상황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역내의 범죄예방관련 종사자들과의 정보교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폭력조직은 더욱 교묘하게 그리고 위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내에서의 실태파악은 지역으로부터 얻는 정보나 대상자 가족들과의 연락 중 얻을 수 있는 정보 등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2 이탈시키는 방안

이탈을 위한 활동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처음부터 범죄조직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이탈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지도를 끈기있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는 처음에 자신이 속하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찬사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접촉을 거듭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무슨 매력이 있어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나 동기를 서서히 토로하도록 지도하면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급히 서둘지 말고 서서히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도록 기회를 포착함이 중요하다.

또한 현재의 생활이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사회내에서의 폭력조직에 대한 입장 등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화제가 점진적으로 진전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여 경청하노라면 본인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생활이나 조직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하여 스스로 자각할 기회를 찾게 된다. 이때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자기현시적인 태도를 표출시키게 되며 강렬한 프라이드를 표출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어찌되었건 폭력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끈

기있게 노력함이 중요하다.

한편 실제로 폭력조직으로부터 이탈을 결행했을 때에는 사법당국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필요 또는 형이나 선배 등의 중개자도 필요하게 된다.

그 외 본인의 결혼이나 가족의 발병 등도 이탈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야말로 지도감독상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상자가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이 성사되면 취업지도나 가족들과의 관계재조정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어렵게 이탈을 했다 하여도 곧바로 생활에 임하지 못하면서 자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든가 예전의 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향도 적지않게 관찰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고용주의 조정이나 거주지 이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실천토록 함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각성제사범이 상당수 폭력조직에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표면적인 하위이탈을 했거나 준수사항 위반을 다반사로 반복할 경우 등에는 담당 관계기관의 연대하에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Ⅵ. 누범 대상자

누범자란 그 양상이 다양하며 문제성도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그 지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어떠한 유형의 누범자인가 동시에 왜 수회의 범죄를 반복하게 되었는지를 생활력, 성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범죄행위를 상습화시킨 요인으로서 그들의 자질, 생활태도면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지능, 교육 정도가 낮고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알콜 의존, 약물 의존, 신체상의 질환, 장해가 있는 경우에 많다.

셋째, 주위의 환경에 좌우되기 쉬운 의지박약자다.

넷째, 자기중심적으로서 자신을 실제 이상으로 으스대는 현시욕구, 허영심이 강대하고 기만적인 행동이 많다.

다섯째, 대인관계가 좋지 않으며 사회성, 협조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참을성, 지속성이 없고 근로의욕이 부족한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한편 범죄환경을 촉진하게 되는 환경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인격형성기에 환경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폭력단 관련자들과 같은 범죄를 용인하는 환경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 보호환경이 열악하여 주거, 가정, 경제상태가 원만치 못하다.

넷째, 전과로 인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선택의 객관적인 규약이 따르기 때문에 취업이 곤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누범의 악순환 결과 자신을 전과자 또는 범죄자라는 사실을 강대하게 의식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좋지 아니한 상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위협적 태도를 표출, 환경을 왜곡적으로 받아들이는 누범자 특유의 심리기제가 발동되어 재범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 행동 경향이 인정되는데 누범자의 특성을 생각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누범자는 거의 예외없이 중대한 인격적 혹은 환경적 범죄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복귀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지도상 가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재범에 연루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결과를 초래시키고 있는지를 스스로 통찰케 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도함이 요청되며 다음과 같은 유의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범죄를 자제하는 힘을 육성시킨다.

많은 누범자들은 죄의식이나 규범의식이 희박하여 준수사항을 잘 지키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갱생을 위한 행동규범, 생활지침으로서의 준수사항의 의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을 내면화시킴이 필요하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대상자의 심정을 심도있게 통찰하는 한편 얄팍한 변명이나 합리적 태도에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접촉해야 하며 대상자 스스로가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불행에 빠지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욱 불행 속으로 침몰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규제력, 자제력을 함양시키는 지도가 바람직하다.

둘째, 환경을 조절해야 한다.

누범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신임을 상실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경 변화가 대상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제성

에 대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귀주지가 없는 대상자는 갱생보호위의 보호를 의뢰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심하게 거부적일 경우에는 그 요인에 알맞은 조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가족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원조하여야 하며 비록 함께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 연고자 혹은 친구로서 대상자의 개선 갱생을 도와주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착감을 유도, 그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적응능력을 배양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한 그 지역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민이나 불만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 패배감을 갖지 않게 참을성을 갖도록 촉진함이 중요한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환경으로 이주시킴도 생각해 봄직하다.

셋째, 직업지도에 주력한다.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 중의 하나가 취업이라 말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나태한 생활태도가 일상화되었거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누범자로서는 이러한 취업문제는 매우 절실한 문제라 말할 수 있다. 직업상의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초로서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직업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필연적으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어 결국은 재범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하겠다.

따라서 대상자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대상자의 실태파악에 노력하고 근로의욕이나 근로습관을 조장하여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도록 도모하는 폭넓은 지도가 필요하다. 적당한 취업처가 없을 때에는 이해심 많은 협력고용주 등을 활용한 원조의 손길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자원을 활용한다.

사회적, 신체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는 대상자, 그 중에서도 날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고령대상자 등의 지도감독은 무엇보다도 생활부조가 가장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 주거, 직업, 질병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갱생보호회, 직업사무소, 복지사무소, 병원 등과 같은 기관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 필요한 사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조는 대상자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주성과 주체성을 손상당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때로는 재범우려 해소 등 긴급성 해결을 위한 보호관찰관과의 연계를 이용하여 시의적절한

원조가 행해지도록 조치함이 중요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누범자에 대한 지도의 본질은 개별처우는 물론 그들이 어떻게 사회내에 있는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즉 어느 의미에서는 복지적 과제로 취급하여 고용대책, 사회복지, 의료 등과의 폭넓은 사회정책과 협동하는 종합대책이라 하겠다.

갱생을 위한 전기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 마디로 말할 수 없겠으나 필요한 지도 및 충실하고도 적극적인 원조가 곧 대상자의 안정적이고도 성실한 생활의 동기가 되어 갱생의욕을 불러오게 되며 그러한 의욕이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자주성 촉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바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다.

자칫 잘못하면 누범자의 지도는 그 어려움 때문에 개선,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도 못한 채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대상자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범죄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언제인가는 범죄로부터 손을 씻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 생애를 통하여 범죄를 계속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는 과감하게 불식시킴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범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범죄인생' 이 심화되기 전단계로서 그 싹을 찾아 잘라버리는 지도대책 강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제 6 장

형사법의 이해



제1절 형 법

Ⅰ. 형법의 기초이론

1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중요성

■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며,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이다.

(2) 형법의 의의

■ 실질적 형법(광의의 형법)과 형식적 형법(협의의 형법, 형법전)의 구별

■ 형법전은 실질적 형법의 중심이고, 총칙의 일반원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 형법의 모두에 적용된다.

(3)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 공법이다.

■ 사법법(司法法)이다.

■ 실체법(實體法)이다.

■ 윤리적 요소, 정치적 요소가 강한 법률이다.

(4)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설적 규범(假說的 規範)이다.

■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이다.

■ 의사결정규범인 동시에 평가규범이다.

(5) 형법의 기능

■ **규율적 기능** – 국민의 의사결정 및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말하며, 사회의 질서유지적 기능 내지 사회방위적 기능을 말한다.

■ **보호적 기능** –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보장적 기능** –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기능을 말한다. 보장적 기능을 일컬어 '국민'과 '범죄인'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2 죄형법정주의

(1) 의 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어떠한 형벌이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인가를 미리(행위 시 이전에) 정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사상적 배경

■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

■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

(3) 내 용

■ 법률주의(성문법주의,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 형법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소급처벌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유추적용금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의 균형유지

(4) 역할과 과제

■ 다원적인 가치관이나 정치사상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국민 및 범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철칙으로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 원칙(행위시법주의)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1항)."

■ 예외 –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형법 제1조 2항)."– 재판시법주의
나.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3항)."– 형집행시법주의

(2)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3) 인적 적용범위

■ 국내법상의 특례 – 대통령(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국회의원(면책특권, 헌법 제45조)

■ 국제법상의 특례 – 외국의 원수 · 외교관 및 그 가족 · 내국인이 아닌 종자, 외국의 군대(대한민국에서의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4 형법에 있어서의 학파의 대립

(1) 고전학파(구파)

■ 성립시기 –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초기 자본주의의 발달)

■ 시대사상적 배경 –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등

■ 인간상 – 인간을 자유의사가 있는 이성적 주체(계산적 인간)로 보았다 – 자유의사론(의사비결정론)

■ 범죄론 – 행위주의, 객관주의

■ 책임론 – 책임의 기초를 '의사책임'으로 파악하고 '도의적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 형벌론 – 가. 본질 – 응보형론(절대주의)

나. 목적 – 일반예방주의(상대주의) – 형벌의 위하력

■ 보안처분론 – 이원론(보안처분은 본질상 형벌과 다름)

(2) 근대학파(신파)

■ 성립시기 – 19세기 후반 이후

■ 시대사상적 배경 –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범죄의 현저한 증가, 실증주의

■ 인간상 – 인간을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지배되는 숙명적인 구체적 인간으로 파악하였다 – 의사결정론(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간)

■ 범죄론 – 행위자주의(반사회적 성격), 주관주의(범죄징표성)

■ 책임론 – 책임의 기초를 '성격책임'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 형벌론 – 가. 본질 – 목적형론(상대주의)

나. 목적 – 특별예방주의(상대주의)

■ 보안처분론 – 일원론(보안처분은 본질상 형벌과 같음)

II. 범 죄 론

1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의의

■ 실질적 의의 –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반사회적 행위, 반인륜적 행위, 반도덕적 행위 등) – '형사정책적 의의'

■ 형식적 의의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 '형법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 권리침해설

■ 법익침해설

■ 의무침해설

■ 법익침해 및 의무침해설(통설)

(3) 범죄의 구별

■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요건에 따른 구분** – 실질범(결과범, 살인죄, 강도죄 등)과 형식범(거동범, 주거침입죄 · 무고죄 등)

* 구분실익 : 거동범은 구성요건이 예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수가 되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여지가 없다.

■ **보호법익의 침해정도에 따른 구분** – 침해범(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범죄)과 위험범(위태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충족되는 범죄)

가. **구체적 위험범** –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범죄(예 :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형법 제166조 2항)

나. **추상적 위험범** – 일반적(추상적) 위험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예 :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법 제164조)

* 구분실익 : 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위험에 대한 고의가 필요치 아니한다.

■ **범죄행위의 시간적 계속성에 따른 구분**

가. **즉시범** –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는 범죄(살인죄, 폭행죄 등)

나. **계속범** – 침해사실이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법익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사실은 계속되고 종료되지 않는 범죄(체포 감금죄 등)

다. **상태범** – 법익침해상태가 범죄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범죄(절도죄 등)

* 구분실익 :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있어서 계속범의 경우는 기수에 이르렀어도 범죄가 종료할 때까지는 시효가 개시되지 않으며, 공범성립에 있어서도 계속범에서는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 범위에 따른 구분** – 일반범(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과 신분범(행위주체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범죄,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 **기 타** –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4) 범죄의 성립요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 **범죄의 성립요건** – 형법적 의미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및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실체재판에 의한 무죄판결

■ **범죄의 처벌조건** –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 형벌권의 발생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객관적 처벌조건=사전수뢰죄, 인적 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등의 신분). * 실체재판에 의한 '형의 면제판결'

■ **범죄의 소추조건(공소제기의 유효조건)** –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형식재판에 의한 공소기각

2 구성요건론

(1) 구성요건 · 범죄구성사실 · 구성요건해당성

■ **(법적)구성요건** – 형벌을 과하는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예 : 형법 제250조 1항의 '사람을 살해한'). – * 大前提

■ **범죄구성사실** –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사실를 말한다(예 : 甲이 모월 모일 어디에서 乙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사실). – * 小前提

■ **구성요건해당성** – 어떤 행위(범죄구성사실)가 (법적)구성요건의 범죄정형적인 기술에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 구성요건해당성은 '대전제'로서의 법적 구성요건에 '소전제'로서 범죄구성사실을 해당시킴으로써 진행되는 논리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성요건의 요소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행위의 外的 發生形態를 결정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態樣,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결과범)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행위자의 관념세계에 속하는 심리적 · 정신적 구성요건 상황을 말한다. 고의, 과실,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경향범에 있어서의 내적 경향, 불법영득의 의사(절도죄 · 횡령죄), 불법이득의 의사(사기죄)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가. **작위** – 적극적인 신체적 거동을 행하는 것(금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작위** – 적극적인 신체적 거동(작위)을 행하지 않는 것(명령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작위범과 부작위범

가. **작위범** – 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금지규범에 위반하는 범죄)를 말한다. 부작위의무(적극적인 신체적 거동을 행해서는 안 될 의무)에 위반하는 범죄를 말한다.

나. **부작위범** –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범죄(명령규범에 위반하는 범죄)를 말한다. 작위의무(적극적인 신체적 거동을 행하여야 할 의무, 즉 법령 · 계약 · 조리 · 선행행위 등)에 위반하는 범죄를 말한다.

*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 등),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어머니가 幼兒에게 젖을 주지 아니하여 餓死시킨 경우).

(4) 인과관계

■ **의 의** – 결과범 · 침해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가 기수에 이르게 되는데, 원인(행위)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 학 설

가. **조건설**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조건관계(그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 인과관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나. **상당인과관계** –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비추어 일정한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相當'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형법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대법원판례).

(5) 고의와 과실

■ **고 의** –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가. **확정적 고의** –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확실히 예견한 경우를 말한다(예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소사(燒死)할 것을 확실히 예견한 때에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 **미필적 고의** –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승인 또는 내적으로 용인하거나 양해한 경우를 말한다(용인설, 대법원판례).

■ **과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가. **인식 있는 과실** – 구성요건을 실현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나 부주의로 인하여(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 경우를 말한다.

나. **인식 없는 과실** – 행위자가 부주의로 인하여(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6) 사실의 착오

■ **의 의** – 행위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인식)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구성요건적 결과)이 어긋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극적 착오**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환각범, 불능범 등).

나. **소극적 착오** –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말한다(사실의 착오에 말하는 착오는 이 경우를 말한다).

■ **종 류**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착오가 동일 구성요건의 범위 내에 있는가 아닌가에 의한 구별)

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구성요건상 동가치인 경우, 예컨대 전방에 있는 사람이 甲이라고 생각하고 射殺하였는데 피해자는 乙이었던 경우를 말한다.

나) **추상적 사실의 착오** – 인식한 객체와 발생한 객체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예컨대 개라고 생각하고 射殺하였는데 개가 아닌 사람이 사살된 경우를 말한다.

나.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착오의 대상에 의한 구별).

가) **객체의 착오** – 행위자가 인식한 객체와 현실의 객체와의 동일성에 어긋남이 있는 경우, 예컨대 甲이 乙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발사하였는데 乙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乙이 아닌 丙인 경우를 말한다.

나) **방법의 착오** – 공격방법(공격수단)에 어긋남이 생겨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어린이 乙을 업고 있는 어머니 甲을 곤봉으로 치려고 하였는데 어머니가 빗기는 바람에 어린이 乙이 곤봉에 맞은 경우를 말한다.

■ **학 설** – 구체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다수설).

(7) 신뢰의 원칙

■ **의 의** –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 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 여자가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위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적용한계(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나.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다.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8) 결과적 가중범

■ **의 의** –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 이유** – 결과적 가중범은 예컨대 甲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乙을 칼로 찔렀는데 乙이 사망한 경우에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乙을 상해죄로 처벌하게 되면 乙이 안 죽어도 상해죄, 죽어도 상해죄로 처벌하게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등).

3 위법성

(1) 위법성의 의의

■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 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성질을 가리켜서 '위법성' 이라고 한다.

(2)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不正 대 正의 관계).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正 대 正의 관계). 긴급피난은 국가권력이 그의 법익보호임무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의 법익이나 제3자의 법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 **자구행위** – 불법으로 권리(청구권)를 침해당한 사람이 공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권리를 구제 · 회복하는 제도이다(不正 대 正의 관계).

■ **피해자의 승낙** – 피해자가 자기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락하는 경우, 그 가해행위의 형법상 불법을 배제시키는 제도이다.

■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과 같은 정당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화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책 임

(1) 책임의 의의

■ 범죄성립의 세 번째 요건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을 말한다.

(2)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구비요건

■ '책임의 전제' 로서의 '책임능력'

■ '책임의 요소' 로서의 '위법성의 인식'

■ '책임의 한계' 로서의 '기대가능성'

■ '책임고의 및 과실'

(3) 책임능력

■ 의의 – 법규범의 명령 ·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洞察能力과 이 통찰능력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행위의 操縱能力을 말한다.

가. **책임무능력자** –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나.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 농아자

(4) 위법성의 인식

■ 의의 – 범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가 법률에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사실, 즉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는 이른바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 **법률의 착오** – 행위자가 착오로 인하여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하면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착오로 그 사실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5) 기대가능성

■ 범죄자를 비난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미루어 범죄행위 대신에 적법행위로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기대불가능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과잉피난, 친족간의 범인은닉 및 증거인멸.

■ **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5 미수론

(1) 의 의

■ 의의 – 미수는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단계를 말한다.

(2) 종 류

■ 장애미수 – 행위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즉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중지범(중지미수)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아직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自意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는 경우.

■ 불능미수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위험성이 없는 경우를 '불능범' 이라고 함).

6 공범론

(1) 공범의 종류

■ 임의적 공범 –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

■ 필요적 공범 – 집합범(내란죄, 소요죄), 대향범(간통죄, 수뢰죄)

(2)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역할분담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일부행위 전부책임).

(3) 간접정범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타인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

(4) 교사범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자. 이미 범죄를 결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종범(방조범)' 과 구별된다.

(5) 종범(방조범)

■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 즉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시키는 것.

제 2 절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법원(法源)

1 형사소송의 의의

(1) 협의의 형사소송

협의의 형사소송이란 재판상의 절차만을 의미한다. 즉 공판절차(公判節次)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제기(公訴提起) 이후 재판의 절차에 한정한다.

(2) 광의의 형사소송

광의의 형사소송이란 공판절차를 포함하여 공판절차 전의 경찰(警察) 및 검찰(檢察)에서의 수사절차(搜査節次)와 공판절차 후의 재판의 집행절차(執行節次)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형사소송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현행 형사소송법전(2005. 3. 31. 법률 제7427호)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과 제2편 제1심(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3편 상소(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의 집행 등 제493조로 구성되어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그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서 형사사법(刑事司法)의 조직(組織), 특별절차(特別節次), 소송비용(訴訟費用) 등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법률체계 전체를 말한다(예컨대,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소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

II. 소송주체

1 법원

(1) 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제척

ⅰ) 의의

제척(除斥)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심판을 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현저한 경우를 유형화하여 이에 해당하는 때에 그 담당법관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한 일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당연히 배제되는 제도이다. 제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여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 · 회피와 구분된다.

ⅱ) 제척의 원인

제척의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유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법관이 피해자인 때(제1호)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 호주 ·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제2호)

ⓑ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제3호)

ⓒ 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제4호 후단)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제5호)

㉰ 법관이 당해사건에 이미 관여한 때

ⓐ 법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때(제4호 전단)

ⓑ 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제6호)

ⓒ법관이 사건에 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제7호)

㉠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iii) 제척의 효과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된다.

㉯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제24조 ①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척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 ①항 제1호).

㉰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때에 절대적 항소이유와 상고이유가 된다.

② 기피

기피(忌避)는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18조).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③ 회피

회피(回避)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즉 제척사유나 그 밖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제24조 ①항).

(2) 법원(法院)의 관할

관할(管轄)이란 각각의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는 특정법원의 분배를 의미한다.

관할은 사건관할(事件管轄)과 직무관할(職務管轄)로 구분되는데, 직무관할은 재심 · 비상상고 · 재정신청관할 등을 의미하며, 보통 관할이라고 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관할의 의미인 사건관할을 의미한다.

사건관할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법정관할(法定管轄)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재정관할(裁定管轄)이 있다.

법정관할에는 고유관할(固有管轄)과 관련사건의 관할이 있으며, 고유관할에는 사물관할(事物管轄) · 토지관할(土地管轄) 및 심급관할(審級管轄)이 있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과 이전 및 창설이 있다.

① 사물관할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의한 제1심의 관할분배로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단독판사나 합의부로 구분된다.

ⅰ) 단독판사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單獨判事)가 이를 행한다.

ⅱ) 합의부

합의부(合議部)에 속하는 사건으로는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과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등이 있다.

② 토지관할

토지관할(土地管轄)이란 사건의 토지관계에 의한 관할의 분배를 의미하며, 동등한 법원간의 사건분배이다. 토지관할을 재판적(裁判籍)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①항) 범죄지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발생한 장소이며, 주소와 거소는 민법상의 개념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의 주소이며, 사람이 다소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거소이다. 현재지란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이다.

③ 심급관할

심급관할(審級管轄)이란 상소와 관련된 관할로서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이며,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이다.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飛躍上告事件)은 대법원이 관할이다.

2 검사

(1) 검사의 의의

검사(檢事)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⑤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와 감독, 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직무와 권한으로 삼는 국가기관이다(검찰청법 제4조).

(2) 검사의 성격

① 단독제의 관청

행정부(법무부 검찰청)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검사의 검찰사무는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② 준사법관

검사의 권한인 검찰권은 행정부에 속한 권한의 일종이지만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까지 이어지는 검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검사의 공소제기를 재판의 개시에 있어서 전제가 되므로 검사의 검찰권행사는 사법부의 재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지만 준사법관(準司法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③ 상명하복의 관계

검찰청법 제7조 ①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준사법관으로서의 검사의 성격상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④ 소송당사자

검사는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의 반론에 대하여 방어를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부과하게 하는 형사소송상의 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

⑤ 공익적 성격

검사는 공익적 성격으로서 고소나 고발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도 혐의가 있는 경우 능동적으로 피고인을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의 역할은 공익을 위한 역할로서 검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3)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는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따라서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닌 전체의 하나로 검찰권을 행사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으로는 검사의 상명하복관계, 직무승계의 권한, 직무이전의 권한, 직무대행의 권한 등이 있다.

3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

피고인(被告人)이란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付審判決定)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것으로 취급되는 자도 피고인이다.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구분된다. 즉 피의자는 공소제기를 통하여 피고인이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의 확정에 의하여 수형자가 된다.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이며, 약식기소된 자도 피고인이다.

(2) 피고인의 특정

피고인은 통상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등을 기재하게 된다.

4 변호인

(1) 변호인의 의의

변호인(counsel)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히 선임된 보조자(補助者)이다. 변호인의 역할은 소송구조 중 직권주의보다 당사자주의에서 강하게 요청된다.

당사자(검사와 피고인)간의 공격과 방어를 통하여 소송진행이 되는 당사자주의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보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기평등원칙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의 변천은 변호권확대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피고인의 법률적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변호인의 선임

① 사선변호인

사선변호인(私選辯護人)은 사인(피의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의미한다.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선임권자라고 하는데 선임권자는 고유의 선임권와 선임대리권자로 구분된다.

고유의 선임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다.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선임의뢰권이 보장되고 있다.

선임대리권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 (법률상의)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와 호주이다. 이들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인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ⅰ) 피고인의 열악한 방어능력

법원은 피고인이 ① 미성년자, ② 70세 이상인 자, ③ 농아자, ④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⑤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곤, 기타 사유가 선정사유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제22조, 제283조).

ⅱ) 사건의 중대성과 필요적 변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제282조, 제283조).

ⅲ) 체포, 구속적부심사

국선변호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적부심사를 청구한 구속된 피의자가 제33조의 국선변호인의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한다(제214조의 2 ⑥항).

Ⅲ. 수 사

1 총 설

(1) 수사기관

수사(搜査, investigation)란 범죄혐의가 있는가를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搜査機關)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 확보하며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및 증거보전을 하는 활동이다.

① 수사기관의 종류

현행법상 수사기관(搜査機關)으로는 '검사(檢事)' 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 가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종류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一般司法警察官吏)' 와 '특별사법경찰관리(特別司法警察官吏)' 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司法警察官)과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로 구분된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있고,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이 있다.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로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 제197조)를 말한다. 예컨대, 교도소장 · 구치소장 · 소년원장 · 소년분류심사원장 · 산림보호종사 공무원 · 관세법상의 세관공무원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등이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직무는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될 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지위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하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다. 즉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찰청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2 수사의 단서와 개시

(1)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端緖)란 수사개시를 하게 되는 원인을 말한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기관 자체적 체험에 의한 경우(현행범인의 체포 · 변사자의 검시 · 불심검문 · 다른 사건의 수사에서의 범죄발견 · 기사 · 풍설 · 세평 등)와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 · 범죄신고 등)가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에 대한 주관적 혐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소 · 고발 ·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며, 피고소인 · 피고발인 · 자수자는 피의자가 된다. 고소 · 고발 · 자수 이외의 수사의 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데 이 경우를 내사(內査)라고 한다. 고소 · 고발 · 자수 이외의 수사단서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입건(立件)이라고 한다.

(2) 고소

① 고소의 의의

고소(告訴)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순한 피해신고(예, 도난신고)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을 의미하며, 판례는 13세의 여중생에 대해 강간죄의 고소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② 고소권자

ⅰ)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진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직접 피해자에 국한되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한된다.

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할 때 인정되면 된다.

ⅲ)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

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ⅳ)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는 반할 수 없다. 예컨대,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에서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③ 고소방식

ⅰ) 고소의 의사표시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ⅱ) 고소의 대리 :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고소기간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고소기간의 시기는 단순히 범죄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범인의 주소, 성명 등 구체적 인적 사항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⑤ 고소의 제한

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⑥ 고소의 취소와 포기

ⅰ) 고소의 취소

ⓐ 고소취소의 기한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친고죄의 고소의 경우).

ⓑ 취소권자 : 고소권자와 고소의 대리행사자이다.

ⅱ) 고소취소의 방법

고소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ⅲ) 고소취소의 효과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취소가 있으면 검사는 불기소처분,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iv) 고소의 포기

대법원 판례는 고소권의 포기를 부정하고 있다.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사적처분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문규정이 없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v) 고소의 추완

'고소의 추완(追完)'이라 함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은 고소의 추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나 비친고죄인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강간죄의 공소제기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vi) 고소사건의 처리

ⓐ 고소기간의 처리기간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훈시규정).

ⓑ 처분 통지

㉠ 고소인에 대한 통지 : 검사는 고소에 의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피의자에 대한 통지 :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고발

① 고발의 의의

고발(告發)이라 함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訴追)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범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피해신고나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고발을 함에는 고발인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익명의 투서 또는 밀고는 고발이 아니다.

② 고발권자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여기서 '누구든지'에는 범인, 고소권자, 수사기관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하며,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발기간에도 제한이 없고,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4)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變死者)의 검시(檢視)란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자 또는 변사자의 의심이 있는 사체(死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다. 변사자의 검시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므로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수사상 처분인 검증(檢證)과 구분된다.

(5) 자수

자수(自首)란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가 발각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범죄사실 또는 범인이 잘못 알려진 경우에도 성립한다. 자수는 자발적인 행위이므로 수사상 신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자백과 구별되고 친고죄(親告罪) 등에서의 자복(自服)과도 구별된다. 자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자수는 범죄의 발견을 쉽게 하고 파생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책적 입장에서 형의 경감(輕減) 혹은 면제의 근거가 된다.

3 수사의 실행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任意搜査)를 원칙으로 한다. 강제수사(强制搜査)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제199조 1항)는 것을 임의수

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충돌하는 분야로서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중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② 임의수사의 방법

ⅰ) 피의자 신문

· 절차

㉠ 출석요구, ㉡ 진술거부권의 고지, ㉢ 피의자 신문의 참여자,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ⅱ) **참고인 조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1조). 이 경우 '피의자 아닌 자'를 실무상 참고인이라고 부른다.

③ 통상체포

ⅰ) 통상체포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통상체포가 허용된다. 단,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체포가 허용된다(제200조의2 ①항). 통상체포의 요건으로서의 범죄혐의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통상체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ⅱ) 통상체포의 절차

ⓐ 체포영장의 청구 :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체포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청구권이 없다(제200조의3 ①항).

ⓑ 체포영장의 발부 : 검사에 의하여 체포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청구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체포영장의 발부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 체포영장의 집행 : 체포영장의 집행절차는 구속영장의 집행규정이 준용된다.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2) 긴급체포

① 긴급체포의 요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200의3 ①항).

② 긴급체포의 절차

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의 사유를 알리고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제200의3 ①항).

ⅱ) **구속영장의 청구 · 발부**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구속영장청구서에는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 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3) 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213조 ①항).

(4) 피의자구속

① 피의자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망우려의 염려가 있을 때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201조 ①항).

② 피의자구속의 절차

ⅰ) **구속영장의 청구** :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사법경찰관은 청구권이 없다.

ⅱ) **구속영장의 발부**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ⅲ) **구속영장실질심사제**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201조 ②항).

4 구속된 피의자

(1) 구속기간의 제한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검사의 구속기간은 1차에 한하여 10일의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5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

(1) 청구권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호주 ·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214조의2 ①).

(2) 청구의 사유

청구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체포나 구속이 불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포함한다.

(3) 청구의 방식

청구는 서명에 의하여야 한다.

(4) 심사법원

체포 · 구속영장적부심사의 청구는 관할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심문 · 조사 ·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 조사 ·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① 수사종결의 의의

수사의 종결(終結)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을 때 한다. 현행법상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며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종결권이 없다. 수사의 종결의 의미는 공소제기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 끝난 것을 의미할 뿐 수사의 종결 이후 재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검사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②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검사의 수사종결처분에는 공소제기(公訴提起) ·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타관송치(他管送致)가 있다.

공소제기는 수사결과에 대한 판단이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인정할 수 있고, 소송조건을 충족시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하게 되며, 수사종결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起訴猶豫) 및 기소중지(起訴中止)로 구분된다.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은 범죄불성립,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으로 구분된다.

ⅰ) **범죄불성립** : 범죄불성립은 수사결과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ⅱ) **무혐의** :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ⅲ) **공소권 없음** : 피의사실이 소송조건이 결여되었을 경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검

사에게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며, 이 경우 하는 불기소처분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하게 되는 불기소처분이다.

②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ⅰ) **기소유예** : 수사결과 피의사건에 대한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충족되었으나 범인의 특성(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ⅱ)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어 수사의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해소시까지 하는 처분으로서 수사중지를 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③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된 공소보류도 기소유예와 유사한 제도이다.

(3) 타관송치

피의사건이 수사결과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송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군사법원 검찰부 검찰관에게 송치하여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게 된다.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인정되는 불복방법으로는 검찰항고(檢察抗告), 재정신청(裁定申請),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있다.

① 검찰항고(항고 · 재항고)

검사는 고소와 고발에 의한 수사를 한 후 불기소처분 등을 할 경우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검찰항고의 방법은 담당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하게 된다. 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할 경우 고소인이나 고

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항고 또는 재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기각하게 된다.

② 재정신청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라고도 한다.

③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에 한정되며, 고발인은 제외된다. 이유로는 헌법소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Ⅳ. 공판심리의 순서

1 모두절차

모두절차(冒頭節次)는 시차적으로 인정신문(人定訊問) → 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 → 진술거부권(陳述拒否權) 등의 고지(告知) → 피고인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의 순서로 이어진다.

(1) 인정신문

인정신문이란 재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이 공소장의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신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명 · 연령 · 본적 · 주거와 직업을 확인하게 된다. 피고인이 인정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바, 거부권을 인정함이 옳다고 하겠다.

(2)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재판정에서 사건의 개요와 입증방침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진술이라고 한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검사의 모두진술을 요하지 않는다.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재판장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검사의 공격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거부권은 대등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에 의한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사건의 입증책임이 대부분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인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주장 또는 신청 등 사건관련 진술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족되며, 반드시 진술을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2 사실심리절차

(1) 피고인신문

① 피고인신문의 순서

ⅰ)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情狀)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제287조)

ⅱ)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제287조)

ⅲ)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제287조).

② 피고인신문의 방법

ⅰ)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의 외압적 ·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128조).

ⅱ)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在廷人)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제130조).

(2) 증거조사

증거조사(證據調査)란 법원이 하는 것으로서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나 양형에 대한 심증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증거조사방법으로는 인증(人證) · 서증(書證) · 물증(物證)이 있다.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지만, 필요한 때에는 신문 중에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증거조사의 주체는 법원이므로 검사가 행하는 증거수집이나 검증(檢證)은 증거조사가 아니다.

3 최종변론

증거조사가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이를 최종변론이라고 한다. 최종변론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진술이 있다.

(1) 검사의 의견진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하게 되는 의견진술로서 이를 검사의 논고(論告)라고도 한다. 논고 중 검사의 양형의견을 구형(求刑)이라고 한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진술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충족된다.

4 판결선고

판결선고(判決宣告)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하는 공판절차의 최종단계를 의미하며, 판결선고는 재판장이 한다.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게 된다.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나 질서유지를 위해 퇴정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퇴정한 경우 등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선고를 할 수 있으나 판결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판결선고가 있게 되면 공판절차는 종료되고, 상소기간이 시작된다.

V. 재판의 방식과 내용, 재판의 성립

1 재판의 방식과 내용

(1) 재판서의 작성

① 재판서의 작성

② 재판의 선고와 고지의 방식

ⅰ)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42조).

ⅱ)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2) 재판의 내용

① 재판의 구성

재판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한다. 다만,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에는 이유를 명시함으로 요하지 아니한다(제39조).

② 재판의 주문

재판의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다.

③ 재판의 이유

재판의 이유는 재판의 주문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이다. 현행법상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는 ㉠ 범죄사실, ㉡ 증거요지, ㉢ 법령의 적용,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등이다.

2 재판의 성립

재판이 성립한다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의사결정과 결정의사의 표시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라고 하고, 결정의사의 표시를 재판의 외부적 성립이라고 한다.

내부적 성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 담당법관이 경질되어도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외부적 성립은 재판의 내용이 재판을 받은 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1) 내부적 성립

① 단독제의 경우

1인의 법관에 의하여 행하는 단독제의 재판에는 합의라는 단계가 없으므로 재판의 내부적 성립의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ⅰ) 재판서의 작성이 있는 경우에 통설은 재판서 작성의 시기를 재판의 내부적 성립의 시기로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판서 작성 후에는 판사의 경질이 있더라도 절차갱신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ⅱ) 재판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 재판서의 작성이 없는 때에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내부적 · 외부적 성립이 동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합의제의 경우

합의제 재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한다.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외부적 성립

재판은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한다. 통상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 재판서를 통하여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재판장이 하며,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요지를 설명한다. 재판의 선고와 고지는 내부적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해도 외부적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국재판이 외부적 성립된 경우에는 담당사건의 재판기관도 선고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내용의 오류발견 시에는 대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 상고인(변호인 포함)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로써 정정이 가능하다.

제 7 장

범죄예방 관련 법규



少 年 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04929호]

第 1 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反社會性 있는 少年에 대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性行의 矯正에 관한 保護處分을 행하고 刑事處分에 관한 特別措置를 행함으로써 少年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少年, 保護者) 이 法에서 "少年"이라 함은 20歲 미만의 者를, "保護者"라 함은 法律上 監護敎育의 義務있는 者 또는 현재 監護하는 者를 말한다.

第 2 章 保護事件

第1節 通則

第3條 (관할, 職能) ① 少年保護事件의 관할은 少年의 行爲地, 居住地 또는 現在地로 한다.

② 少年保護事件은 家庭法院少年部 또는 地方法院少年部(이하 "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와 處分의 決定은 少年部單獨判事가 행한다.

第4條 (保護의 대상과 送致 및 통고)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은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審理한다.

1. 罪를 범한 少年
2.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歲 이상 14歲 미만의 少年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性格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歲 이상의 少年
   가. 保護者의 정당한 監督에 복종하지 않는 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없이 家庭에서 離脫하는 것
   다.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자기 또는 他人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性癖이 있는 것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少年이 있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직접 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③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 이를 관할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第5條 (送致書) 少年保護事件을 送致하는 경우에는 送致書에 本人의 住居, 姓名, 生年月日 및 행위의 槪要와 家庭狀況을 기재하고 기타 參考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6條 (移送) ① 保護事件의 送致를 받은 少年部는 保護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다른 관할少年部에 移送할 수 있다.

② 少年部는 事件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그 事件을 관할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7條 (送檢) ①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禁錮 이상의 刑에 해당한 犯罪事實이 발견된 경우에 그 動機와 罪質이 刑事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②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 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地方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다만,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에 移送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 (통지) 少年部는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本人과 그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節 調査와 審理

第9條 (調査方針) 調査는 醫學·心理學·敎育學·社會學 기타 專門的인 知識을 活用하여 少年과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性行·經歷·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을 究明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10條 (陳述拒否權의 告知) 少年部 또는 調査官이 犯罪事實에 관하여 少年을 調査할 때에는 미리 少年에 대하여 不利한 陳述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11條 (調査命令) ① 少年部判事는 調査官에 대하여 本人, 保護者 또는 參考人의 審問 기타 필요사항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② 少年部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고된 少年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事件을 調査하여야 한다.

第12條 (專門家의 診斷) 少年部는 調査 또는 審理를 함에 있어서 精神科醫師·心理學者·社會事業家·敎育者 기타 專門家의 診斷 및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審査結果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改正 1995·1·5〉

第13條 (召喚, 同行令狀) ① 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期日을 지정하여 本人·保護者 또는 參考人을 召喚할 수 있다.

② 本人 또는 保護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少年部判事는 同行令狀을 발할 수 있다.

第14條 (緊急同行令狀) 少年部判事는 本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緊急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第13條第1項에 規定한 召喚없이 同行令狀을 발할 수 있다.

第15條 (同行令狀의 方式) 同行令狀에는 少年 또는 保護者의 姓名, 年齡, 住居, 행위의 槪要, 引致 또는 收容할 場所, 有效期間 및 그 期間의 경과 후에는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發付年月日을 기재하고 少年部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16條 (同行令狀의 執行) ① 同行令狀은 調査官이 執行한다.

② 少年部判事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나 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同行令狀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③ 同行令狀을 執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7條 (補助人選任) ① 本人 또는 保護者는 少年部判事의 許可를 얻어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

② 保護者 또는 辯護士를 補助人으로 選任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許可를 요하지 아니한다.

第18條 (臨時措置) ① 少年部判事는 事件의 調査·審理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少年의 監護에 관하여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95·1·5〉

1. 保護者,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者 또는 施設에 委託하는 것
2. 病院 기타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3. 少年分類審査院에 委託하는 것

② 同行된 少年 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引渡된 少年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時間 이내에 第1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1號, 第2號의 委託期間은 3月을, 第1項第3號의 委託期間은 1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回에 한하여 決定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를 할 때에는 保護者 또는 受託者에게 少年監護에 관한 필요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⑤ 少年部判事는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少年分類審査院所屬公務員, 矯導所 또는 拘置所所屬公務員, 保護觀察官 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1995. 1. 5〉

⑥ 第1項의 措置는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取消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19條 (審理不開始의 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의 審理를 開始할 수 없거나 開始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를 開始하지 아니한다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事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審理不開始 決定을 할 때에는 少年에 대하여 訓戒하거나 保護者에

대하여 少年에 대한 嚴格한 管理나 敎育을 시키도록 告知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第18條의 臨時措置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④ 少年部判事는 所在不明을 이유로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받은 少年의 所在가 밝혀진 때에는 그 審理不開始의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20條 (審理開始의 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送致書와 調査官의 調査報告에 의하여 事件을 審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審理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審判에 부하여질 사유의 요지 및 補助人을 選任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第21條 (審理期日의 지정)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期日을 지정하고 本人과 保護者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保護者는 이를 召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補助人의 選定이 있는 때에는 補助人에게 審理期日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22條 (期日變更) 少年部判事는 職權으로 또는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의 請求에 의하여 審理期日을 變更할 수 있다. 期日을 變更한 때에는 이를 本人, 保護者 또는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 (審理의 開始) ① 審理期日에는 判事와 書記가 列席하여야 한다.

② 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期日에 출석할 수 있다.

第24條 (審理의 方式) ①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 審理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判事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在席을 許可할 수 있다.

第25條 (意見陳述) ① 調査官, 保護者 및 補助人은 審理에 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本人의 退席을 命할 수 있다.

第26條 (證人訊問, 鑑定, 通譯, 飜譯) ① 少年部判事는 證人을 訊問하고 鑑定, 通譯, 飜譯을 命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證人訊問, 鑑定, 通譯 및 飜譯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27條 (檢證, 押收, 搜索) ① 少年部判事는 檢證, 押收 또는 搜索을 할 수 있다.

② 刑事訴訟法중 法院의 檢證, 押收 및 搜索에 관한 規定은 保護事件의 性質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第1項의 경우에 準用한다.

第28條 (援助, 協力) ① 少年部判事는 그 職務에 관하여 모든 行政機關, 學校, 病院 기타 公私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援助와 協力을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29條 (不處分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 決定은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9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決定에 準用한다.

第30條 (記錄의 작성) ①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는 保護事件의 調査 및 審理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여 調査 및 審理의 내용과 모든 決定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調査記錄에는 調査官 및 少年部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審理記錄에는 少年部判事 및 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또는 法院主事補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31條 (委任規定) 少年保護事件의 審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3節 保護處分

第32條 (保護處分의 決定) ① 少年部判事는 審理의 결과 保護處分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여야 한다.

1. 保護者 또는 保護者를 대신하여 少年을 보호할 수 있는 者에게 監護를 委託하는 것
2. 保護觀察官의 短期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3. 保護觀察官의 保護觀察을 받게 하는 것
4. 兒童福祉法上의 兒童福祉施設 기타 少年保護施設에 監護를 委託하는 것
5. 病院, 療養所에 委託하는 것
6.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7. 少年院에 送致하는 것

② 第1項第1號 處分과 第2號 및 第3號의 處分은 併合할 수 있다.

③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處分時 16歲 이상의 少年에 대하여는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동시에 命할 수 있다.

④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한 때에는 少年部는 少年의 引渡와 동시에 少年의 矯正에 필요한 參考資料를 受託者 또는 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少年의 保護處分은 그 少年의 장래의 身上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第33條 (保護處分의 期間) ①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委託의 期間은 6月로 하되, 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判事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第32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期間은 6月로 한다.

③ 第32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期間은 2年으로 한다. 다만, 少年部判事는 保護觀察官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1年의 범위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④ 第32條第3項의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同條第1項第2號의 短期保護觀察의 경우에는

50時間을, 同條第1項第3號의 保護觀察의 경우에는 200時間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保護觀察官이 그 命令을 執行함에는 本人의 정상적인 生活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短期保護觀察 또는 保護觀察이 종료되거나 假解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執行하지 아니한다.

⑤ 第32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로 少年院에 送致된 少年의 收容期間은 6月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34條 (沒收의 대상) ① 少年部判事는 第4條第1項第1號, 第2號에 해당하는 少年에 대하여 第32條의 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써 다음의 物件을 沒收할 수 있다.

1.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物件
2. 犯罪 또는 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物件
3. 第1號 및 第2號의 대가로 취득한 物件

② 第1項의 沒收는 그 物件이 本人 이외의 者의 所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本人의 행위가 있은 후 그 情을 알고 취득한 者에 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5條 (決定의 執行)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 第3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調査官, 少年部法院書記官, 法院事務官, 法院主事, 法院主事補, 保護觀察官, 少年院 또는 少年分類審査院所屬公務員 기타 委託 또는 送致받을 機關所屬의 職員으로 하여금 그 決定을 執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5. 1. 5〉

第36條 (報告와 意見提出) ① 少年部判事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한 때에는 受託者에 대하여 少年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少年部判事는 調査官으로 하여금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에 관한 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受託者에게 그 執行과 관련된 사항을 指示할 수 있다.

第37條 (處分의 變更) ① 少年部判事는 受託者 또는 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의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써 第32條의 保護處分을 變更할 수 있다. 다만, 同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은 職權으로 이를 變更할 수 있다.

② 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執行에 이를 準用한다.

③ 第1項의 決定은 지체없이 本人과 保護者에게 통지하고 그 취지를 受託者 또는 保護處分을 執行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8條 (保護處分의 取消) ①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當時 20歲 이상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 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檢事 또는 警察署長의 送致나 第4條第3項의 통고에 의한 事件인 경우에는 관할地方法院에 對應하는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한다.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이 送致한 事件인 경우에는 送致한 法院에 移送한다.

②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이 處分당시 12歲 미만인 것이 判明된 경우에는 少年部判事는 決定으로써 그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39條 (保護處分과 有罪判決)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有罪判決이 확정된 경우에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判事는 그 處分을 存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保護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第40條 (保護處分의 競合) 保護處分의 繼續중 本人에 대하여 새로운 保護處分이 있었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 少年部判事는 전의 保護處分을 한 少年部에 照會하여 어느 한 保護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第41條 (費用의 補助) 第18條第1項第1號, 第2號의 措置에 관한 決定 또는 第32條第1項第1號, 第4號, 第5號의 處分을 받은 少年의 保護者는 受託者에 대하여 그 監護에 관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保護者가 支給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少年部가 이를 支給할 수 있다.

第42條 (證人등의 費用) ① 證人, 鑑定人, 通譯人 및 飜譯人에게 支給하는 費用, 宿泊料 기타 費用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중 費用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參考人에게 支給하는 費用에 準用한다.

第4節 抗告

第43條 (抗告) ① 第32條의 保護處分의 決定 또는 第37條의 保護處分 變更의 決定이 그 決定에 영향을 미칠 法令違反이 있거나 중대한 事實誤認이 있는 때 또는 處分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本人, 保護者, 補助人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관할 家庭法院 또는 地方法院本院 合議部에 抗告할 수 있다.

② 抗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第44條 (抗告狀의 제출) ① 抗告를 함에 있어서는 抗告狀을 原審 少年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抗告狀의 제출을 받은 少年部는 3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抗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45條 (抗告의 裁判) ① 抗告法院은 抗告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抗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② 抗告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原決定을 取消하고 事件을 原少年部에 還送하거나 다른 少年部에 移送하여야 한다.

第46條 (執行의 정지) 抗告는 決定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第47條 (再抗告) ① 抗告를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그 決定이 法令에 위반하는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 再抗告를 할 수 있다.

② 第4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抗告에 準用한다.

第 3 章 刑事事件

第1節 通則

第48條 (準據法例)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一 般刑事事件의 예에 의한다.

第49條 (檢事의 送致) ① 檢事는 少年에 대한 被疑事件을 搜査한 결과 罰金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 保護處分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事件을 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② 少年部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된 事件을 調査 · 審理한 결과 그 動機와 罪質이 禁錮 이상의 刑事處分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써 당해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한 事件은 다시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第50條 (法院의 送致) 法院은 少年에 대한 被告事件을 審理한 결과 罰金이하의 刑에 해당하는 犯罪이거나 保護處分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써 事件을 관할少年部에 送致하여야 한다.

第51條 (移送) 少年部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致받은 事件을 調査 또는 審理한 결과 本人이 20歲 이상인 것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써 送致한 法院에 事件을 다시 移送하여야 한다.

第52條 (少年部送致時의 身柄處理) ①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送致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少年을 拘禁하고 있는 施設의 長은 檢事의 移送指揮를 받은 때로부터 法院少年部가 있는 市 · 郡에서는 24時間 이내에, 기타 市 · 郡에서는 48時間 이내에 少年을 少年部에 引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拘束令狀의 效力은 少年部判事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年의 監護에 관한 決定을 한 때에 喪失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引渡와 決定은 拘束令狀의 效力期間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第53條 (保護處分의 效力) 第32條의 保護處分을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그 審理決定된 事件은 다시 公訴를 제기하거나 少年部에 送致할 수 없다. 다만, 第38條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54條 (公訴時效의 정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審理開始의 決定이 있는 때로부터 그 事件에 대한 保護處分의 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公訴의 時效는 그 進行이 정지된다.

第55條 (拘束令狀의 제한) ① 少年에 대한 拘束令狀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少年을 拘束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으면 다른 被疑者나 被告人과 分離하여 收容하여야 한다.

第2節 審判

第56條 (調査의 위촉) 法院은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調査를 調査官에게 위촉할 수 있다.

第57條 (審理의 分離)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다른 被疑事件과 관련된 경우에도 審理에 지장이 없으면 그 節次를 分離하여야 한다.

第58條 (審理의 方針) ① 少年에 대한 刑事事件의 審理는 親切하고 溫和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審理에는 少年의 心身狀態, 性行, 經歷, 家庭狀況 기타 環境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糾明함에 특별한 留意를 하여야 한다.

第59條 (死刑, 無期刑의 緩和) 罪를 범할 때에 18歲 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死刑 또는 無期刑으로 處할 것인 때에는 15年의 有期懲役으로 한다.

第60條 (不定期刑) ① 少年이 法定刑 長期 2年 이상의 有期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에는 그 刑의 범위안에서 長期와 短期를 정하여 宣告한다. 다만, 長期는 10年, 短期는 5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少年의 特性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③ 刑의 執行猶豫, 刑의 宣告猶豫를 宣告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1條 (未決拘禁日數의 算入)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委託期間은 刑法 第57條第1項의 判決宣告전 拘禁日數로 본다.

第62條 (換刑處分의 금지) 18歲 미만인 少年에 대하여는 刑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宣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判決宣告전 拘束되었거나 第18條第1項第3號의 措置가 있었을 때에는 그 拘束 또는 委託의 期間에 해당하는 期間은 勞役場에 留置된 것으로 보아 刑法 第57條의 規定을 適用할 수 있다.

第63條 (懲役, 禁錮의 執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특히 設置된 矯導所 또는 일반 矯導所내에 특히 分界된 場所에서 그 刑을 執行한다. 다만, 少年이 刑의 執行중에 23歲에 달한 때에는 일반 矯導所에서 執行할 수 있다.

第64條 (保護處分과 刑의 執行) 保護處分의 繼續중에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먼저 그 刑을 執行한다.

第65條 (假釋放)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에 대하여는 다음 期間을 경과하면 假釋放을 許可할 수 있다.

1. 無期刑에는 5年
2. 15年의 有期刑에는 3年
3. 不定期刑에는 短期의 3分의 1

第66條 (假釋放期間의 종료) 懲役 또는 禁錮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 假釋放된 후 그 處分이 取消되지 아니하고 假釋放전에 執行을 받은 期間과 동일한 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第59條의 刑期 또는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의 期間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第67條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 少年으로 범한 罪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資格에 관한 法令의 適用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刑의 宣告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 4 章 罰則

第68條 (報道禁止) ① 이 法에 의하여 調査 또는 審理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는 姓名, 年齡, 職業, 容貌등에 의하여 그 者가 당해 本人으로 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新聞紙 기타 出版物에 게재 또는 放送할 수 없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新聞紙에 있어서는 編輯人과 發行人, 기타 出版物에 있어서는 著作者와 發行者, 放送에 있어서는 放送編輯人과 放送人을 1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9條 (年齡의 虛僞陳述) 成人인 者가 故意로 年齡을 虛僞陳述하여 保護處分 또는 少年刑事處分을 받은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70條 (照會應答) ① 少年保護事件과 관계있는 機關은 그 事件內容에 관하여 裁判, 搜査 또는 軍事上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照會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1條 (召喚의 불응)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者는 3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附則 〈제4057호, 1988. 12. 31〉

① (施行日) 이 法은 198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은 이 法 施行당시 調査 또는 審判중에 있는 保護事件 또는 刑事事件에 대하여도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保護節次 또는 刑事節次의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附則(소년원법) 〈제4929호, 1995. 1. 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少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중 "少年鑑別所의 鑑別結果"를 "少年分類審査院의 分類審査結果"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 생략

소년선도보호지침

· 제정 1981. 1. 20.
법무부훈령 제88호
· 개정 1983. 4. 5.
법무부훈령 제136호
· 개정 1984. 9. 26.
법무부훈령 제149호
· 개정 1993. 5. 19.
법무부훈령 제283호
· 개정 1996. 12. 27.
법무부훈령 제37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선도유예라 한다)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 선도보호하여 그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아울러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의무) ① 각급청의 검사와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분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선도유예」라함은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말한다.

②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다만, 선도의 목적을 달하기 위한 학비보조, 취학알선,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은 접촉선도의 일부로 본다.

③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범죄예방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선도보호」라 함은 제 ②, ③항을 포함한 선도를 말한다.

⑤「범죄예방위원」이라함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363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제6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의 각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한 자는 당해사건에 한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본다.

⑥「비행성예측자료표」라 함은 일정사항을 점검하여 소년범의 재범가능성의 높고 낮음을 예측하는 표로서 경찰청 작성의 사회항목조사표를 원용한다.

⑦「소년선도보호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범죄예방위원에게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를 의뢰하는 절차로서 권고인수의 경우는 물론 자진인수의 경우에도 작성되어야 한다.

⑧「소년선도보호 책임인수」라 함은 범죄예방위원이 검사에 대하여 문서로써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및 경과통보 책임을 인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선도유예

제4조 (범위) ① 선도유예는 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선도유예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② 선도유예의 실시는 종래의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 (유예소년선정) ① 주임검사는 소년사건의 죄질과 범정을 살펴 선도유예 적격소년을 선별한다.

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소년을 선별함에 있어 다음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

1. 필수적 참작자료
   가. 비행성 예측자료표(별지 제1호 서식)
   나. 소년범 환경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
2. 임의적 참작자료
   가.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나. 피해보상여부와 피해자감정
   다. 유치장 행장기록

③ 필수적 참작자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송치사건은 송치부서에서, 검사인지사건은 검사가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 한다.

④ 주임검사는 비행성 예측자료표상의 예측점수를 기초로 하되, 사건기록일체, 신문중에 감지

한 범죄소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재범가능성 정도를 결정한다.

제6조 (범죄예방위원선정) ① 주임검사는 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죄예방위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교사, 직장상사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유예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 (권고인수) ① 주임검사는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의 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을 권고함에 있어서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임검사는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에게 소년선도보호 위탁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한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와 통보를 여행한다는 내용의 소년선도보호책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주임검사는 이를 관계소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 (자진인수) ① 범죄예방위원은 자진하여 유예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범죄예방위원이 아니더라도 성직자, 교직자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유예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자진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예소년의 주변사정을 예비조사하여 그 소년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주임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검사는 전항의 의견서를 해당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전담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사건을 결정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자진인수희망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전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인수거부) ① 범죄예방위원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소년선도 보호책임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주임검사는 선도유예를 재고하거나 다른 범죄예방위원에게 책임인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서약서징구등) ① 주임검사는 유예소년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새사람이 되겠다는 내용과 보호자로부터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연명서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동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와 절취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준수사항란을 간인케 한 후 이를 절취하여 소년 및 보호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배시의 조치를 엄중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수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이 수록된다.

1. 석방후 늦어도 3일내 범죄예방위원을 방문할 것
2. 선도기간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 ·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장기출타시는 범죄예방위원에게 신고할 것
3. 선도기간중 범죄예방위원과 수시 접촉을 갖고 선도상의 지시에 순응할 것
4.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며 맡은 일을 태만히 하지 아니할 것
5.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할 것
6.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항상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것
7. 이상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유예사건의 재기 등 여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없이 이를 감수할 것

③ 유예소년과 그 보호자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보호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 ① 주임검사는 선도유예처분을 할 때는 접촉(원호)선도소년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 전항의 소년카드에는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1.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성장과정, 교우관계, 범죄사실요지
2. 선도시 유의사항, 접촉(원호)선도상황
3. 접촉(원호)선도의 해제, 연장, 취소, 접촉(원호)선도성패 평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접촉(원호)선도소년색인부) ①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소년색인부(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색인부에는 사건번호, 소년카드번호, 피의자명, 연령, 죄명, 유예일자, 위탁일자, 범죄예방위원(시설)명, 연장, 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등을 기재한다.

제13조 (불기소장 작성) ① 주임검사는 유예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고란에 「선도유예」「소년카드번호」라고 기재한다.

② 주임검사는 전항의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접촉(원호)선도가 필요불가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범죄예방위원의 준수사항) ① 범죄예방위원은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여부 및 선도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의 개인사정, 가정사정 및 주변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대상소

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④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일정주거여부
2. 접촉지속여부
3. 정직정려여부
4. 불량교우여부
5. 전비반성여부
6. 피해보상여부

⑤ 범죄예방위원은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선도보호조치내용과 대상소년에 대한 점검확인결과를 기재한 선도경과를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예비조사

제15조 (조사사항)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책임인수에 앞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선도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
2.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요인
3.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
4.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및 교우관계
5. 대상소년의 건강상태
6.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제16조 (조사방법) ① 범죄예방위원은 전조의 사항을 예비조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1. 대상소년과의 대화
2. 대상소년의 보호자등과의 대화
3. 대상소년의 학교 · 직장에의 조회
4. 대상소년의 이웃에 수소문
5. 대상소년의 친우면접
6. 관계 공무소에의 조회
7. 기타 필요한 방법

제17조 (조사후 조치) 범죄예방위원은 제15조 소정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상 소년의 선도보호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임검사 또는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 이를 시정보완케하여 인수하거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4 장 선도보호

제18조 (접촉선도) ①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을 선도함에 있어서는 상담 등 직접접촉과 서신 · 전화 등 간접접촉의 방법에 의하여 소년과 월 1회이상 접촉을 가져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년의 가족, 이웃사람, 친지 등과도 접촉할 수 있다.

③ 접촉선도시에는 상담, 지도, 대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다.

④ 접촉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학비보조, 취학알선,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원호선도) ① 범죄예방위원은 유예소년이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다.

② 전조의 규정은 원호선도에 준용한다.

제20조 (범죄예방위원의 소년원, 소년교도소 방문 등)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한 경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대상으로 강연 · 상담 등 지도교양활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 (선도보호방법등 변경) ① 전담검사는 제18조, 제19조의 선도보호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그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보호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전담검사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이 주거지의 이동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대상소년을 선도보호할 수 없거나 담당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의 선도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③ 전 1, 2항의 경우에 새로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할 때에는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

제 5 장 통 보

제22조 (경과통보) ① 범죄예방위원은 선도기간중 매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내용 등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예소년에 대한 접촉(원호)선도경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접촉상황, 선도조치내용, 범죄예방위원 의견 등을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접촉(원호)선도에 있어서 범죄예방위원은 기본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마지막 달의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해제, 연장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 (실적통보) ① 지역범죄예방위원협의회 회장은 해당지역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범죄예방위원은 자신의 개별적인 활동실적이 있을 때에는 해당지역 범죄예방위원협의회 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타통보사항) ① 범죄예방위원은 대상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전담검사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범
2. 소재불명
3. 이주
4. 사망
5.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6.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담당범죄예방위원과 협의하여 대상소년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재불명의 경우 담당범죄예방위원에게 동 · 면사무소를 통한 대상소년의 거주이동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동인의 가족친지 등을 통하여 소재발견에 주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할 수 있다.

제 6 장 사후관리

제25조 (선도기간) ① 유예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1년,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6개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유예소년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족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 (연장) ①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연장기간중 접촉(원호)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한다.

② 전항의 연장은 접촉선도경과통보서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을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기간연장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별지 제9호서식) 한다.

④ 선도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유예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해제) ①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제25조 제1항의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접촉선도조치를 해제한다.

② 전항의 해제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해제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별지 제10호서식) 한다.

④ 접촉(원호)선도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수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취소) ① 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유예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접촉(원호)선도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범
2.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3. 소재불명

② 전항의 취소는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 1항의 경우에 전담검사는 접촉(원호)선도를 취소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별지 제11호서식) 한다.

④ 전 1항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한다.

제29조 (독촉) ① 전담검사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 또는 경과통보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할 때에는 이의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촉구는 그 취지를 범죄예방위원에게 통보하고 소년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 (보호책임인계) ① 전담검사는 대상소년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범죄예방위원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주거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전담검사에게 그 소년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이외의 선도관계서류를 이송한다.

② 전항의 이송을 받은 전담검사는 관내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잔여선도기간 선도보호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선도보호위탁은 최초의 선도보호위탁절차에 준한다

제31조 (실적분석보고) 검사장은 지청분을 취합하여 매분기마다 해당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선도유예 실적과 그 분석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표창)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소년 선도보호 또는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공로가 많은 범죄예방위원을 표창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선도보호를 받은 소년 중 현저하게 개선되어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소년을 표창한다.

제33조 (기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소년계를 둔다.

② 소년계는 이 지침에 관련된 문서의 정리, 보존, 기타사무를 전담한다.

부 칙

이 영은 1997. 1. 3부터 시행한다.

(제 1호 서식)

비행성예측자료표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직 업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주소					성명		

	조사대상	조사내용			평점	해당표시
사회항목예측조사	1. 생계 담당자	부 또는 모			0	
		기 타			6	
	2. 가정결손	유			6	
		무			0	
	3. 의무교육	필			0	
		미필(불취학, 중퇴)			7	
	4. 장기결석 1주 이상	유			9	
		무			0	
	5. 교우관계	친한 친구중에서 직업없이 무위도식하는 친구 유무, 경찰에 단속되었던 친구유무	「유」가	0	0	
				1	5	
				2	8	
	6. 가출경험	무			0	
		유	2회 이상		3	
			3회 이상		8	
	7. 조발비행 (14세미만)	무			0	
		유	우범 행위		13	
			촉법 행위		16	

	항목점수			항목점수
종합판정법	항목점수	0~11	비행위험성이 낮다	항목점수
	〃	12~20	〃 약간 높다	( ) 점
	〃	21~29	〃 높다	평 가
	〃	30이상	〃 아주 높다	

판정에 따른 처분 의견	구공판		소년부송치
	구약식		기 소 유 예

작 성 자	직 위		성 명		
검 사 확 인	성 명		타 당		부 당

(제 2호 서식)

소년범환경조사서

인적사항	본 적				
	주 소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직 업		별 명		

	관 계	성 명	연령	직업 및 수입	자 산	비 고
가족사항						

	성 장 과 정	학 력 · 경력	성격소행 변화
성장과정	유아기(0~5)		
	아동기(6~13)		
	소년기(14~19)		

	성 명	연 령	직 업	주 소	기타
교우관계					

세 평	
개선의 정 유무	
기 타	

20 . . .

조 사 자 ○ ○ 경 찰 서

사법경찰관(리) ○ ○ ○

(제 3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소년카드 제 호
형제 호 (입원제 호)
수신 선도위원 ○ ○ ○
제목 소년선도보호위탁

다음 소년은 귀하의 선도보호로 개과천선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책임인수를 위탁하오니 귀하가 기히 확인 점검하신 소년 및 주위사정의 예비조사 내용과 별첨 범죄사실의 거래내용을 참작하여 선도위원 수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선도보호해 주시고 적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2. 범죄사실
   (별첨)
3. 선도시 유의사항
   (범인성 요인, 기타)

20 . . .

○ ○ 지방검찰청

검 사 ○ ○ ○

(제 4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소년카드 제 호
형제 호 (입원제 호)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제목 소년선도보호책임 인수

아래 소년의 범죄는 그의 주변환경을 예비조사 해본 결과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되고 또한 반사회성이 아직 고착되어 있지 않아 재범할 우려성도 희박한듯 하여 본인이 미력하나마 접촉을 갖고 교정한다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될 것으로 확신이 되어 동 소년에 대하여 선도위원수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하고 그 경과 통보를 유루없이 적기에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동 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합니다.

20 . . .
선도위원 ○ ○ ○

소 년 인 적 사 항

주소
성명 성별 연령

(제 5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시　　약　　서

소년카드　제　　호
형　　제　　호 (입원제　호)
죄　　명　　피의자명

위 본인은, 본인의 무거운 범정(犯情)과 죄질(罪質)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 선도유예의 관용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며 선도위원의 지도에 순응함은 물론 다음의 준수사항을 기필 이행하여 참다운 새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새로이 다른 죄를 범할 때에는 위 유예된 사건에 대하여 중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년본인의 성명　　날인 또는 무인

소년의 보호자
주소
성명　　년령

소년과의 관계

본인은 OOO의 보호자로서 그동안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회에 누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하게 느끼고 있으며 동 소년에 대하여 선도기간 중 준수사항의 준수 등 선도위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훌륭한 사회인이 되도록 지도 교양 할 것을 서약합니다.

보호자 성명　　날인 또는 무인

○ ○ ○ 검사 귀하

(제 6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접촉(원호) 선도소년카드									형 제 번 호		작성일자	
									소년카드번호		작 성 자	
인적사항	본 적								선도유예일		처 분 검 사	
	주 소								예측표점수		공범처분내용	
	성 명		별명		성별		년령		범 죄 사 실 의 요 지			
	주민등록 번 호		직업		취미 특기		혈액 형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년 령	직 업	수 입	재 산	비 고

성장과정	생육력	학 력 · 경 력	성명 · 소행 · 세평 · 변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교우사항	성 명	년 령	직 업	주 소(전화)	기 타	선도시 유의사항(범인성요인 기타)

〈앞 면〉

선도위원	당초위원	상 임 비상임	주 소		직 업		성 명	
	교체위원	상 임 비상임	주 소		직 업		성 명	
접촉 (원호) 선도상황(경과통보서 요지나 구두 · 전화연락 내용 기재)								
월 일								
접촉 (원호) 선도의 연장 · 해제 · 취소								
월 일		사 유						
접촉(원호)성패평가								

〈뒷 면〉

(제 7호 서식)

접촉(원호) 선도소년 색인부

○ ○ 지 방 검 찰 청

연번	형제 번호	소년카드 번 호	피의자명	년령	죄 명	유예 일자	위탁 일자	선도위원 (시설)명	연장해제 취소일자 및 사유	처분검사	비 고

(제 8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table>
<tr><td rowspan="3" colspan="2">제 회 집촉(원호)
선 도 경 과 보 고 서</td><td>전담검사</td><td>부장검사</td><td>차장검사</td><td>검사장</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작성일자</td><td colspan="3">19 . . .</td></tr>
<tr><td>수 신</td><td colspan="2">○ ○ 지방검찰청 검사장</td><td>발 신</td><td colspan="2"></td></tr>
<tr><td>형제번호</td><td></td><td>소년카드</td><td></td><td>소년성명</td><td></td></tr>
<tr><td colspan="6">접촉 (원호) 선도기간 19 년 월 일 부터 19 년 월 일 까지</td></tr>
<tr><td rowspan="3">접 촉
상 황</td><td></td><td>방 문</td><td>전 화</td><td colspan="2">편 지</td></tr>
<tr><td>소년본인</td><td>회</td><td>회</td><td colspan="2">회</td></tr>
<tr><td>보 호 자</td><td>회</td><td>회</td><td colspan="2">회</td></tr>
<tr><td colspan="6">접촉 (원호) 선도내용 (본인, 보호자 등과 접촉상황 및 범죄예방위원이 취한 조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td></tr>
<tr><td colspan="6">월 일</td></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6"></td></tr>
<tr><td colspan="6">※ 본 통보서는 귀하가 선도중인 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극히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사용해 주십시요).</td></tr>
</table>

青 少 年 保 護 法

[일부개정 2005. 3. 24 법률 7423호]

第 1 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青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 등이 青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青少年이 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 등을 規制하고, 青少年을 青少年暴力 · 虐待 등 青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 · 救濟함으로써 青少年이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9.2.5〉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 2. 5, 1999. 3. 31, 2001. 4. 7, 2001. 5. 24, 2004. 1. 29, 2004. 12. 31, 2005. 3. 24〉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媒體物"이라 함은 第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青少年有害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青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각 審議機關이 青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議決 또는 決定(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청소년위원회가 告示하거나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青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確認하여 청소년위원회가 告示한 媒體物
4. "青少年有害藥物등"이라 함은 青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가목 (1) 내지 (7)에 해당하는 藥物(이하 "青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青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物件(이하 "青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青少年有害藥物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酒類
   (2)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麻藥法
   (4) 削除 〈2000. 1. 12〉

⑸ 削除 〈2000.1.12〉

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幻覺物質

⑺ 기타 中樞神經에 작용하여 習慣性, 中毒性, 耐性 등을 유발하여 人體에 有害作用을 미칠 수 있는 藥物 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심각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藥物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위원회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나. 靑少年有害物件

⑴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조장하는 性器具 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深刻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性관련 物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⑵ 靑少年에게 淫亂性 · 暴惡性 · 殘忍性 · 射倖性 등을 조장하는 玩具類 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深刻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物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5. "靑少年有害業所"라 함은 靑少年의 出入과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가目의1에 해당하는 業所(이하 "靑少年出入 · 雇傭禁止業所"라 한다)와 靑少年의 出入은 可能하나 雇傭은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나目의1에 해당하는 業所(이하 "靑少年雇傭禁止業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業所의 구분은 그 業所가 營業을 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요구되는 許可 · 認可 · 登錄 · 申告등의 與否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營業行爲를 기준으로 한다.

가. 靑少年出入 · 雇傭禁止業所

⑴ 「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⑵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⑶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舞蹈學院業, 舞蹈場業

⑷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射倖行爲營業

⑸ 電氣通信設備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通信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⑹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 · 生産 · 流通하는 營業 등 靑少年의 出入과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나. 靑少年雇傭禁止業所

⑴ 「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宿泊業, 理容業, 沐浴場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⑶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 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⑷ 삭제 〈2004. 1. 29〉
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⑹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⑺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 · 生産 · 流通하는 營業 등 靑少年의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6. "流通"이라 함은 媒體物 또는 藥物 등을 販賣(街頭販賣 · 自動販賣機 · 通信販賣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貸與, 配布, 放送(綜合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公演, 上映, 展示, 陳列, 廣告하거나 視聽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目的으로 媒體物 또는 藥物등을 印刷 · 複製 또는 輸入하는 행위를 말한다.
7. "靑少年暴力"이라 함은 暴力을 통해 靑少年에게 身體的 · 精神的 被害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 (家庭의 役割) 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보호하는 者(이하 "親權者 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 靑少年有害業所 · 靑少年暴力 · 虐待 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制止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第4條 (社會의 責任) ① 누구든지 靑少年이 靑少年有害環境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靑少年暴力 · 虐待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制止 · 善導하여야 하며,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 등이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이 雇傭되어 있거나 出入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靑少年暴力 · 虐待 등으로부터 被害를 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機關 등에 申告 · 告發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② 媒體物과 藥物 등의 流通을 業으로 하거나 靑少年有害業所의 경영을 業으로 하는 者와 이들로 구성된 團體와 協會 등은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지 아니하

도록 하고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自律的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① 國家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에 필요한 施策을 講究·施行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는 해당지역안의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電子·通信技術 및 醫藥品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媒體物과 藥物 등이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認識하고, 이들 媒體物과 藥物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國家間의 協力體制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關聯團體등 民間의 自律的인 有害環境監視·告發活動을 奬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을 規制함에 있어 그 義務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 2. 5〉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靑少年有害環境의 規制에 관한 刑事處罰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9. 2. 5〉

第 2 章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對象 流通 規制

第7條 (媒體物의 範圍) 이 法에서 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2005. 3. 24〉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삭제 〈2001. 5. 24〉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規定에 의한 映畵·演劇·音樂·舞踊, 기타 娛樂的 觀覽物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規定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經濟·産業·科學·宗敎分野를 제외한다), 一般週刊新聞(政治·經濟分野를 제외한다), 特殊週刊新聞(經濟·産

業 · 科學 · 時事 · 宗敎分野를 제외한다), 雜誌(政治 · 經濟 · 産業 · 科學 · 時事 · 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외의 刊行物중 漫畵 · 寫眞帖 · 畵報類 · 小說 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規定에 의한 看板 · 立看板 · 壁報 · 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商業的 廣告宣傳物과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각종 媒體物에 收錄 · 揭載 · 展示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商業的 廣告宣傳物
8.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 · 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媒體物

第8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 · 決定) 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媒體物의 倫理性 · 건전성의 審議를 할 수 있는 機關(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 29, 2005. 3. 24〉

② 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를 하지 아니할 경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3.24〉

③ 청소년위원회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1.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요청이 있는 媒體物
2.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 媒體物

④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媒體物 審議결과 그 媒體物의 내용이 刑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流通이 禁止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媒體物 결정을 하기 전에 關係機關에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각 審議機關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신설 1999. 2. 5, 2005. 3. 24〉

⑤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製作 · 發行의 목적 등에 비추어 靑少年이 아닌 자를 상대로 製作 · 發行되거나, 媒體物 각각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媒體物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媒體物의 種類, 題目, 內容 등을 特定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2005. 3. 24〉

⑥ 청소년위원회의 審議 決定方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24〉

第9條 (等級區分 등) ① 청소년위원회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시에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審議·決定하지 아니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의 정도, 利用靑少年의 年齡, 당해 媒體物의 特性, 利用時間과 場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媒體物의 等級을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② 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決定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의 대상·종류·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① 청소년위원회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당해 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1. 靑少年에게 性的인 欲求를 자극하는 煽情的인 것이거나 淫亂한 것
2. 靑少年에게 暴惡性이나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性暴力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暴力행사와 藥物의 濫用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과 市民意識의 形成을 저해하는 反社會的·非倫理的인 것
5.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國內社會에서의 一般的인 通念에 따르며 그 媒體物이 가지고 있는 文學的·藝術的·敎育的·醫學的·科學的 측면과 그 媒體物의 特性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靑少年有害與否에 관한 구체적인 審議基準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審議內容의 調整) 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각 審議機關間에 동일한 내용의 媒體物에 대하여 審議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審議內容의 調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審議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第12條 (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① 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決定하고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에 그 決定한 內容의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을 받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審議결과 그 決定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確認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이 確認을 한 경우 당해 媒體物의 確認을 필한 表示를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④ 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청소년에게 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의 決定없이 第14條 및 第15條의 규정에 준하는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⑤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 靑少年有害表示 및 包裝을 한 媒體物을 發見한 때에는 靑少年有害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⑥ 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한 媒體物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審議機關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본다.〈개정 2005. 3. 24〉

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與否의 決定과 確認의 節次 및 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 2. 5]

第13條 삭제〈2004. 1. 29〉

第14條 (表示義務) ①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 종류와 時期·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包裝義務) ①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包裝義務者,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販賣禁止등) ① 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 5. 24〉

②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구분 · 隔離등) ① 靑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靑少年에게 流通이 허용된 媒體物과 구분 · 隔離하지 아니하고서는 販賣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媒體物은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 2. 5〉

1.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를 設置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靑少年의 靑少年有害媒體物 구입행위 등을 制止할 수 있는 경우
2. 第2條第5號 가目의 靑少年出入 · 雇傭禁止業所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구분 · 隔離 및 販賣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放送時間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 廣告宣傳物중 放送을 이용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 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廣告宣傳 제한) ①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 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 또는 方法으로 공공연히 設置 · 附着 · 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 2. 5〉

1. 靑少年出入 · 雇傭禁止業所외의 業所
2.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
3.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通信

②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廣告宣傳物중 다른 媒體物과 기타 物件 등에 收錄 · 揭載 · 展示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媒體物과 기타 물건 등을 靑少年을 대상으

로 販賣 · 貸與 · 配布하거나 視聽 · 觀覽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宣傳物의 制限方法 · 場所, 기타 廣告制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 · 통보) ① 청소년위원회와 각 審議機關은 소관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한 때에는 당해 媒體物의 目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審議機關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目錄을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② 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의 目錄을 綜合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③ 청소년위원회는 각 審議機關, 靑少年 또는 媒體物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 · 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 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媒體物의 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 · 法人 · 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방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개정 1998. 2. 28〉

第22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① 청소년위원회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확인한 媒體物에 대하여는 이를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2001. 5. 24, 2005. 3. 24〉

② 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 청소년위원회에 당해 媒體物의 告示를 要請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2005. 3. 24〉

③ 청소년위원회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 事由와 效力發生時期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2005. 3. 2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개정 1998. 2. 28〉

第23條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取消 등) ① 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더 이상 靑少年에게 有害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을 取消하고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② 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 決定을 取消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4〉

③ 청소년위원회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取消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決定이 取消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2005. 3. 24〉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取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개정 1998. 2. 28〉

第23條의2 (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外國에서 製作·發行된 媒體物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媒體物을 청소년에게 流通(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5. 24〉

[본조신설 1999.2.5]

第 3 章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行爲 등의 規制〈개정 1999. 2. 5〉

第24條 (靑少年 雇用禁止 및 출입제한 등〈개정 1999. 2. 5, 2001. 5. 24〉)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 5. 24〉

②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出入者의 年齡을 確認하여 靑少年이 당해 業所에 出入하거나 利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 1. 29〉

④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靑少年이 親權者 등을 同伴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1. 29, 2005. 3. 24〉

⑤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당해 業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靑少年의 出入·利用과 雇傭을 제한하는 내용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9. 2. 5〉

第25條 (青少年通行禁止 · 制限區域의 지정 등〈개정 1999. 2. 5〉) ①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青少年에게 精神的 · 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區域을 青少年通行禁止區域 또는 青少年通行制限區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②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犯罪 또는 脫線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된 區域에 青少年의 通行을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通行禁止 · 制限區域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善導 및 團速方法 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主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9. 2. 5〉

④ 地方自治團體 및 管轄警察署長은 青少年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青少年通行禁止 · 制限區域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通行을 저지할 수 있으며, 通行하고 있는 青少年에 대하여는 해당區域 밖으로 退去시킬 수 있다.〈신설 1999. 2. 5〉

第26條 (青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青少年保護)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青少年有害藥物등을 판매 · 대여 ·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自動機械裝置 · 無人販賣裝置 · 通信裝置에 의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 · 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5. 24〉

② 청소년위원회는 青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青少年有害藥物 등과 관련이 있는 中央行政機關, 青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 · 團束機關, 기타 青少年保護를 위한 關聯團體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藥物流通을 業으로 하는 個人 · 法人 · 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有害藥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개정 1998. 2. 28〉

④ 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青少年有害藥物 등에 이를 準用한다.

第26條의2 (青少年有害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 2. 3, 2004. 1. 29〉

1. 營利를 目的으로 青少年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
2. 營利를 目的으로 青少年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遊興을 돋구는 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 매개하는 행위
3. 營利 또는 興行의 목적으로 青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4. 營利 또는 興行의 目的으로 靑少年의 障碍畸形 등 형상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 행위
5. 靑少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靑少年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6. 靑少年을 虐待하는 행위
7.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8. 靑少年에 대하여 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營業行爲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 ·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2.5]

제26조의3 (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①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제2조제5호 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 1. 29]

第 4 章 청소년보호센터 등 〈개정 2005. 3. 24〉

第27條 삭제 〈2005. 3. 24〉

第28條 삭제 〈2005. 3. 24〉

第28條의2 삭제 〈2005. 3. 24〉

第29條 삭제 〈2005. 3. 24〉

第30條 삭제 〈2005. 3. 24〉

第31條 삭제 〈2005. 3. 24〉

第32條 삭제 〈2005. 3. 24〉

第33條 삭제 〈2005. 3. 24〉

第33條의2 (靑少年保護센터등) ① 靑少年暴力 · 虐待등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靑少年保護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② 靑少年保護센터에는 被害를 당한 靑少年에게 法律相談, 訴訟業務代行등의 法律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專門辯護士를 둘 수 있다.

③ 靑少年暴力 · 虐待 등의 被害 · 加害靑少年 및 藥物로부터 고통을 받는 靑少年의 再活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靑少年再活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第33條의3 삭제 〈2005. 3. 24〉

第33條의4 삭제 〈2005. 3. 24〉

第 5 章 補則

第34條 (보고 등)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 1. 29〉

第35條 (檢査및 調査 등)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의 流通 및 靑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출입 등에 관련된 帳簿, 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 ·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當事者 ·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 29〉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 · 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4. 1. 29〉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 (收去 · 파기)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된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이 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되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거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

는 媒體物로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경우에는 그 所有者, 기타 당해 流通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그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의 收去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命令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收去命令을 받은 者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收去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2004. 1. 29〉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警察署長은 靑少年이 所有하거나 所持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酒類,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性器具와 같은 靑少年有害藥物등과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收去하여 廢棄 또는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신설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2005. 3. 24〉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警察署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 品名·數量·所有者 또는 所持者 및 그 處分內容 등을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1999. 2. 5, 2004. 1. 29〉

第37條 (是正命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2004. 1. 29〉

1. 第14條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자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 아니한 자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5.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6.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것을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陳列한 자
7.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 廣告宣傳物을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업소, 公衆이 通行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한 자 또는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機能이 없는 컴퓨터 通信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종류·節次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38條 (理由明示)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收去 · 파기와 是正命令의 처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第39條 삭제 〈2004. 1. 29〉

第40條 삭제 〈2004. 1. 29〉

第41條 삭제 〈2001. 5. 24〉

第42條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협조) ① 청소년위원회는 이 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② 청소년위원회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第43條 (證票交付 등) ① 청소년위원회는 靑少年有害環境淨化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民間의 監視 · 告發團體에 대하여 行政 · 財政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有害環境監視活動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證票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民間의 監視 · 告發團體에는 敎師를 포함시킬 수 있다.〈신설 1999. 2. 5〉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의 監視 · 告發團體의 具體的인 종류와 名稱은 總理令으로 정한다.〈개정 1998. 2. 28〉

第44條 (申告) ① 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 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29〉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褒賞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4. 1. 29〉

제44조의2 (선도 · 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중 그

내용 ·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 ·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 · 소속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 · 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본조신설 2001. 5. 24]

第45條 삭제 〈2002. 8. 26〉

제46조 (권한의 위탁) 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전문개정 2004. 1. 29]

第47條 (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 등) ① 特別市長 · 廣域市長 · 道知事(이하 "市 · 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區域內의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靑少年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개정 1999. 2. 5〉

② 特別市 · 廣域市 · 道의 管轄區域내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① 청소년위원회의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아닌 委員 또는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개정 2005. 3. 24〉

②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중 審議業務에 종사하는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또는 法人 · 團體의 委員, 任員, 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第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개정 2005. 3. 24〉

제49조 (과징금) ① 청소년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고시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 · 영업소폐쇄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5. 3. 24〉

④ 청소년위원회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24〉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 · 지원
3. 민간의 청소년선도 · 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1. 29]

第 6 章 罰則

第49條의2 (罰則) 第26條의2第1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 2. 5]

第49條의3 (罰則) 第26條의2第2號 또는 第3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 2. 5]

第49條의4 (罰則) 第26條의2第4號 내지 第6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年 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 2. 5]

第5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 2. 5, 2000. 2. 3, 2001. 5. 24, 2004. 1. 29〉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한 자

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媒體物 등을 유통하게 한 자

2. 第24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雇用한 者
3. 第26條第1項의 규정에 違反하여 靑少年에게 第2條第4號 가目(6) 또는 (7)의 藥物 또는 나目의 物件을 販賣 · 貸與 · 配布한 자
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또는 靑少年有害藥物등을 收去하지 아니한 者

第5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 2. 5, 2001. 5. 24, 2004. 1. 29, 2005. 3. 24〉

1. 第14條, 제24조제5항,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등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者
3. 삭제〈2004. 1. 29〉
4. 삭제〈2004. 1. 29〉
5.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放送한 者
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宣傳物을 設置 · 附着하거나 配布한 者
7.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출입시킨 者
8.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酒類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販賣한 者

第52條 (罰則)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포장을 훼손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3條 (罰則)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係公務員의 檢査 및 調査를 拒否 · 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4條 (兩罰規定) 法人 · 團體의 代表者, 法人 · 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 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第53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 團體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4.1.29〉

第55條 (刑의 減輕) 第50條 내지 第52條의 罪를 범한 者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제56조 (과태료) ① 제37조제1항제1호 · 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 3. 2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 1. 29]

附則 〈제5297호, 1997. 3. 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 이내에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定款變更의 認可를 받을 경우 이 法에 의한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로 보며, 이 경우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는 종전의 社團法人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는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 1998. 2. 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16〉省略

〈17〉青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4項, 第22條第4項, 第23條第4項, 第26條第4項 및 第43條第2項중 "文化體育部令"을 각각 "總理令"으로 한다.

第45條第3項중 "文化體育部長官이 公報處長官과 協議하여"를 "文化觀光部長官이"로 한다.

〈18〉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附則 〈제5817호, 1999. 2. 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 내지 第31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青少年保護委員會 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 또는 委囑된 青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의 任期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법률의 廢止) 未成年者保護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4條 (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國民健康增進法 第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署長이 收去한 담배 · 酒類 또는 그와 관계된 物品 및 不良漫畵, 淫亂한 文書, 圖書, 音盤, 비디오物 기타 物件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반환 또는 폐기하고 이를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未成年者保護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未成年者出入制限區域은 이 法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青少年通行禁止區域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國民健康增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34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36條를 削除한다.

②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號, 第25條第2項중 "未成年者"는 각각 "19歲미만의 자"로 한다.

附則(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942호, 1999. 3. 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법률의 개정) ① 省略

②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 가目(3)중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을 "體育施設의설치 · 이용에관한法律"로 한다.

附則(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 2000. 1. 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중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 麻藥法의 規定에 의한 麻藥, 大麻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大麻"를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로 한다.

第50條第3號중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麻藥法, 大麻管理法"을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으로 한다.

④ 내지 ⑦ 省略

第9條 省略

부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261호, 2000. 2. 3〉

①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③ (다른 法律의 改正)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9號를 削除한다.

第50條第4號중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를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로 한다.

부칙(담배사업법) 〈제6460호, 2001. 4.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4)중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담배소매업"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6479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나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호중 "19歲미만의 자를"을 "청소년(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9歲미만의 자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未成年者를"을 "청소년을"으로 한다.

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9歲미만의 男女를"을 "靑少年保護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부칙(출판및인쇄진흥법) 〈제6721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7161호, 2004.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소의 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187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 · 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 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23호, 2005. 3. 24〉

① (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한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4. 1. 20 법률 제07078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罪를 범한 者로서 再犯防止를 위하여 保護觀察, 社會奉仕·受講 및 更生保護등 체계적인 社會내 處遇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指導·援護를 함으로써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犯罪豫防活動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公共의 福祉를 增進함과 아울러 社會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國民의 協力등) ① 모든 國民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地位와 能力에 따라 協力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罪를 범한 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保護善導事業을 육성할 責任을 진다.

第3條 (對象者) ① 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刑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
2.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
3. 刑法 第73條의2 또는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
4.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
5.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도록 規定된 者

②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하여야 할 者(이하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
2. 少年法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을 받은 者
3.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받도록 規定된 者

③ 更生保護를 받을 者(이하 "更生保護對象者"라 한다)는 刑事處分 또는 保護處分을 받은 者로서

自立更生을 위한 숙식제공, 여비지급, 生業道具 · 生業造成金品의 지급 또는 貸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者로 한다.

第4條 (운영의 기준) 保護觀察, 社會奉仕 · 受講 또는 更生保護는 당해 對象者의 敎化 · 개선 및 犯罪豫防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해 對象者의 연령 · 경력 · 心身狀態 · 가정환경 · 교우관계 기타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第 2 章 保護觀察機關

第1節 保護觀察審査委員會

第5條 (設置) ① 保護觀察에 관한 사항을 審査 · 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査委員會는 高等檢察廳 소재지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設置한다.

第6條 (管掌事務) 審査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 · 決定한다.

1. 假釋放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2. 假退院과 그 取消에 관한 사항
3. 保護觀察의 假解除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4. 保護觀察의 정지와 그 取消에 관한 사항
5. 假釋放중인 者의 不定期刑의 종료에 관한 사항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審査委員會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7. 第1號 내지 第6號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 (구성)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高等檢察廳소속 檢事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한다.〈개정 2004. 1. 20〉

③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判事 · 檢事 · 辯護士 · 保護觀察所長 · 地方矯正廳長 · 矯導所長 · 少年院長 및 保護觀察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 審査委員會의 委員중 常任委員을 두되, 그 數는 3人이내로 한다.

第8條 (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非常任委員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第9條 (委員의 해임 및 해촉)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心身障碍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 ·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委員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第10條 (委員의 身分등) ① 常任委員은 2級 내지 4級상당의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한다.

② 常任委員이 아닌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豫算의 범위안에서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第11條 (審査) ① 審査委員會는 審査資料에 의하여 第6條 各號의 사항을 審査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護觀察對象者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常任委員 또는 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審査委員會는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 · 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第12條 (議決 및 決定) ①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審査委員會의 會議는 非公開로 한다.

③ 決定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委員이 記名捺印한 文書로써 한다.

第13條 (명칭 · 관할구역 · 운영 등) 審査委員會의 명칭 · 관할구역 및 職務범위와 委員의 任命 또는 위촉 기타 審査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保護觀察所

第14條 (保護觀察所의 設置) ① 保護觀察, 社會奉仕 · 受講 및 更生保護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保護觀察所를 둔다.

② 保護觀察所의 事務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保護觀察支所를 둘 수 있다.

第15條 (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 保護觀察所(保護觀察支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1. 保護觀察의 실시 및 社會奉仕命令 · 受講命令의 집행
2. 更生保護의 실시
3. 檢事가 保護觀察官의 善導를 조건으로 公訴提起를 유예하고 위탁한 善導의 실시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에 대한 敎育訓練 및 業務指導
5. 犯罪豫防活動
6.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保護觀察所의 管掌事務로 規定된 사항

第16條 (保護觀察官) ① 保護觀察所에는 第15條 各號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保護觀察官을 둔다.

② 保護觀察官은 刑事政策學 · 行刑學 · 犯罪學 · 社會事業學 · 敎育學 · 心理學 기타 保護觀察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第17條 (保護觀察所의 명칭등) 保護觀察所의 명칭 · 관할구역 · 조직 및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 ① 犯罪豫防活動을 행하고, 保護觀察活動과 更生保護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하 "犯罪豫防委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犯罪豫防委員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위촉한다.

③ 犯罪豫防委員의 명예와 이 法에 의한 활동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犯罪豫防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犯罪豫防委員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직무의 구체적 내용, 조직, 비용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第 3 章 保護觀察

第1節 判決前調査

第19條 (判決前調査) ① 法院은 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59條의2 및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保

護觀察,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法院의 소재지 또는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犯行의 動機, 職業,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등 被告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書面으로 당해 法院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 保號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第1項의 요구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調査進行狀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第2節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第20條 (判決의 통지등) ① 法院은 刑法 第59條의2 또는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명하는 判決을 宣告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 謄本 및 준수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그 의견 기타 保護觀察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法院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第3節 假釋放 및 假退院

第21條 (矯導所長등의 通報義務) ① 矯導所 · 拘置所 · 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의 宣告를 받은 少年(이하 "少年受刑者"라 한다)이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矯導所 · 拘置所 · 少年矯導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少年院長은 保護少年이 收容후 6月을 경과한 때에는 당해 少年院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第22條 (假釋放 및 假退院의 申請) ① 矯導所 · 拘置所 · 少年矯導所 및 少年院(이하 "收容機關"이라 한다)의 長은 少年法 第65條의 기간을 경과한 少年受刑者 또는 收容중인 保護少年에 대하여 矯正成績이 양호하고 再犯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審査委員會에 假釋放 또는 假退院의 審査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에 있어서는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環境調査 및 環境改善活動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第23條 (假釋放 및 假退院의 審査와 決定) ① 審査委員會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 또는 保護少年에 대한 假退院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통보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職權으로 假釋放 및 假退院의 適否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③ 審査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年受刑者에 대한 假釋放의 適否를 審査하는 때에는 保護觀察의 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④ 審査委員會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本人의 人格·矯正成績·직업·생활태도·가족관계 및 再犯危險性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24條 (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의 審査와 決定) ① 審査委員會는 行刑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되는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의 필요성 여부를 審査하여 決定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審査를 할 때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事案調査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第25條 (法務部長官의 許可) ① 審査委員會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결과 假釋放 또는 假退院이 적합하다고 決定한 경우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 결과 保護觀察이 필요없다고 決定한 경우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4節 環境調査 및 環境改善活動

第26條 (環境調査) ① 收容機關의 長은 少年受刑者 및 少年法 第32條第1項第6號·第7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이하 "收容者"라 한다)를 收容한 때에는 지체없이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身上調査書를 송부하여 環境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收容者의 犯罪 또는 非行의 動機, 收容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生計對策등을 조사하여 收容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收容者를 面談하거나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第27條 (環境改善活動)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調査 결과에 따라 收容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本人·가족·관계인의 同意 또는 協力을 얻어 本人의 環境改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收容機關의 長에게 收容者의 面談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活動의 실시결과를 收容機關의 長과 收容機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8條 (成人受刑者에 대한 保護觀察事案調査) ①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懲役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成人(이하 "成人受刑者"라 한다)에 대하여 行刑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審査委員會에 假釋放審査申請을 하는 때에는 그 申請과 동시에 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 名單과 身上調査書를 당해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審査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審査委員會는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으로부터 假釋放審査申請對象者의 名單과 身上調査書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成人受刑者를 面談하여 직접 第26條第2項에 規定된 사항, 釋放후의 再犯危險性 및 社會生活에 대한 適應可能性등에 관한 조사(이하 "保護觀察事案調査"라 한다)를 하거나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소재지 또는 당해 成人受刑者의 居住豫定地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그 자료를 송부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의뢰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은 지체없이 保護觀察事案調査를 행하고 그 결과를 審査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矯導所·拘置所·少年矯導所의 長은 審査委員會 또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 保護觀察事案調査를 위하여 成人受刑者의 面談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節 保護觀察의 실시

第29條 (保護觀察의 開始 및 申告) ① 保護觀察은 法院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 또는 假釋放·假退院된 때부터 開始된다.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居·職業·生活計劃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0條 (保護觀察의 기간)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1.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者는 1年
2.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猶豫기간. 다만, 法院이 保護觀察期間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3. 假釋放者는 刑法 第73條의2 또는 少年法 第66條에 規定된 기간
4. 假退院者는 退院日부터 6月이상 2年이하의 범위내에서 審査委員會가 정한 기간
5.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保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法律에 정한 기간
6. 다른 法律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을 받는 者는 그 法律에서 정한 기간

第31條 (保護觀察擔當者)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소속 保護觀察官이 담당한다.

第32條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 ① 保護觀察對象者는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社會人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保護觀察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에 常住하고 生業에 종사할 것
2. 犯罪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習慣을 버리고 善行을 하며 犯罪를 행할 우려가 있는 者들과 交際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保護觀察官의 指導·監督 및 訪問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 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 申告할 것

③ 法院 및 審査委員會는 判決의 宣告 또는 決定의 告知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書面으로 이를 告知하여야 한다.

第33條 (指導·監督)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의 再犯을 방지하고 건전한 社會復歸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指導·監督을 한다.

② 第1項의 指導·監督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保護觀察對象者와 긴밀한 接觸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環境등을 觀察하는 것
2. 保護觀察對象者에 대하여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指示를 하는 것
3.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第34條 (援護) ① 保護觀察官은 保護觀察對象者가 自助의 노력을 함에 있어 그의 개선과 自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援護를 한다.

② 第1項의 援護의 방법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宿所 및 就業의 알선

2. 職業訓練機會의 제공
3. 環境의 개선
4.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를 위하여 필요한 援助의 제공

第35條 (應急救護)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에게 負傷·疾病 기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救護를 할 수 있다.

第36條 (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4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援護 및 應急救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國·公立機關,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 許可를 받은 者 또는 韓國更生保護公團 기타 團體에 대하여 宿食제공 기타 적절한 援助 또는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費用은 國家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第37條 (保護觀察對象者등의 조사)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保護觀察對象者 기타 관계인을 召喚하여 審問하거나 소속保護觀察官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자료의 閱覽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職務를 담당하는 者는 職務상 秘密을 嚴守하고, 保護觀察對象者 및 관계인의 人權을 존중하며, 保護觀察對象者의 건전한 社會復歸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第38條 (警告)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刑의 執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警告할 수 있다.

第39條 (拘引)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疑心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地方檢察廳의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拘引狀을 발부받아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召喚에 불응한 때
3.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第1項의 拘引狀은 檢事의 指揮에 의하여 保護觀察官이 執行한다. 다만, 保護觀察官이 執行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 있다.

第40條 (緊急拘引)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保護觀察對象者가 第3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拘引狀을 발부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拘引狀 없이 당해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당해 保護觀察對象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拘引狀을 발부받을 時間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 경우에는 緊急拘引書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地方檢察廳 檢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保護觀察對象者를 釋放하여야 한다.

第41條 (拘引期間) 保護觀察所의 長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對象者를 拘引한 때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護觀察所등에 引致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釋放하여야 한다.

第42條 (留置)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申請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한 保護觀察對象者를 收容機關 또는 少年分類審査院에 留置할 수 있다.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請求申請
2.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申請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의 變更申請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留置는 保護觀察對象者를 引致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 받아 행한다.

③ 保護觀察所의 長은 留置許可를 받은 때부터 24時間이내에 第1項 各號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④ 檢事는 保護觀察所의 長으로부터 第1項第1號의 申請을 받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48時間이내에 관할地方法院에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또는 執行猶豫의 取消를 請求하여야 한다.

第43條 (留置期間) ①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留置의 기간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院의 許可를 받은 날부터 20日로 한다.

② 第42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法院은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審級마다 2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 第4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의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保護觀察所의 長이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地方法院判事의 許可를 받아 10日의 범위내에서 1次에 한하여 留置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第44條 (留置의 解除) 保護觀察所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留置를 解除하고 保護觀察對象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1. 檢事가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2. 法院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의 請求를 棄却한 때
3. 審査委員會가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4. 法務部長官이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申請을 不許한 때
5. 法院이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을 棄却한 때

第45條 (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留置된 者에 대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執行猶豫의 取消 또는 假釋放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그 留置期間을 刑期에 算入한다.

第46條 (準用) 刑事訴訟法 第72條(拘束과 이유의 告知), 第75條(拘束令狀의 方式), 第82條(數通의 拘束令狀의 作成), 第83條(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第85條(拘束令狀執行의 節次)第1項 · 第3項 · 第4項, 第86條(護送中의 假留置), 第87條(拘束의 通知),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第204條(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통지),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및 第214條의3(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의 規定은 保護觀察對象者의 拘引 및 留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節 保護觀察의 종료

第47條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 ① 刑法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宣告猶豫의 失效 및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猶豫의 取消는 檢事가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法院에 請求한다.

② 刑事訴訟法 第335條(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의 規定은 第1項의 失效 및 取消節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釋放 및 假退院의 取消를 審査하여 決定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결과 假釋放 또는 假退院을 取消함이 적합하다고 決定한 때에는 決定書에 관계書類를 첨부하여 法務部長官에게 이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여야 하며, 法務部長官은 審査委員會의 決定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49條 (保護處分의 변경) ① 保護觀察所의 長은 少年法 第32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保護處分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받고 있는 者가 保護觀察期間중 第32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保護觀察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法院에 保護處分의 변경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處分變更에 있어서는 申請對象者가 20歲이상인 경우에도 少年法 第2條 및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法 第2章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50條 (不定期刑의 종료등) ① 少年法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宣告를 받은 후 假釋放된 者가 그 刑의 短期가 경과하고 保護觀察의 目的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同法 第66條에 정한 기간전이라도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刑의 執行을 종료한 것으로 決定할 수 있다.

② 假退院者가 假退院이 取消됨이 없이 保護觀察期間을 경과한 때에는 退院된 것으로 본다.

第51條 (保護觀察의 종료) ① 保護觀察은 保護觀察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保護觀察期間이 경과한 때
2. 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가 失效되거나 刑法 第63條 또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執行猶豫가 失效 또는 取消된 때
3. 第48條의 規定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假釋放 또는 假退院이 失效 또는 取消된 때
4.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處分이 변경된 때
5.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不定期刑 종료 決定이 있는 때
6. 保護觀察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第52條 (假解除) ① 審査委員會는 保護觀察對象者의 成績이 良好한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假解除할 수 있다.

② 假解除중에는 保護觀察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保護觀察對象者의 준수사항에 대한 遵守義務는 계속된다.

③ 審査委員會는 假解除決定을 받은 者에 대하여 다시 保護觀察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假解除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解除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그 假解除期間을 保護觀察期間에 算入한다.

第53條 (保護觀察의 정지) ① 審査委員會는 假釋放 또는 假退院된 者의 所在를 알 수 없어 保護觀察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保護觀察所의 長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保護觀察을 정지하는 決定(이하 "停止決定"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觀察을 정지한 者의 所在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그 정지를 解除하는 決定(이하 "停止解除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保護觀察停止중인 者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된 때에는 拘引된 날에 停止解除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刑期 또는 保護觀察期間은 停止決定이 있는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停止解除決定이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

⑤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止決定을 한 후 所在不明이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정등 保護觀察對象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停止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停止決定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7節 保護觀察事件의 移送등

第54條 (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審査委員會 및 保護觀察所의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證人으로 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職務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에 대하여 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本人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公益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5條 (保護觀察事件의 移送) 保護觀察所의 長은 保護觀察對象者가 주거지를 移動한 때에는 新住居地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保護觀察事件을 移送할 수 있다.

第56條 (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軍事法院法 第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7條 (刑事訴訟法의 準用) 保護觀察의 실시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8條 (行刑法適用의 一部排除) 이 法(第28條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에 관하여는 行刑法 第49條 내지 第52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 4 章 社會奉仕 및 受講

第59條 (社會奉仕命令 · 受講命令의 범위)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를 명할 때에는 500時間, 受講을 명할 때에는 200時間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法院은 第1項의 경우에 社會奉仕 · 受講命令對象者가 社會奉仕를 하거나 受講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第60條 (判決의 통지등) ① 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명하는 判決을 宣告한 때부터 10日이내에 判決文謄本을 被告人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法院은 그 의견 기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法院 또는 法院의 長은 第1項의 통지를 받은 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狀況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第61條 (社會奉仕 · 受講命令 執行擔當者) ①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은 保護觀察官이 이를 執行한다. 다만, 保護觀察官은 國 · 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그 執行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② 保護觀察官이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國 · 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委託한 경우에는 이를 法院 또는 法院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法院은 法院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社會奉仕 또는 受講할 施設 또는 講義가 社會奉仕 · 受講命令對象者의 敎化 · 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 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執行의 委託을 取消할 수 있다.

④ 保護觀察官은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公立機關 기타 團體에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第62條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 ①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직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保護觀察所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保護觀察官의 執行에 관한 指示에 따를 것
2. 住居를 移轉하거나 1月이상의 國內外旅行을 할 때에는 미리 保護觀察官에게 申告할 것

③ 法院은 判決의 宣告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준수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本人의 特性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科할 수 있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준수사항은 이를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第63條 (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社會奉仕·受講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社會奉仕命令 또는 受講命令의 執行을 완료한 때
2. 刑의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3. 刑法 第6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猶豫의 宣告가 取消된 때
4. 社會奉仕·受講命令 執行期間중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

第64條 (準用) ① 第34條(援護), 第35條(應急救護), 第36條(更生保護事業者등의 援助 및 協力), 第54條(職務上秘密과 證言拒否), 第55條(保護觀察事件의 移送), 第56條(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例) 및 第57條(刑事訴訟法의 準用)의 規定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 第37條(保護觀察對象者등의 調査), 第38條(警告), 第39條(拘引), 第40條(緊急拘引), 第41條(拘引期間), 第42條(留置), 第43條(留置期間), 第44條(留置의 解除), 第45條(留置期間의 刑期算入), 第46條(準用) 및 第47條(保護觀察을 조건으로 한 刑의 宣告猶豫의 失效 및 執行猶豫의 取消)의 規定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의 준수사항이나 命令違反으로 인한 警告·拘引·留置 및 執行猶豫의 取消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5 章 更生保護

第1節 更生保護의 방법 및 開始

第65條 (更生保護의 방법) ① 更生保護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宿食提供
2. 旅費支給
3. 生業道具·生業造成金品의 지급 또는 貸與
4. 職業訓練 및 就業斡旋
5. 更生保護對象者에 대한 自立支援
6. 第1號 내지 第5號의 보호에 부수하는 善行指導

② 第1項 各號의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6條 (更生保護의 申請 및 措置) ① 更生保護對象者 및 관계機關은 保護觀察所의 長,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韓國更生保護公團에 更生保護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보호의 필요여부와 보호하기로 한 경우 그 방법을 決定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更生保護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節 更生保護事業者

第67條 (更生保護事業의 許可) ① 更生保護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法務部長官은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許可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68條 (許可의 기준) 法務部長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更生保護事業에 필요한 經濟的 能力을 가질 것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申請者가 社會的 信望이 있을 것
3. 更生保護事業의 조직 및 會計處理基準이 공개적일 것

第69條 (報告義務)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年度의 事業計劃과 前年度의 會計狀況 및 事業實績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70條 (更生保護事業의 許可取消등)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때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條件에 위반한 때
3.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6月이내에 更生保護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更生保護事業의 實績이 없는 때
5.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삭제〈1997.12.13〉

第70條의2 (청문) 法務部長官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者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13]

第3節 韓國更生保護公團

第71條 (韓國更生保護公團의 設立) 更生保護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更生保護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第72條 (法人格)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第73條 (事務所) ① 公團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部 및 支所를 둘 수 있다.

第74條 (定款) ① 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 · 支所에 관한 사항
4. 基金에 관한 사항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에 관한 사항
7. 業務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公告에 관한 사항
10.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 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75條 (登記) 公團은 그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76條 (任員 및 그 任期) ① 公團에 理事長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② 理事長은 法務部長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③ 理事는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있고,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하며,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理事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監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法務部長官이 任命하며,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77條 (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公團을 代表하고 公團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 監事는 公團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③ 理事長 아닌 理事와 監事는 非常勤으로 할 수 있다.

第78條 (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79條 (任員의 해임) ① 任員이 第7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當然退職된다.

② 法務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任員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更生保護事業에 熱誠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義務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한 때
3.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任員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第80條 (理事會) ① 公團의 業務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81條 (職員의 任免) 公團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任免한다.

第82條 (公團의 사업) 公團은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更生保護의 실시
2. 更生保護制度의 調査·研究 및 普及·弘報
3. 更生保護事業을 위한 收益事業의 경영
4. 公團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사업

第83條 (公團의 資産) 公團은 다음 各號의 財産을 그 資産으로 한다.

1. 公團이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 기타의 財産
2. 國庫補助金
3. 資産으로부터 생기는 果實
4. 기타 收入

第84條 (公團의 事業計劃등) ① 公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다음 會計年度에 실시할 公團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公團은 法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종료후 前年度의 事業實績과 決算을 法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85條 (寄附金品의 보고) 公團은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寄贈받은 金品이 있는 때에는 그 接受狀況 및 處理狀況을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86條 (更生保護基金의 設置) 更生保護事業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公團에 更生保護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87條 (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2. 公團의 사업으로 생기는 收入金
3.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第88條 (基金의 運用 · 관리) ① 基金은 公團이 運用 · 관리한다.

② 基金의 運用 ·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9條 (基金의 사용) 基金은 第82條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第90條 (資金의 借入) 公團은 基金運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 부담으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第91條 (利益金의 처리) 公團은 매 事業年度의 決算 결과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基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第92條 (準用) 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93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4節 更生保護事業의 지원 및 監督

第94條 (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第95條 (租稅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更生保護事業에 대하여 租稅減免規制法 및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 또는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96條 (收益事業) ① 事業者 또는 公團이 更生保護事業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마다 法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法務部長官은 收益事業을 하는 事業者 또는 公團이 收益을 更生保護事業외의 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收益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97條 (監督) ①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을 指揮·監督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事業者 및 公團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 및 公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98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法에 의한 公團이 아닌 者는 韓國更生保護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法에 의한 事業者가 아닌 자는 更生保護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 6 章 罰則

第9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更生保護事業의 명목으로 營利行爲를 한 者
2. 更生保護事業의 許可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更生保護事業의 目的에 반하여 營利行爲를 한 者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第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5. 第9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10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5178호, 1996. 12. 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保護善導委員 및 更生保護委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保

護善導委員 및 更生保護委員은 이 法에 의한 犯罪豫防委員으로 본다.

第3條 (更生保護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更生保護事業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韓國更生保護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韓國更生保護公團은 이 法에 의한 韓國更生保護公團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 少年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중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을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22條第1項"으로 한다.

第48條중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51條"를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 第48條"로 한다.

②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 12. 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검찰청법) 〈제7078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2급 또는 3급상당 상임위원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 · 행형학 · 범죄학 · 사회사업학 · 교육학 ·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5년이상 재직한 자
4. 4급이상의 교정직 · 보도직 · 보호관찰직 · 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5. 한국갱생보호공단의 3급이상 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② 심사위원회의 4급상당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형사정책학 · 행형학 · 범죄학 · 사회사업학 · 교육학 · 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3.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한 자
4. 5급의 교정직 · 보도직 · 보호관찰직 · 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5. 한국갱생보호공단의 4급직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③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심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소 · 구치소 · 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 보호관찰관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 · 공립기관 기타 단체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은 심사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 및 결정)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는 때에는 토의를 거친 후 의결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판결전 조사)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8조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및 보호소년에 대한 기간경과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새인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신청)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직권심사)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 법 제48조제1항, 법 제50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 제3항 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 또는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가석방등의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2. 자립 · 갱생의 의욕이 인정될 것
3.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4. 사회의 감정이 가석방 또는 가퇴원을 용인한다고 인정될 것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조사) 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 제7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수인 · 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4. 수용전의 직업 · 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7. 기타 참고사항

제13조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 · 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관찰사안조사) 교도소 · 구치소 · 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59조의2 또는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2. 형법 제73조의2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때
3.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

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성명, 주거, 주거이전예정지 또는 여행지, 주거이전이유 또는 여행목적, 주거이전일자 또는 여행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안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과하는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보호관찰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등으로 보아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개선 ·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 사항이어야 한다.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질병 · 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어 구호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구인대상자의 성명 · 연령 · 직업 및 주거
2.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인치할 장소
5. 구인장의 유효기간
6. 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제24조 (구인장의 방식)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 · 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구인장의 집행의뢰) 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긴급구인승인신청등) ①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승인신청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긴급구인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처분명 · 주거 · 직업 · 보호관찰사건번호 및 보호관찰기간
2. 긴급구인한 일시 및 장소
3. 긴급구인한 사유

제27조 (구인후 조사 및 심문) ① 보호관찰관은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8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유치대상자의 성명 · 연령 · 직업 및 주거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 · 성명 · 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인 · 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 · 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 연령 ·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실효 및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검사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①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의 성명 · 연령 · 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처분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기타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심리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사회봉사 · 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8조 (사회봉사 · 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 ·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①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 제19조(특별준수사항) 및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 제24조(구인장의 방식) ·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 제30조(구인 · 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및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의 규정은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으로 인한 경고 · 구인 · 유치 및 집행유예의 취소등의 절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갱생보호)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② 갱생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갱생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숙식제공)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 ·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여비지급)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비지급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①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도구 또는 금품의 회수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정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 (직업훈련) 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 (취업알선) 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 (자립지원) 법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알선, 호적취적 · 주민등록 · 결혼주선 · 입양 및 의료시혜등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 삭제〈1997 · 12 · 31〉

제48조 (기금의 운용 · 관리)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 (기금의 운용 · 관리계획) ① 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 · 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 ·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업별 · 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부칙 〈제15217호, 1996. 12. 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12.31 법무부령 제44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결정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① 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실적이 없는 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행위가 있는 때
3.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기간동안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범죄예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2.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3. 범법자에 대한 취업알선·재정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3조 (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용자의 이송통지) ① 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기관"이라 한

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기관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송통지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기관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석방등의 심사신청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제18조 (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신고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이나 소년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보를 받거나 심사위원회로부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단등의 송부를 받은 때 또는 영 제16조 또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 및 원호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원호 · 조치상황 · 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요청한 범죄예방위원 또는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보호관찰관은 법 제3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경고장)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구인장신청서등)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인장)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32조 (긴급구인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 (유치허가장)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 (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가해제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가해제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 (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 (보호관찰사건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7조 (준용)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및 제46조(보호관찰사건이송)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기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건물 기타 설비(이하 "갱생보호시설"이라 한다)는 그 위치 · 규모 및 구조등에 있어서 갱생보호사업의 종류별 내용에 따른 갱생보호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 · 관리되어야 한다.

제49조 (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대상자와

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생활관)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 · 집회실 · 조리장 · 식당 · 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실 · 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면담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 · 연령 · 학력 · 가정사정 · 교우관계 및 자립계획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 · 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4조 (분류수용)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 · 전과 · 성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6조 (건강관리) ① 생활관에서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 (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 (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교양 및 여가활동) ①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 · 훈화 · 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4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 (여비의 지급)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소요거리 · 시간을 고려하여 운임 · 식비 · 숙박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62조 (의복의 지급) 갱생보호대상자의 의복이 남루하거나 계절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함에 있어서는 지급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목적, 반환의 가능성 및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정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4조 (생업도구 · 생업조성금품의 사후관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차용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갱생보호대상자가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적절하게 관리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65조 (직업훈련) ①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 · 적성 · 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분야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취업알선등) 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7조 (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 · 주소 · 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제69조 (허가조건) 법무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갱생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사항
2. 갱생보호의 실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제70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6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 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72조 (공단의 사업계획등) ① 공단은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 · 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외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 · 예산 · 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3조 (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4조 (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5조 (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월별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 · 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제76조 (개선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 ·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 (회계) ① 사업자 및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공단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회계와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장부의 비치) 사업자 및 공단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의 명부
2. 갱생보호현황 장부
3. 회계에 관한 장부

4. 기부금품대장

5. 보관금품대장

6. 기타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

부칙 〈제442호,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개정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범죄예방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 ·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의무) 법무부 산하기관 · 단체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2 장 범죄예방위원

제3조(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3.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학교폭력 범죄예방 활동 전개
5. 의료시혜, 약품지원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전개

제3조의 2(성실의무 등) ① 범죄예방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범죄예방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의 위 · 해촉에 대한 권한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에의 조회등)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호관찰(지)소장은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신임교육, 전문화교육, 재교육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신임 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위촉후 6월 이내에 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갱생보호, 학교폭력예방 등 직무별로 실시하며, 일반인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전문화 교육에 참여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육 수료전에범죄예방위원으로위촉한다.

⑥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보호관찰지(소)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 3 장 범죄예방지도위원회

제8조(설치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범죄예방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지도위원회의 명칭은 '○○지방검찰청 (○○지청)범죄예방지도위원회' 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지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② 범죄예방 전담검사, 관할 보호관찰(지)소장 · 한국갱생보호공단 지부장, 해당지역의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의 회장은 지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중에서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검사, 검찰청 직원 또는 관할 보호관찰(지)소의 보호관찰관중에서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장사무)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예방위원 위 · 해촉 및 포상 상신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기타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위 · 해촉 및 포상 상신을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보조) ① 위원장은 지도위원회의 업무보조와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하는 보호관찰(지)소장 및 갱생보호공단 지부장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지)소장 및 갱생보호공단 지부장은 업무과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지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제1절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제13조(설치 및 명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 관할의 시 · 군 · 구에 지구협의회를 둔다.

④ 지구협의회는 범죄예방위원수를 감안하여 동일 시 · 군 · 구에 2개 이상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 지역협의회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내의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의 2(관장사무)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한 범죄예방사업계획 및 범죄예방대책 추진
2.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위 · 해촉 및 포상 건의
3. 범죄예방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4.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5. 범죄예방위원 및 지역협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
6. 기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사무소) 지역협의회의 사무소는 지방검찰(지)청 또는 보호관찰(지)소 내에 둔다. 다만, 지역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 ① 지역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5인이내

3. 감　사 : 2인이내

4. 운영실장 : 1인

②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전국연합회장은 지역협의회회장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지역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활동에 밝은 범죄예방위원중에서 각각 지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구협의회 대표들이 선출한다. 다만, 지역협의회의 사정에 따라 선출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운영실장은 회장이 선임한다.다만,운영실장은사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 ①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지구대표와 그외 회장이 범죄예방위원중에서 선임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제19조(고문) ① 지역협의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지역협의회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중에서 지역협의회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지역협의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보호관찰분과
2. 갱생보호분과
3. 학교폭력 등 선도예방분과(약칭 학교폭력예방분과)
4. 상담지도분과
5. 의약지원분과

② 지역협의회 회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 여성 · 교육 등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제21조(설치 및 명칭) ①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제22조(구성) ①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지역협의회로 구성한다.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연합회에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운영위원은 전국연합회장이 범죄예방위원 중 30인의 범위내에서 선임한다.

④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전국연합회에 범죄예방위원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의 2(관장사무)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2.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3.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4. 기타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임원)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10인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제24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 및 감사는 지역협의회 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지역협의회 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사무처장은 범죄예방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범죄예방활동

제25조(범죄예방활동의 전개) ① 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장과지역협의회장은범죄예방활동의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범죄예방대책 등 수립) ① 지역협의회장은 제10조 제2호의 범죄예방대책과 같은조 제3호의 범죄예방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도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범죄예방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할 것

2.범죄예방위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건의를 받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수립된 대책과 계획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회계년도)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운영규칙)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 및 지구협의회의 운영, 임원의 구성 · 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전국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와지역협의회는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비치서류)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위원 명부 및 연락처
2. 임원명부
3. 회의록
4 . 업무일지
5. 예산, 수입 ·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기타 회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0조(감독) 법무부장관은 각급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 ○ 지 방 검 찰 청(○ ○ 지청)

(　　)

년　　월　　일

수 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범죄예방지도위원장 (인)

참 조 : 소년선도보호책임 인수

제 목 : **지도위원회(정기, 임시) 회의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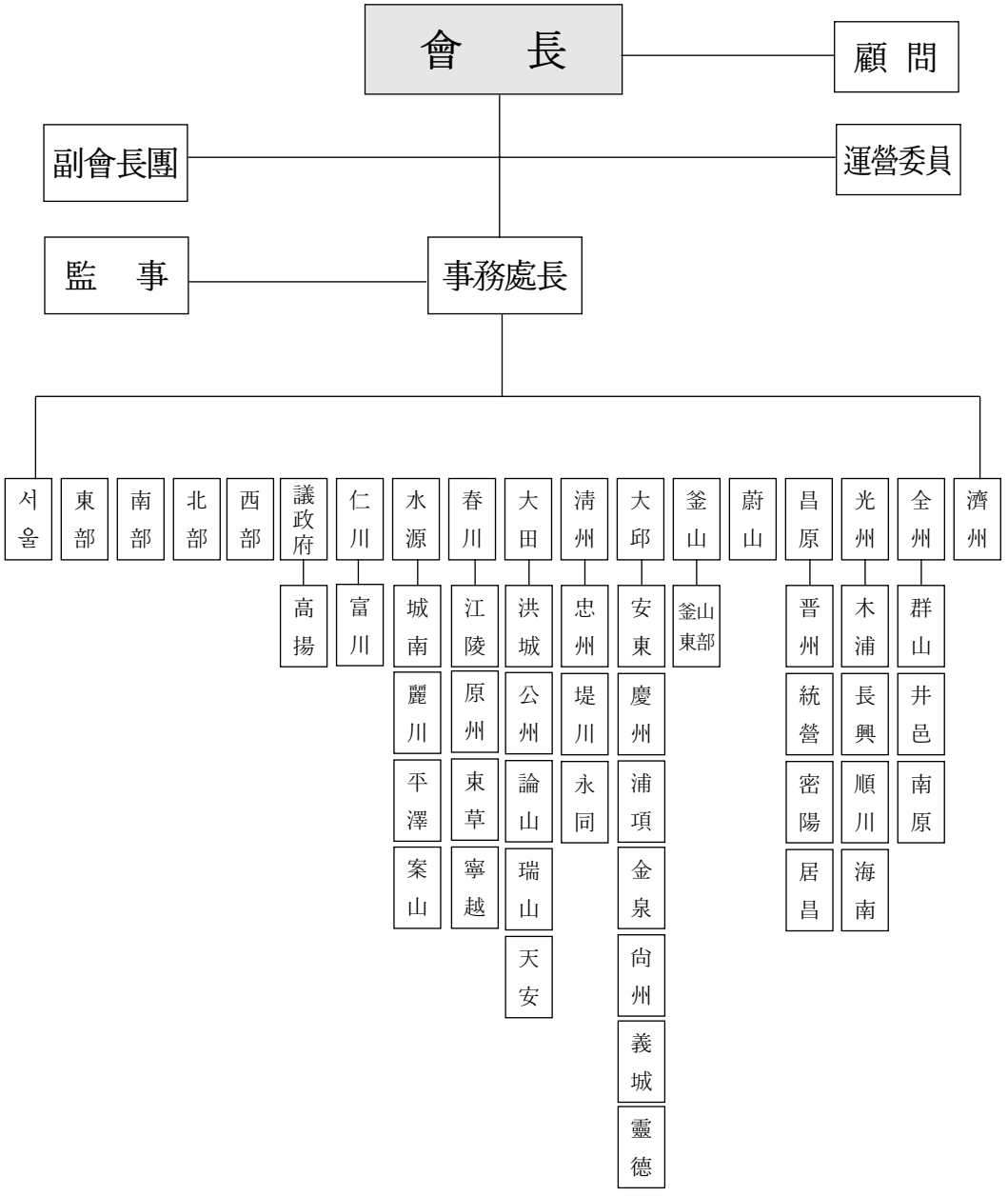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 제5항에 의거 지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 개최일시 및 장소 :	
○ 참 석 자 :　　외　　명	
○ 회의안건 :	• • •
○ 토의내용	
○ 조치결과	

범죄예방위원 연혁

- 1942. 3. 조선사법보호사업령에 의해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 지원하는 민간봉사자인 갱생보호위원(구 사법보호위원) 조직 구성
- 1981. 1.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 훈령 제88호)에 의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대상 소년범들에 대한 선도 · 교화 및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민간봉사자인 소년선도위원 조직 구성
- 1989. 7.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원호 및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민간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 조직 구성
- 1996. 6.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 훈령 제 363호) 제정, 3개 단체를 통합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약칭 범죄예방위원) 명칭 변경
- 1997. 8.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구성 및 53개 지역협의회 체제 구축
- 2002. 9. 범죄예방위원 안산지역협의회 구성
- 2003. 3. 범죄예방위원 고양지역협의회 구성
- 2005. 현재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및 55개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구성, 활동 중

法務部 犯罪豫防委員 全國聯合會 組織圖



범죄예방의 이론과 실제

1판 1쇄 인쇄 2005년 11월 1일
1판 1쇄 발행 2005년 11월 11일

발행처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발행인 • 류봉식(전국연합회 회장)
편저자 • 이영근(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30-1(대검찰청 206호)
전 화 • 02) 591-8733, 3480-3496~7
팩 스 • 02) 591-8734

본 책의 무단전재 또는 복제행위를 금함.